

2022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구용역보고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역량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2022. 10.



한국정책능력진흥원

Korea Policy Capacity Development Institute

제 출 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처와 계약 체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 역량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0월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책임연구위원	박병식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공동연구위원	최상욱 (고려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위원	이경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부회장)
공동연구위원	박종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위원	김준성 (동국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위원	이재성 (명지대학교 교수)
연구원	박명숙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연구원)
연구원	양윤호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연구원)

목 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공수처의 현황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공수처의 현황	2
제3절 공수처의 업무처리 실적	5
제2장 해외 공직자부패 수사 체계 분석	7
제1절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	7
제2절 대만 염정서(AAC)	16
제3절 영국 중대비리조사청(SFO)	21
제4절 홍콩 廉政公署(ICAC)	30
제5절 해외 반부패 수사 기관의 특징	35
제3장 공수처의 조직기능 분석	37
제1절 공수처 맞춤형 조직진단 모형과 기능·인력 분석	37
제2절 공수처의 SWOT분석과 전략	38
제3절 공수처의 조직기능 분석	39
제4절 공수처 수사 기능 및 인력 분석	40
제5절 공수처 행정기능 및 인력 분석	49
제6절 공수처 조직 재설계 및 인력조정 방향	57
제4장 우수인재 확보 및 수사지원역량 강화방안	60
제1절 채용과정에서 우수인력 확보	60
제2절 직원 교육과 경력개발을 통해 우수인력으로 성장발전	65
제3절 대검찰청 및 외국기관 교육제도	67
제4절 우수인력 확보와 직원사기 및 복지를 위한 보상관리체계 확립	75
제5절 개선방안과 제언	83
제5장 공수처법의 보완 분석과 입법론	85
제1절 공수처법의 연혁분석	85
제2절 공수처 직제와 관련한 보완 분석과 입법론	87
제3절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90
제6장 결론	92
참고자료	94
부록	97

표목차

<표 1> 공수처의 인원 현황	4
<표 2> 공수처의 부서별 업무 분장	4
<표 3> 홍콩 영정공서 인력 현황(2020년)	32
<표 4> 해외 반부패 수사기관의 특징	36
<표 5> 공수처의 SWOT분석	38
<표 6> 공수처의 SWOT전략	38
<표 7> 공수처의 주요 기능 분석	39
<표 8> 공수처의 조직 기능 분석	40
<표 9> 공수처의 수사 및 수사정책 기능과 인력 분석	41
<표 10> 수사인력 현황	43
<표 11> 공수처의 수사행정기능인 사건관리담당관실 현황	43
<표 12> 주요 지방검찰청 수사 검사 대비 공판 검사 비율	45
<표 13> 수사의 기능적 전문화 분류	46
<표 14> 공수처의 검사인력의 적정 규모	47
<표 15> 수사관 소요인력	48
<표 16> 수사관련 행정지원 소요인력	48
<표 17> 수사기반 지원업무 수사 소요인력	49
<표 18> 공수처의 행정기능의 담당 인력	49
<표 19> 공수처의 대변인실 및 인권감찰관실 인력 현황	50
<표 20> 공수처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인력 현황	51
<표 21> 공수처의 운영지원담당관실 인력 현황	52
<표 22> 공수처와의 유사규모(본부 정원 77~163명) 행정기관들의 공통부서 구성	54
<표 23> 공수처의 중요 조직기능에 파견자 담당 현황	55
<표 24> 공수처의 행정기능 적정 담당 인력 제안	56
<표 25> 공수처 수사 검사와 수사관 적정인력 규모	57
<표 26> 공수처 행정인력 조성 방향	58
<표 27> 조직기능 분석에 의한 공수처 전체 인력 조정 방향	59
<표 28>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전문화 범위	62
<표 29> 공수처 직원 채용프로세스	63
<표 30> 대검찰청의 검사 교육과정	67
<표 31> 대검찰청의 수사관 및 직원 교육과정	68
<표 32> 대만 영정서 2020년 신입사원 교육과정	68
<표 33> 대만 영정서의 현직 직원 정부 윤리경영 수준 교육	69
<표 34> 대만 영정서의 현직 직원 전문교육	69
<표 35> 2020년 독일 트리어연수원 연간 교육프로그램	71
<표 36>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경제적 비경제적 보상 체계	77
<표 37> 훈·포장의 종류	?
<표 38> 검찰 위원회 현황	81

그림목차

[그림 1] 공수처 조직도	3
[그림 2] 탐오조사국 시기구분	8
[그림 3] 싱가포르 총리실	9
[그림 4] 싱가포르 CPIB 조직도	11
[그림 5] 부패 관련 신고 접수 및 조사 접수 건수	14
[그림 6] 공공 부문 사례의 수	14
[그림 7] 기소율	15
[그림 8] CPIB 사건에 대한 높은 유죄 판결률	15
[그림 9] 대만 법무부 산하 소속기관 조직	18
[그림 10] 대만 엽정서 조직	19
[그림 11] 전략담당관	26
[그림 12] 엽정공서 조직도	31
[그림 13] 엽정공서 인력	32
[그림 14] 공수처 조직진단 모형	37

제1장 연구의 목적과 공수처의 현황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안 배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칭함)는 2020년 1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칭함)의 제정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비리 척결을 위하여 2021년 1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로서 출범하였다.

공수처의 등장으로 검찰 견제기능, 기존의 수사와 기소 관행에 대한 비판적 준거의 마련, 인권 친화적 수사제도 도입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수처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약 7,100명 정도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검사의 총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하여 25명에 불과하다. 현행 공수처의 직제는 최소의 인력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와 공소업무를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 이유는 공수처법에 명시된 검사와 수사관과 행정직원의 경직된 정원 규정, 불완전한 파견근무 규정,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 및 검사의 3회 연임 규정 등으로 유능한 검사 및 수사관을 확보하지 못하여 공수처법의 취지인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과학적 조직진단으로 합리적 체계구축과 부서별 적정인력 산출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제안 목적

어려운 과정을 거쳐 국민의 여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공수처에 대하여 언론, 법조계, 학계 등에서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법에 규정된 권력기관과의 단절, 임기의 제한, 정원규정 명시 등은 공수처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는데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범죄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괴리를 충족하고자 공수처의 역량 강화방안 등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²⁾.

1) 법률 제16863호(2020. 1. 14)로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근거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것임’이라고 제시하고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2) 공수처의 입법취지와 달리 현행 공수처는 조직체계의 한계에 직면하여 국민들의 기대심리에 부응하는 만큼의 제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공수처의 입법취지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원 20명으로 특정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되 권한은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실행하도록 하는 상설특검의 형태로 구성하면서, 공수처의 권한과 지위의 상설화를 막기 위해 처장과 차장을 단임제로 하고 있으며, 검사와 수사관을 임기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검사는 3년마다 재임용하되 3년에 한해서만 연임하도록 하였다. 이에 반해 국민들의 공수처에 대한 기대는 국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의 최고 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엄단하게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특정범죄를 한정된 권한 하에서 수사하려는 입법취지에 따라 구성된 공수처는 매우 한정된 수사 및 행정인력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

특히 ‘21년 국정감사에서 인력충원, 수사역량 향상 등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방안 마련의 필요성 지적 및 인력증원 관련 의원입법 발의³⁾가 제안되었기에 이에 대한 합리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국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기능분석을 통한 적정 인원의 산출, 체계적 인사관리 방안 마련, 공수처의 제기능 수행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방안 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공수처의 현황

1. 공수처의 성격과 문제점

가. 공수처의 성격과 정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수사기관으로서 사법기관에 준하는 특별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공수처는 사실상 국회의 통제를 받지만, 특수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개별특검, 제도특검 등과 달리 상설화된 특검제도로써 기구특검⁴⁾이며,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찰청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⁵⁾

공수처는 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3대 수사기관으로서 성격을 가지며,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하여 수사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상설특별검사제도이다[부록1 참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의 기능을 분권 내지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예방과 비리척결을 위하여 검찰, 경찰 등과 상호협력관계에 있으며, 국회의 통제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공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나. 공수처의 문제점과 방향성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특수한 행정기관이다. 따라서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행정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성, 직무의 독립성, 신분적 안정성을 확보해 주어야 하며, 검찰과 경찰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사력과 정보력, 행정력을 갖추는 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공익적 측면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하고 공소제기를 함께 관장하는

황에서 모든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여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공수처의 조직체계와 직제의 재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3) 이수진 의원 등 12인이 '21년 6월 17일에 수사관 10명과 행정직 20명 증원을 포함한 30명의 인력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송기현 의원 등 11인은 '21년 7월 14일에 행정직 40명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4) 정웅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 -각국의 검찰제도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박영사, 2021. p.19.

5) 공수처법 제2조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 제2조제4호의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하고 제3조제2호에 따른 공소제기와 그 유지

기구특검이며, 대검찰청에 대응하여 상설화된 특별검사제도가 구체화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특별검찰청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공수처는 조직체계상 지방검찰청 지청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사력과 기소권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수처는 수사 및 제한적 기소권을 행사하는 3대 수사기관으로서 조직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는 특수한 행정기관으로서 인권친화적 특별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공수처의 조직 구성

가. 공수처 조직 구성

공수처에는 공수처장 1명과 공수처차장 1명, 그리고 공수처검사와 공수처수사관 및 그 밖에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공수처의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공수처 검사, 40명 이내의 공수처 수사관 및 행정사무에 필요한 20명 이내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공수처는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나. 공수처 조직도 : 처장·차장, 4관 4부 5과(담당관) (' 22. 9. 30. 기준)



[그림 1] 공수처 조직도

다. 공수처 인원

□ 인원: 정원 85명, 현원 74명, 결원 11명(' 22.9.30.기준)

<표 1> 공수처의 인원 현황(' 22. 9. 30. 기준)

구분	정원	현원	결원
계	85	74	△11
검 사	25	21	△4
수 사 관	40	34	△6
행정직원	20	19	△1

□ 부서별 업무 분장

<표 2> 공수처의 부서별 업무 분장

부서명	주요업무	비고
대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보 업무 총괄 ○ 브리핑, 기자간담회 등 언론 소통 및 협조 ○ 온라인 소통, 홍보 업무 등 	
인권감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감사 및 감찰 ○ 인권 보호 및 개선 업무 ○ 재산 등록, 병역 신고, 취업 심사 등 공직윤리 업무 등 	
수사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업무 기획 및 조정 ○ 유관기관 협력 업무 ○ 고위공직자범죄 정보 수집·관리 등 	
인권수사 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친화적 수사와 적법절차의 준수 등을 위한 중장기 제도연구 및 교육 ○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등 수사운영 지원 	
기획재정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예산 관련 업무 총괄 ○ 공수처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총괄 ○ 국제협력 업무, 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업무 등 	
운영지원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정원의 관리 및 그 밖의 인사관리 ○ 예산운영·회계 및 결산, 계약 및 국유재산관리 ○ 정보화 업무 총괄, 개인정보보호 업무 등 	
사건관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접수, 배당, 종결 관리 업무 ○ 국민신문고, 민원실 운영 ○ 압수물, 영장 등 접수 관리 등 	

부서명	주요업무	비고
수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전자적 증거의 압수·분석 및 지원(디지털포렌식) ○ 과학적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및 운영 	
수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사건 수사 진행 ○ 수사·기소분리사건 외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 등 ○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 이첩 등 	
공소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기소분리사건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수사부의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분석·검증 및 처리 -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 등 ○ 사면·감형 및 복권,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제3절 공수처의 업무처리 실적6)

1.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 22. 9. 30. 기준)

○ 총괄(' 21. 1. 21. ~ ' 22. 9. 30.)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진행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전('21. 1. 21.~'22. 3. 13.)	3,025	3,025	0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22. 3. 14.~9. 30.)	1,525	1,266	259
계	4,550	4,291	259

○ 사건접수 세부현황(' 21. 1. 21. ~ ' 22. 9. 30.)

- 사건사무규칙 개정(' 22. 3. 13.) 이전

(단위: 건)

이첩요청	인지통보	이첩	고소·관할장영등	기타	계
1	226	92	2,704	2	3,025

6) 공수처 국정감사 주요 업무현황 보고 참조

- 사건사무규칙 개정(' 22. 3. 14.) 이후

(단위: 건)

이첩요청	인지통보	이 첩	고소고발진정등	기 타	계
0	99	45	1,373	8	1,525

○ 사건처리 세부현황(' 21. 1. 21. ~ ' 22. 9. 30.)

- 사건사무규칙 개정(' 22. 3. 13.) 이전

(단위: 건)

직접 처리			다른 수사 기관 이첩				계
입 건	불입건	소계	검찰	경찰	기타	소계	
24	381	405	2,162	452	6	2,620	3,025

- 사건사무규칙 개정(' 22. 3. 14.) 이후

(단위: 건)

직접처리							다른수사 기관 이첩 ³⁾						계
공제		내사	진정	조사	소계	구분	공제	내사	진정	조사	소계		
공소 제기 ¹⁾	공소 제기 요구 ²⁾	불기소 등	수사 불개시	공람 종결 등								-	
8	6	107	90	712	-	923	계	60	-	281	2	343	1,266

주 1. 공소제기 3건(공제사건 8건 중 6건을 1건으로, 나머지 2건을 각각 공소제기)

2. 공소제기 요구 2건(공제사건 6건 중 각 3건을 1건으로 각각 공소제기 요구)

3. 검찰 139건, 경찰 199건, 군검찰 5건 이첩

2. 공소제기 및 유지 사건: 3건(' 22. 9. 30. 기준)

- ' 21년 공제사건 2건, ' 22년 공제사건 1건

제2장 해외 공직자부패 수사 체계 분석

제1절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

1. 법적 근거와 목적

가. 법적 근거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의 설립 근거는 싱가포르의 반부패법제 중에 가장 주요한 법률로 부패방지법(PCA: Prevention of Corruption Act)과 1989년 부패재산압류법(The Corruption(Confiscation of Benefits) Act) 등에 근거하고 있다.

1960년 6월 17일에 발효된 부패방지법은 크게 다섯 가지의 특징이 있다.⁷⁾

첫째, 부패방지규정이 12개의 조문에 불과하였으나 부패방지법은 32개의 조문을 갖추면서 보다 구체화하였다.

둘째, 법 제2조에서 이익(gratification)의 개념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함으로써 부패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셋째, 부패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정형 상한을 징역 5년 및 10,000 싱가포르 달러(현재는 100,000 싱가포르 달러)로 상향하였다.

넷째, 본형과 별도로 수수된 금액에 대한 벌금형 병과를 추가하였다.

다섯째,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부패 의사 등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내밀한 부패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나. 설립 배경

1950년대까지만 해도 부패가 ‘생활의 일부’ 라고 할 정도로 싱가포르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가 만연되어 있었다. 당시 싱가포르 경찰 소속 반부패국(Anti-Corruption Branch)에서 부패행위 단속 수사를 담당하였으나 그 기능이 비효율적이었고 특히 경찰이 연루된 부패사건의 경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에 따라 1952년 경찰에서 독립된 조직으로 탐오조사국(CPIB: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을 출범하였다.

하지만 당초 이 조직은 민간인 조사관과 경찰공무원 등으로 혼합 구성되었으며 국장이 총독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나 범죄자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일반시민들의 협조 불충분 등으로 업무수행에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았다.

1959년 리관유 총리가 이끄는 인민행동당이 집권하면서 부패한 관리들을 면직시키고 강력한 공직사회 개혁 및 부패척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얻게 되었다. 리관유는 부패척결을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총리가 된 후 제일 먼저 1937년에 제정되어 명맥만 유지해오던 부패방지법을 개정하여 그 집행기관인 탐오조사국(CPIB)의 기능을 강화시켰

7) 김기현, 「싱가포르 부패방지법 연구」, 2017년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3)-30.

으며 부패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도 한층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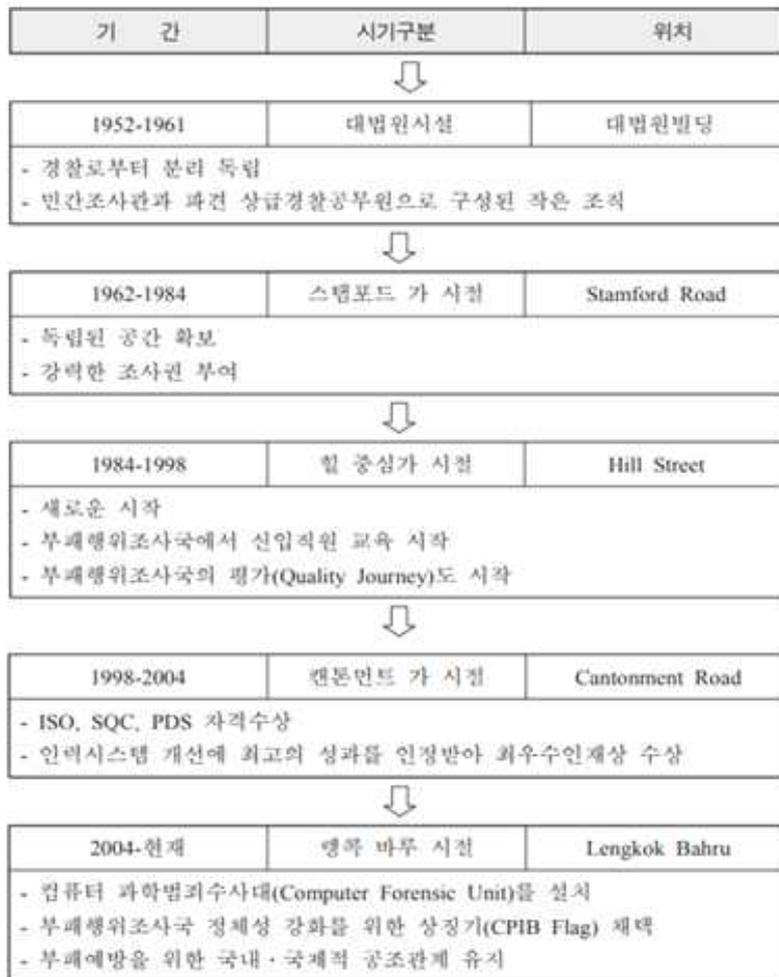
당시 싱가포르 정부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시행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은 공무원의 급여수준을 올리고 근무조건을 개선한 것이었다. 고위직에 있어서 일반 공무원의 급여수준과 근로조건을 민간기업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우수 인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다. 연혁

탐오조사국은 1952년에 설립되어, 탐오조사국이 위치하고 있던 장소에 따라 대법원 시절(Supreme Court Days, 1952-1961), 스탬포드가 시절(Stamford Road Days, 1962-1984), 힐 중심가 시절(Hill Street Days, 1984-1998), 캔톤먼트가 시절(Cantonment Road Days, 1998-2004)을 거쳐 오늘(Lengkok Bahru, 2004 이후)에 이르고 있다.

대법원 시절(Supreme Court Days)에 탐오조사국은 경찰로부터 분리·독립되었으나, 민간조사관과 파견 상급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작은 조직이었으나 스탬포드가 시절(Stamford Road Days)에는 탐오조사국의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었고, 강력한 조사 권한이 부여되었다.

힐 중심가 시절(Hill Street Days)에는 탐오조사국의 평가 등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림 2] 탐오조사국 시기구분

출처: 조재현. 2015. “싱가포르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pp.55-56.

캔톤먼트가 시절(Cantonment Road Days)에는 싱가포르 품질등급(Singapore Quality Class, SQC), 인력개발표준(People Developer Standard, PDS) 등을 수상하였으며, 인력시스템의 개선에 최고의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최우수인재상(People Excellence Award)을 수상하였다. 령콧 바루 시절(Lengkok Bahru)인 2004년 이후 탐오조사국은 부패행위 조사의 기술, 표준, 전문화, 첨단기술의 사용, 컴퓨터과학범죄수사 등을 개선함으로써 운영에서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영역에서도 부패의 예방적 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파트너십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⁸⁾

라. 설립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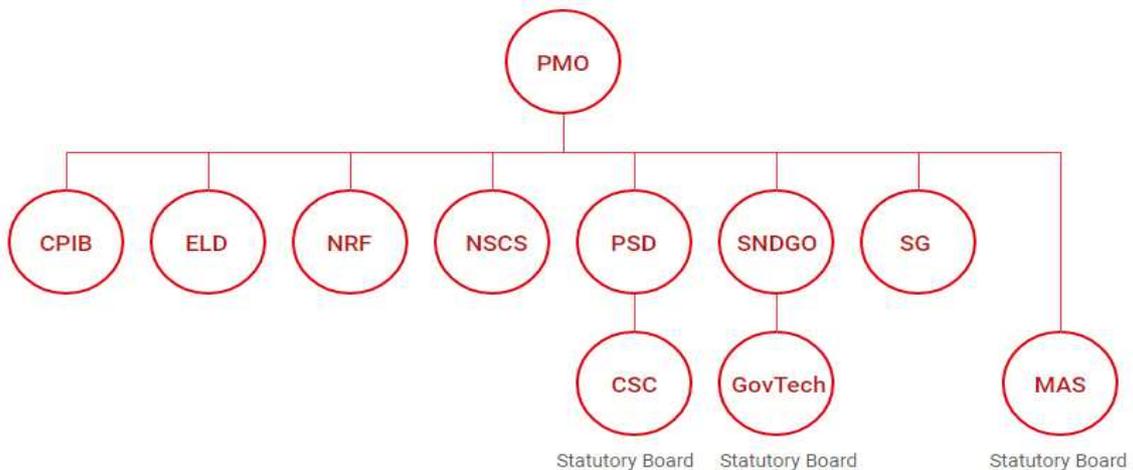
탐오조사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패를 조사, 방지하기 위하여 1952년에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 Ch.241)에 근거하여 설립된 독립적 기관이며 탐오조사국은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보호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조사하고, 드러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부패행위자를 고발하는 것 이외에도, 탐오조사국(CPIB)dms 부패행위에 취약한 행정기관의 제반 운영체계, 절차 등에 대한 조사, 분석하며, 관련 부서의 장에게 부패예방법에 대한 권고 활동을 한다. 또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각종 세미나 및 교육을 실시한다.

CPIB 미션: 신속하고 확실하고 확고하지만 공정한 조치를 통해 부패를 퇴치하는 것
 CPIB 비전: 부패 없는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청렴성과 좋은 거버넌스를 지지하는 선도적인 반부패 기관
 CPIB 핵심 가치: 정직, 팀워크 및 의무에 대한 헌신

2. 조직과 인력

가. 조직 구성



[그림 4] 싱가포르 총리실 (출처: 싱가포르 총리실 홈페이지)

8) <https://www.cpi.gov.sg/who-we-are/our-heritage/>

싱가포르의 총리실(PMO)은 총리를 지원하고 조언하는 7개의 기관(CPIB, Elections Department, NRF, NSCS, PSD, SNDGO, SG)과 3개의 법정 위원회(CSC, GovTech, MAS)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탐오조사국은 수사부, 수사지원부, 행정지원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⁹⁾

1) 수사부 : 부패방지법상 CPIB의 주요 업무수행

수사부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수사 운영, 훈련 개발 및 정책, 훈련 운영의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사 운영 부서에는 6개의 조사 부서가 있고 지부는 일상적인 부패사건과 자금세탁 및 초국가적 부패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모든 부패사건을 조사한다.

훈련 개발 및 정책 부서는 사무국의 훈련 및 개발 정책을 검토하고 모든 CPIB 임원의 전반적인 역량 수준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하며 또한 부패 동향을 분석하고 부패조사 중에 조직에서 발견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조사 정책을 수립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교육운영과에서는 부패수사에 관한 교과과정을 기획하고 사내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전문 개발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국내외 법 집행 기관, 학계 및 전문가와 협력하는 Center of Excellence를 통해 수사 인터뷰 및 금융 포렌식 영역의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2) 수사지원부 : 부패사건 수사업무를 지원하는 부서

수사지원부는 인텔리전스 운영, 인텔리전스 분석 및 국제 업무, 과학 및 기술/특수 프로젝트의 세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 운영 부서는 부패범죄의 탐지 및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정보분석국제과는 부패범죄의 적발 및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 다양한 국제 반부패 플랫폼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여 사무국의 국제적 참여를 주도하고 있다. 과학 및 기술, 특수 프로젝트 부서는 신뢰성 평가 및 디지털 포렌식과 같은 전문 조사 도구로 조사 및 운영 부서를 지원하고 있다.

3) 행정지원부 : 탐오조사국의 예산, 조달업무 담당 및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지원부에는 인력관리 및 개발, 재무 및 행정, 기획, 연구 및 기업 관계, 정보기술 및 디지털 혁신 사무소의 5개 부서가 있으며 재정 및 행정부는 부서의 재정, 조달 및 자산 문제를 책임지고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한다. 인력관리 및 개발 부서는 탐오조사국의 전략적 방향과 일치하는 HR 전략을 설계, 검토 및 구현하고 있다.

탐오조사국의 운영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인사관리 및 운영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 및 구축하는 임무와 기획, 연구 및 기업 관계 부서는 국의 전략 기획, 조직 개발 및 우수성, 변경 관리를 주도하고 있다.

부서의 공공 전선으로서 이 부서는 또한 반부패에 대한 교육, 참여 및 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기업 관계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

산하 반부패연구센터는 반부패 이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기술부는 국의 기능을 지원하고 핵심까지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IT를 국의 운영에 통합하고 활용하고 있다.

Digital Transformation Office는 다양한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반적인 탐오조사국의 디지털정책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모두 디지털화하고 있다.

9) <https://www.cpi.gov.sg/who-we-are/our-work/organisational-structure/>

4) 내부감사실

탐오조사국 국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국의 독립 부서인 내부 감사실은 건전한 거버넌스와 효과적인 위험 관리에 대한 조언과 통찰력을 제공하여 조직 가치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국은 국 내 내부 통제 프로세스의 높은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다.

CPIB Organisational Structure



[그림 5] 싱가포르 CPIB 조직도(출처: 싱가포르 CPIB 홈페이지)

나. 인력

설립 초기 탐오조사국은 전체 구성원 8명의 아주 작은 조직이었으나 1978년에는 전체 45명으로 확대되었으며¹⁰⁾ 구체적인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국장 및 부국장, 특별조사관 외에 부패행위 조사관, 부패행위 조사관보, 관리집행관 등이 있다. 1952년 설립 초기에는 탐오조사국의 상급공무원은 경찰공무원이 파견되었으나 점차 민간인으로 채용된다.¹¹⁾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의 특별조사관(CPIO: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Officer) 현원은 30명이며. 헌법기관인 공무원 인사위원회(PSC)에서 공개 채용한다.¹²⁾

특별조사관 응시자격은 4년제 대졸자로서 정의감, 성실성, 정직성, 공정성, 청렴성, 준법성, 책임감을 테스트하는 직무적성 검사와 인성검사가 우선되며 일반 공무원 선발절차보다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발된 요원은 4개월간 경찰학원에 입교해 형법과 부패방지법 등의 법률과정, 기본조사기법, 총기 취급의 교육과정을 학습하고 2년간의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정규 특별조사관으로 임명한다. 특별조사관의 매월 기본급은 4,340~5,193달러로,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특별조사보좌관(CPIA: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Assistant)의 현원은 52명으로 역시 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공개 채용한다. 특별조사보좌관의 응시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특별조사관에 준하는 정의감과 높은 청렴성을 필요로 하며, 소환장 송달, 체포 및 구인, 수사, 압수수색 지원 등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특별조사보좌관의 매월 기본급은 1,826~2,748달러로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10) King hea Joseph, "A comparative study of the anti-corruption measures of Hong Kong and Singapore since 1945", The University of Hong Kong, (The HKU Scholars Hub), p.63. ; 조재현(2015), 싱가포르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에서 재인용

11) King hea Joseph, ibd., p.63. ; 조재현(2015), 싱가포르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에서 재인용

12) 강효백, [강효백 칼럼] 공수처 직원 자격 개방하고 정원 늘려라, 아주경제, 2020.12.23.일자. ; 싱가포르 CPIB 홈페이지

행정관리관(Management Executive)의 현원은 26명으로 입법, 국제 관계, 전략 계획 및 기업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매월 기본급은 3,100~4,038달러로, 행정관리관은 일반행정부처와 각계 경영관리전문가들로 충원한다.

3. 기관의 기능과 권한

싱가포르는 부패방지법에서 탐오조사국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패행위 조사권, 압수수색의 권한, 체포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

가. 조사권¹³⁾

형법 제165조(공무원 수뢰자) 또는 제213조에서 제215조를 위반하였거나 위반의 혐의가 있거나, 위반을 교사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부패방지법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 어떠한 성문법상의 위반행위의 경우에 탐오조사국장 또는 특별조사관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주어진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경찰조사권한과 관련한 모든 또는 개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 위반의 경우에는 특별한 조사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검사는 탐오조사국장 또는 특별조사관 등에게 특별한 명령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명령은 은행계좌, 주식계좌, 매입 및 비용계좌, 모든 은행의 안전 금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검사의 명령에 의해서도 형사소송법상의 경찰권한이 부여될 수 있으며 검사는 모든 성문법 위반의 경우에 탐오조사국장이나 특별조사관에게 형사소송법상의 경찰권한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부패혐의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의 부인이나 자녀 또는 기관의 은행통장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부패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검사는 은행통장에 대한 조사권과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한 동산·부동산 등의 재산 상황에 대한 정보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 압수·수색 권한¹⁴⁾

치안판사나 탐오조사국장은 부패행위 등의 위반과 관련한 증거를 담고 있는 기록, 물품, 재산 등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특별조사관이나 경찰의 압수·수색권한을 영장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판사나 탐오조사국장은 기록, 물품, 재산 등을 수색·압수할 수 있는데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조사관이나 경찰이 그러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3) 싱가포르 부패방지법.

14) 싱가포르 부패방지법.

다. 체포 권한

탐오조사국장과 특별조사관은 영장 없이 부패방지법의 위반과 관련되었다는 믿을만한 정보나 합리적인 신고에 의하여 부패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탐오조사국장과 특별조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체포된 사람이 소유한 물품 등이 범죄의 결과이거나 증거라고 생각된다면 그러한 것을 수색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다만 여성일 경우 여성에 의한 방식으로 수색이 제한적임).

라. 다른 수사 기관(검찰 및 경찰)과의 역할 분담과 협력

탐오조사국은 기소 권한은 없어 기소는 행하지 않고 검찰총장에게 사건을 송부하고, 검찰총장은 기소에 관한 결정을 하며, 사건의 기소에 대하여 관리한다.

부패방지법 제33조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기소는 검사의 동의에 의하여야 하며, 검사의 동의에 의하지 않고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마. 기관장의 임명 절차와 권한

싱가포르 부패방지법은 탐오조사국 임명권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탐오조사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들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싱가포르 부패방지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부패방지국장(Director of the CPIB)은 대통령(President)이 임명하며, 부패방지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은 탐오조사국의 부국장(Deputy Director, 차장)과 다수의 부국장보(assistant director) 및 특별조사관(special investigator)의 임명권을 가진다. 탐오조사국장, 부국장, 부국장보 및 특별조사관은 형사법적 범위 내에서 공무원으로 간주된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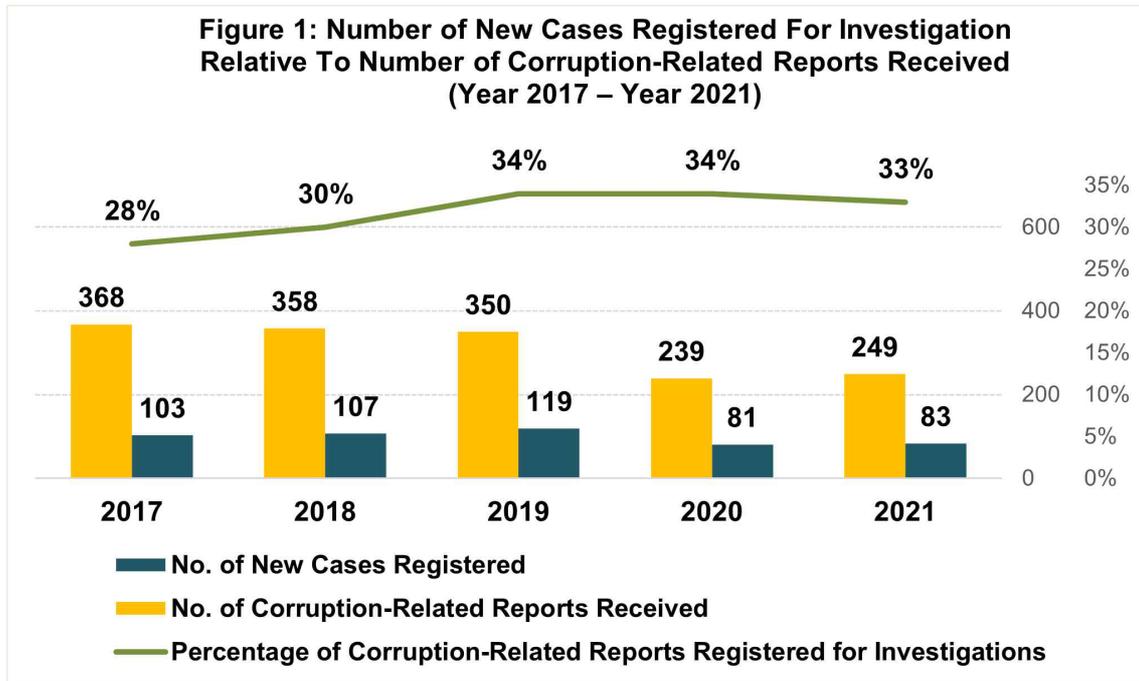
바. 부패 관련 현황

싱가포르의 부패 현황(2022년 5월 5일 현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⁶⁾

부패 관련 신고 접수 및 조사 접수 건수가 소폭 증가하였다. 2021년 CPIB는 24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2020년 접수된 239건의 부패 신고 보다 4% 증가한 수치이며, 이 중 CPIB는 2021년 신규 조사 대상은 83건으로 전체 건수의 33%를 차지하였다(Figure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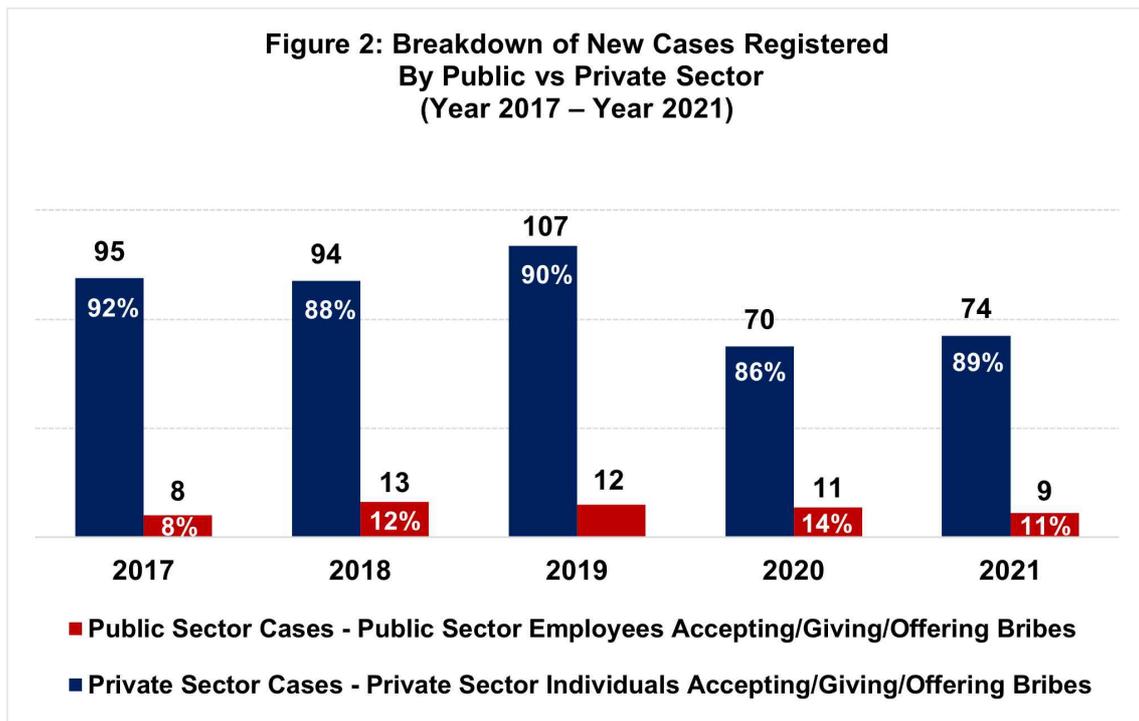
15) 싱가포르 「부패방지법」 (출처: <https://sso.agc.gov.sg/Act/PCA1960> 검색일 2022.7.20.)

16) <https://www.cpi.gov.sg/press-room/press-releases/050522-corru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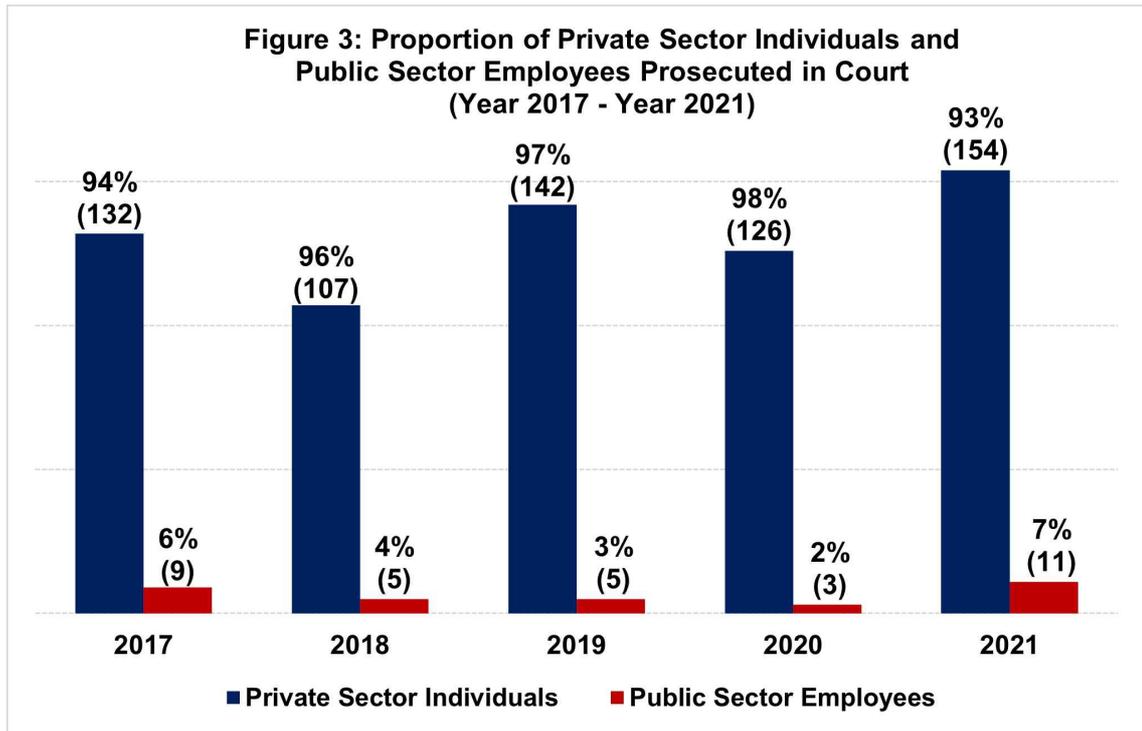
[그림 5] 부패 관련 신고 접수 및 조사 접수 건수

공공부문 사건은 많지 않은 편이다. 2021년 조사에 착수한 대부분의 사건(Figure 2 참조)은 민간 부문에서 발생했으며(89%, 74건) 이 중 12%(9건)는 민간 부문 개인이 제공한 뇌물을 거부하는 공공부문 직원과 관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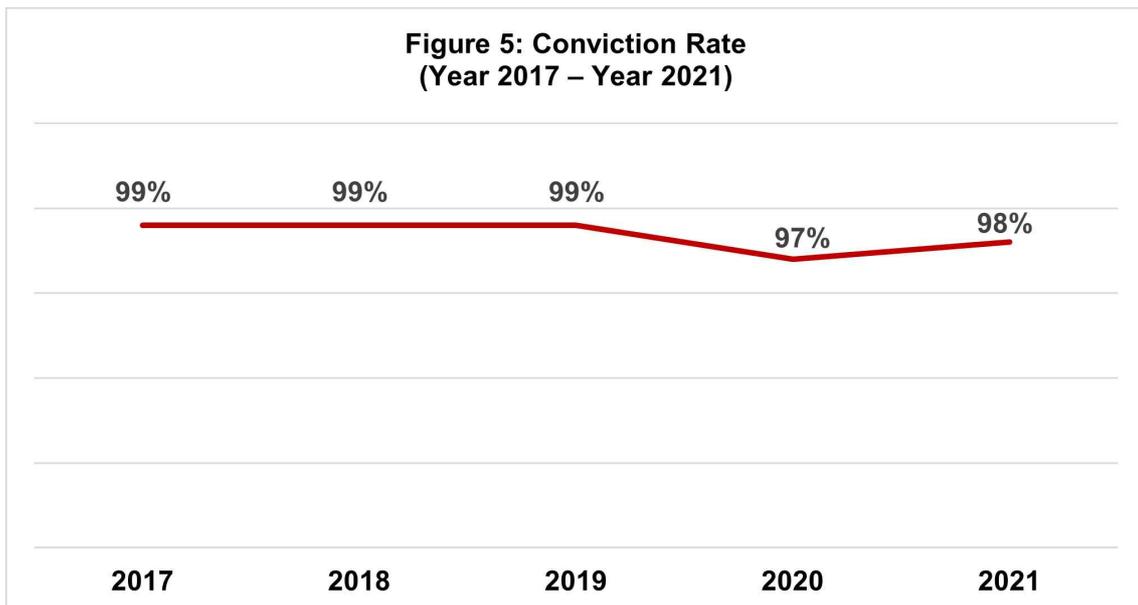
[그림 6] 공공 부문 사례의 수

2021년에 165명이 CPIB에서 조사한 범죄로 법원에 기소되었으며, 이 중 93%(154)는 민간부문 개인이었고 나머지 7%(11)는 공공부문 직원이었다(Figure 3 참조).



[그림 7] 기소율

지속적으로 높은 유죄판결률을 보이는 가운데 2021년 기준 CPIB 사건의 유죄 선고율은 98% 수준이다(Figure 5 참조). 일관되게 높은 유죄 판결률은 탐오조사국의 조사역량이 우수하고 부패한 범죄자를 기소하는 데 있어 탐오조사국과 법무부 장관실 AGC 간의 협력 관계가 잘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림 8] CPIB 사건에 대한 높은 유죄 판결률

제2절 대만 염정서(AAC: Agency Against Corruption)

1. 법적 근거와 목적

가. 법적 근거

대만 염정서의 설치 및 운영은 “Organic Act of the Agency Against Corruption” 법에 근거하고 있다. 제1조에 의하면 “법무부는 부패방지정책 수립, 부패방지대책 시행, 부패방지 및 부패 근절을 위해 AAC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다.

나. 설립 배경¹⁷⁾

대만의 염정서(廉政署, AAC: Agency Against Corruption) 법관이 뇌물을 받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¹⁸⁾을 계기로 2011년에 출범하였다. 염정서는 출범 초기에 홍콩의 염정공서와 같이 법무부 외에 수사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하였지만, 기존 형사사법 제도와의 조화를 꾀하면서 기존 수사기관들의 수사인력을 유효하게 활용한다는 차원과 대륙법계 국가로 사법권을 가진 염정서를 총통이나 행정원장(부총통) 산하로 하는 경우 검찰관이 수사 주체인 대만의 사법제도를 혼란시킬수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법무부 산하에 두어 기존 제도와의 조화를 꾀하면서 기존 수사기관들의 수사인력을 유효하게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법무부 산하기관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다. 설립 목적

대만 염정서 설치법 제2조에 따른 염정서의 주요 담당업무

1. 국가 반부패 정책을 수립, 조정 및 시행
2. 반부패 및 관련 법령을 검토, 개정 및 해석
3. 부패방지대책을 추진·시행
4. 부패 및 관련 형사 사건을 조사
5. 공무원 윤리 부서의 활동을 감독, 평가 및 조정
6. 공무원 윤리 부서 및 직원에 대한 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
7. 법무부 자체의 윤리업무 총괄
8. 기타 부패방지 업무 수행

(* 상기 4호의 조사를 수행할 때 ACC 담당공무원이 추천직급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및 제230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으로 보며, 임명 직급만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0조에 규정된 대로 사법경찰로 간주)

17) 김태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제54호, p.2017)

18) 법원과 검찰이 함께 뇌물을 받고 무죄 판결을 내린 대만 법조계 최악의 부패사건으로 대만 최고 검찰서(대검찰청 격) 특별수사팀은 타이베이 지법에서 19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판결을 판사와 검사가 나란히 뇌물을 받고 2010년 5월 12일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만든 법조계 집단 부패사건이다.

라. 연혁¹⁹⁾

1987년 7월, 장제스 초대 총통의 아들 장징궈(蔣經國, 1910~1988년) 총통 집권 당시 103명의 입법원(국회) 의원들이 연명으로 행정원 산하에 ‘부패방지국’ 설치를 제안하였으나 1988년 1월 장징궈 총통이 급서하고 보수·친일 성향의 리덩후이(李登輝, 1923~) 총통이 승계하면서 부패방지국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2000년 5월, 민진당 소속 천수이벤(陳水扁, 1951~) 총통 정부의 법무부는 2000년 10월 <법무부 조직법> 및 <법무부염정서 조직조례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행정부 내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천수이벤 2기 정부 때인 2005년 10월 26일, 행정원 제2963차 회의는 극히 제한된 직무권한의 <염정서 조직법>을 입안하여 입법원에 보냈으나 민진당 지배하의 입법원은 2년 반 동안 법안을 계류시키게 된다.

2008년 3월 총통선거 한 달 전인 2008년 2월 13일에서야 입법원 법사위원회는 염정서 설치법 초안을 통과시켜 법안을 입법원 본회의 상정하여 2008년 5월 20일 국민당 소속의 12대 총통 마잉주(馬英九, 1950~)는 취임사에서 임기내 강력한 반부패기관 설치를 선언. 선언 이틀 후인 5월 22일 대만 법무부는 ‘중화민국 반부패 기관 설립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부패예방 및 부패방지기관 설치를 공포하였다.

2008년 7월 27일, ‘법무부 조직 조정 및 기획소조’ 는 법무부 조직개혁안을 마련, 구체적인 염정서 조직 직급 업무분장안을 일반에 공개하고 2009년 12월 14일 법무부는 구 정권의 염정서 설치법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염정서 설치법안을 입법원에 제출하였다.

2010년 1월 8일 입법원은 기존의 천수이벤 정부의 염정서 설치법 철회를 가결했으나 새 염정서 설치법안은 기득권의 반발로 2년여째 표류하다 2010년 10월 판사가 뇌물을 받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 관련 판사 4명에게 징역 11~20년, 검사 1명에게 징역 6년, 변호사 1명에게 징역 1년 6월형이 선고되었으며 대만 사회를 왈각 뒤집은 초대형 법조 비리사건은 염정서 창설의 촉매가 되었다.

2010년 12월 9일, 법무부 부패방지에 관한 독립위원회 즉 염정서조직법 초안이 입법원 법사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가결되어 2011년 4월 1일, 입법원 본회의 동 법률안을 통과, 2010년 4월 20일 마잉주 총통은 동 법률안을 공포하고 같은 해 7월 20일 법무부 염정서(서장 차관급)를 설치 완료하였다.

2. 조직과 인력

가. 조직

대만 법무부는 국가의 검찰, 교정, 사법 보호, 정치 및 행정 법원의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 행정의 관할 기관이다. 범죄에 대처하고, 대중에게 정의를 제공하고, 수용자를 교정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청렴성 혁신을 촉진하고, 법률 및 규정 자문을 제공하고, 공법에서 금전적 청구를 집행하는 등 중요한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대만 법무부 산하에 직속기관으로 ① 염정서 ② 행정집행기관(行政執行署) ③ 교정기관

19) 강효백, [강효백의 新경제유표 22] 대만의 공수처, 염정서 귀감쑤 반면교사쑤, 2020.3.10.일자

(矯正署, 한국의 법무부 교정본부격) ④ 조사기관(調查局, 미국 FBI와 유사), ⑤ 검찰기관(最高檢察署, 한국의 대검찰청)과 사법관학원, 법의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염정서는 특별서로서열 및 예산상으로 가장 우선적인 조직으로 분류 된다.



[그림 10] 대만 법무부 산하 소속기관 조직
(출처: 대만 법무부 홈페이지)

대만의 염정서는 부패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부패방지 교육, 부패방지 및 부패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서장(차관급) 외 부(副)서장 2인 산하에 기획실(Planning Division), 부패방지과(Corruption Prevention Division), 공무원 윤리과(Civil Service Ethics Division), 부정행위 수사과(Malpractices Investigation Division)와 대만 북부, 중부, 남부에 3개의 조사 사무소가 있으며 총 7개의 운영 부서로 구성되며 그 외에 비서실, 인사담당부서, 회계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3개의 지원실을 두고 있다.²⁰⁾

1) 기획실

- 연간 및 중기 계획 수립하고 깨끗한 정치 조치를 관리하고 평가
- 깨끗한 정치 및 사법 업무에 관한 문제에서 다른 국가와 국제 연락 및 상호 지원에 참여 법률 자문 제공
- 법률 정리
- 양한 정부 기관에 상주하는 윤리 인력의 배치, 이전, 승진 업무 관리, 성과 평가,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구현
- AAC 및 윤리 단체 관계자의 규율 관리

2) 부패방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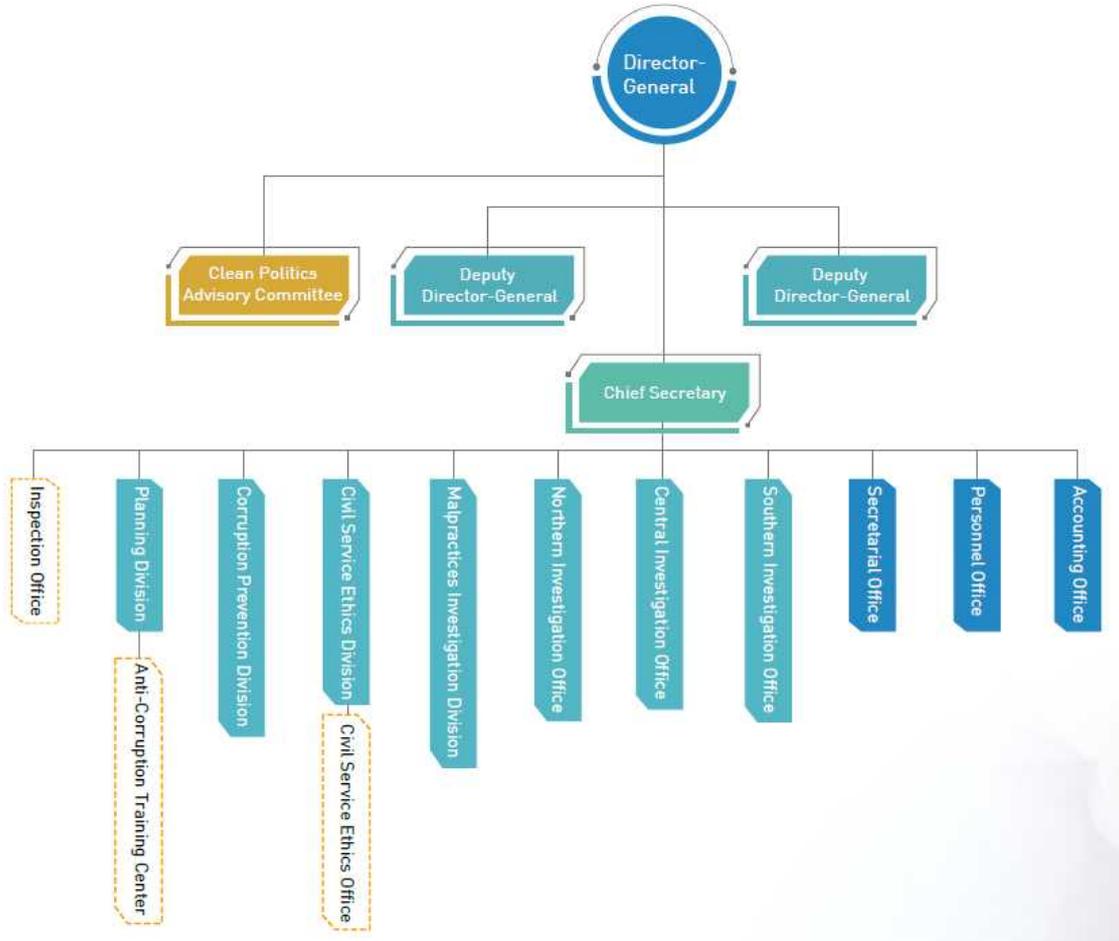
- 부패 방지 법률, 규정, 시스템 및 조치 개발, 부패 방지 조치를 검토 및 검토

20) 대만 염정서 조직의 한자 표기는 종합규획조(綜合規劃組, Planning Division), 방탐조(防貪組, Corruption Prevention Division), 속탐조(肅貪組, Civil Service Ethics Division), 정풍업무조(政風業務組, Malpractice Investigation Division), 북부지구조사조, 중부지구조사조, 남부지구조사조로 표현하고 있으며 정풍업무조 밑에 지원조직으로는 비서실, 인사실, 회계실 등이 있다.
(<https://www.aac.moj.gov.tw/6398/6400/6402/53729/post>)

- “공직자에 대한 이해상충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재산신고에 관한 법률”, “공무원 윤리지침” 시행 지원, 공무원의 윤리 행동 규제
- 공공 기관, 대중, 지역 사회, 학교 및 기업체에서 청렴성과 깨끗한 정치 교육 촉진

3) 부정수사과

- 부패에 관한 법률, 제도 및 조치의 제정부패 범죄 조사, 부패 폭로 보상 및 장려, 내부 고발자 보호, 부패조사 관리



[그림 11] 대만 염정서 조직(출처: aac-annual-report-2020. p.12.)

4) 공무원 윤리과

- 부패 통제를 위한 연간 계획 수립, 윤리 기관의 성과 평가, 부패 방지 업무 감독, 정부 기관의 보안 유지 및 비밀 보호

5) 비서실

- AAC 회의 준비(인감 및 문서 보관계산원 관리, 재정 관리, 수리), 조달(청소부 운전사 및 기술자를 할당하고 IT 운영을 감독)

6) 인사실

- AAC의 인사관리

7) 회계사무소

- 예산안 작성, 지불, 조달 사례 검토, 통계 작성

나. 인력

대만 염정서는 2020년 현재 직원 222명이 재직하고 있다.²¹⁾

다. 기관의 기능과 권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

대만 염정서는 소수정에 조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²²⁾ 대만 법무부 염정서는 서장(차관급) 외 부(副)서장 2인 산하에 기획실(Planning Division), 부패방지과(Corruption Prevention Division), 공무원 윤리과(Civil Service Ethics Division), 부정행위 수사과(Malpractices Investigation Division)와 대만 북부, 중부, 남부에 3개의 조사 사무소가 있으며 총 7개의 운영 부서로 구성되며 그 외에 비서실, 인사담당부서, 회계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3개의 지원실을 두고 있다.

업무는 크게 반부패 정책의 수립과 추진 등 기획, 부패행위 단속, 부패방지, 각계각층 반부패 업무의 지도 감독 등으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도 부패행위 단속을 맡은 숙탐조가 염정서의 핵심 부서이다. 숙탐조는 형법을 비롯한 각종 형사법, 공직자 이익충돌회피법, 공직자재산신고법, 공무원청렴윤리규범 등 반부패 관련 법률 법규 및 지침을 위반한 정부 부문, 공공기관, 군과 민간 사회단체 학교, 공기업에 소속된 공직자와 임직원의 부패 관련 조사와 법집행업무를 담당 한다.

또한 숙탐조에는 상주 검사도 파견돼 있는데 이들은 수사·기소 관련 업무를 관리하고 대만 염정서의 조직 독립성은 홍콩의 염정공서에 비해 약하지만 권한의 범위는 홍콩과 유사하다.

대만 염정서는 수사권, 조사권 압수수색권, 기소요구권, 계좌추적권, 특수한 경우 무영장 체포권, 지위박탈권, 정보자료요구권이 있다. 위반행위자의 구금, 은행계정이나 예금구좌 추적조사, 혐의자의 임의적 재산 처분 및 예금 인출 등 재산권 행사 제한 권한, 재산명세서 제출요구권, 무영장체포권 등 강력한 조사권 및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어 부패 통제의 효과가 크다. 염정서는 인지(認知)·고발 사건을 부패사건과 일반사건으로 분류하고, 전자는 직접 수사하고 후자는 자체 처리나 검찰·경찰·법무부 조사국 등 관련 기관 이첩한다. 수사 후 기소 여부 판단은 상주검사가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 최고검찰서(대검찰청) 소속 전담 검사가 맡기도 한다(권한의 법적근거: 법무부 조직법, 법무부염정서 조직법).

라. 다른 수사 기관(검찰 및 경찰)과의 역할 분담과 협력

1) 검찰기관과의 역할 분담과 협력

대만의 부패범죄 기소는 ‘주서(駐署)검찰관’이 담당한다. 즉, 지방검찰청 소속 검찰관을 염정서에

21) aac-annual-report-2020. p.12.

22) 강효백, [강효백의 新경제유표 22] 대만의 공수처, 염정서 귀감쑤 반면교사쑤(2020.3.10.)

파견하여 수사개시부터 기소까지 주서검찰관이 영정관(수사관)을 직접 지휘하는데(15명 파견 중), 영정서 주서검찰관은 자신이 소속된 검찰청 상사의 결재를 받아 소속 검찰청 검사 자격으로 공소제기(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강제처분도 소속 검찰청 검사 자격으로 청구)를 한다. 이는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견지한 것으로, 주서검찰관은 일주일 중 4일은 영정서에서 근무하고 1일은 소속 검찰청에 복귀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법무부 조사국(지방검찰청 등 법무부 소속 수사기관)은 오랜 경험과 전국적인 규모의 수사인력, 첨단과학수사 장비 등을 바탕으로 여전히 부패수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영정서는 반부패 예방 및 교육에 중점을 두고 수사기능은 미미해졌다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영정서와 법무부 조사국에서 동시에 수사하게 되는 경우,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먼저 수사를 시작한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중복수사의 문제 발생시 주서검찰관이 조정), 원활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 고등검찰청이 개입하여 수사 한다.²³⁾

2) 수사 현황

구분	수사 종료 후 이송(법무부)			계
	공무원		기타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 외		
2017-2021년	63명	648명	1,082명	1,793명

제3절 영국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

1. 법적 근거와 목적

가. 법적 근거, 설립 배경

영국 정부와 의회는 1985년 범죄기소법(Prosecution of Offences Act)을 개정해 왕립검찰청(CPS: Crown Prosecution Service, ‘검찰청’으로 약칭)을 창설하였다. 검찰청 설치 2년 후 영국 정부와 의회는 1987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을 개정, 이 법에 근거 1988년 4월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을 설치하였다.

설립 배경을 살펴보면²⁴⁾ 중대비리조사청은 전통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운영하던 영국에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보유한 중앙정부 기관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 사례이다.

영국의 전통적 자치적 경찰 제도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증가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자 1829년 4월, 당시 영국의 내무부 장관(Home Secretary)이었던 로버트 필 경이 제출한 런던경시청법(Metropolitan Police Improvement Act)이 통과되고, 같은 해 9월에 런던경시청이 창설

23)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2018), p.134.

24) 서민주. (2020). 「영국의 SFO 탄생 배경, 구체적 운영 방식 및 수사사례 연구」. 법무연수원,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34(2). pp.548-551.

된다. 이후 1856년 자치구 경찰법(County and Borough Police Act 1856)에 따라 영국의 모든 자치구에 239개의 경찰서가 설립된다. 이로써 사인소추 기능이 경찰 기능의 일부로 이동하게 되고, 영국 경찰은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라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위와 같은 제도는 크게 두 가지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는 적법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인한 무죄율 증가이고, 다른 하나는 지능화, 조직화된 범죄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1960~70년대 임시 아일랜드 공화국군(IRA: Provisional Irish Republican Army)의 폭탄 테러 등으로 인한 보안 유지 압박으로 인한 수건의 증거 조작 사건 및 경찰 내부의 심각한 부정부패 문제 등을 이유로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 중 적법절차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경찰의 소추권 남용에 대한 제한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형사절차에 관한 영국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Criminal Procedure)가 1978년 설립되어 1981년 발표한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1985년 범죄기소법(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이 제정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영국 검찰(CPS: Crown Prosecution Service)이 창설된다.

한편 복잡하고 중대한 경제사범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와 회계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수사기구에서 수사와 공소, 공소유지를 함께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1988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1987)을 근거로 SFO가 설립된다.

영국 검찰과 SFO가 유사한 시기에 창설되면서 당시 새롭게 설립되는 검찰의 권한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경찰 등의 반대로 인하여 스코틀랜드식의 강한 검찰 제도의 도입이 어렵게 되면서 지방자치 경찰의 역량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면서도 효율적 형사사범의 도입이 시급한 경제 범죄 분야를 관할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타협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광역화되고 있는 강력 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8년 기존의 자치경찰과는 별도의 국가경찰 조직인 국립범죄수사청(NCS: National Crime Squad)을 신설하게 되는데, 2006년 수 개의 특별수사기구의 기능을 통합하여 조직범죄수사국(SOCA: 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을 다시 창설하고, 2013년 조직 범죄 및 아동 착취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또다시 국가범죄수사청(NCA, National Crime Agency)을 설립한다(현재 NCA는 아동성범죄, 현대판 노예 등 인권 관련 범죄, 불법무기 관련 범죄, 사이버범죄, 돈세탁 관련 범죄 등 조직범죄를 수사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당시 영국의 경찰력만으로는 지능화, 조직화되어 가는 경제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데 대한 심각한 불만과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이에 영국 정부는 Roskill 판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1983년 ‘사기범죄 개선 위원회(Fraud Trials Committee)’를 설립하였고, 위 위원회는 1986년 Roskill 보고서(Roskill Report or Fraud Trials Committee Report)를 출간하게 되는데,²⁵⁾ 위 보고서에서 중대한 기업범죄 및 사기범죄를 전담할 사기범죄 심재처(Fraud Trials Tribunals)와 그 수사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권고에 따라 영국 정부는 1987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1987)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1988년 법무장관 산하에 경제범죄와 부패 범죄를 전담 수사하여 소추까지 할 수 있는 SFO를 창설하게 된다.

나. 목적

25) <https://www.sfo.gov.uk/publications/corporate-information/sfo-historical-background-powers>.

중대비리조사청의 An Introduction to the Serious Fraud Office에서 제시하는 기관의 설립 목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²⁶⁾

1) 장기적 목표

- a. City of London의 자긍심 고취로 인한 경제적 이익 확대,
- b. 경제 범죄의 처벌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
- c. 복잡한 이슈와 관련된 사건 처리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이용하여 참신하고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소개함으로써 형사사법시스템의 효율 증대 기여

2) 단기적 목표

- a. 중대사기 사건을 수사할 때 일관성 있는 처벌 기준 보장,
- b. 복잡한 경제범죄사건과 관련한 자료 축적,
- c. 사건의 수사, 절차의 시작에서의 신속성 증대,
- d. 증권거래 관련 경제 범죄, 컴퓨터 이용 범죄, 보험사기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경제 범죄에 대한 전문성 향상,
- e. 중대하고 복잡한 경제 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절차를 위한 효율적 공소유지,
- f. 복잡한 경제 범죄 사건의 증거를 제시 방법과 관련하여 새롭고 적합한 방식 개발,
- g. 성공적인 기소 비율 증가 등

2. 수사 대상의 범위와 수사대상자 수

가. 수사 대상의 범위

SFO의 수사대상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거나 복잡하여 일선 경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기망성 범죄여야 하고 경미한 사건은 처리하지 아니하는데, 중대하고 복잡한 사기 사건의 기준(Case Acceptance Criterion)은 다음과 같다.

- i) 사기 피해금액이 100만 파운드(약 21억 원)가 넘는 경우
- ii) 사기 범행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 iii) 광범위하게 공익이 관련된 경우
- iv) 수사에 있어서 금융시장에 대한 지식과 같이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 v) SFO의 막강한 권한행사가 필요한 경우 등

영국에는 포괄하여 ‘사기죄’ 라는 단일 죄명이 존재하지 않고 보통 기망성 경제범죄를 포괄하여 사기(fraud)라고 부름. 우리나라에는 형법 제347조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영국에는 그러한 포괄 규정이 없다.

즉 영국에서의 사기(fraud)는 포괄적 개념에 불과하고 어떤 사건에서 어떤 범죄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 다음 중에서 특정해야 한다. 가령, ① 사기성 범죄(Conspiracy to

26) An Introduction to the Serious Fraud Office, April 1989, p. 3.

defraud), ② 절도성 범죄(Theft), ③ 기만에 의한 재산취득, 재산이동, 금전적 이익 취득 (Obtaining property/Money transfer/Pecuniary advantage by deception), ④ 회계 조작(False Accounting), ⑤ 부정 내부자거래(Fraudulent Trading), ⑥ 문서위조(Forgery), ⑦ 뇌물 (Corruption), ⑧ 범죄재산 세탁(Money Laundering), ⑨ 기업 담합(Cartel Offence) 등이 있다.

다만 여기에 나열된 죄들만 사기(fraud)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세금포탈도 해당된다.²⁷⁾

영국의 SFO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를 토지관할로 하고,²⁸⁾ 스코틀랜드와 맨섬(the Isle of Man) 등은 관할에서 제외하고 있다²⁹⁾. 특히 스코틀랜드는 1707년 잉글랜드와 합병하기 이전부터 검찰 제도가 존속해왔고, 프랑스와 유사한 독자적인 사법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었으므로 SFO 관할에서 제외하였다.

SFO의 관할권은 독립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스코틀랜드에는 미치지 않고, 다만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발생한 중대 경제 범죄라 하더라도 잉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 시작된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SFO의 수사 대상은 소수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기(fraud), 뇌물(bribery), 부패(corruption) 사건이며, ‘사기(fraud)’의 개념에 대하여 SFO는 ‘지위 남용, 거짓 설명 또는 특정인의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권리에 해를 끼치는 행위(abuse of position, or false representation, or prejudicing someone’s right for personal gain)’라고 정의하고 있다.³⁰⁾

또한 2010년 뇌물방지법(Bribery Act 2010) 시행(2011년 7월 1일) 이후에는 뇌물,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 발생한 뇌물 사건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및 외국에서 발생한 뇌물사건이라 할지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된 인물이 영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영국 국적보유자 또는 영국 거주권자인 경우, 영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법인과 관련된 경우에도 관할이 된다.³¹⁾

이 밖에도 범죄이익 환수, 외국에서의 중대 또는 복잡한 사기, 뇌물, 부패 범죄 수사의 지원, 해외 탈세를 조장하는 기업 도산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권한(2017년 9월 30일부터)을 가지고 있다³²⁾

3. 조직과 인력

가. 조직

영국 SFO는 법무부 소속이며 ‘법무부와 SFO 사이의 기본 협약’에 따르면 SFO가 독립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법무부와 충실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³³⁾

27) 이정수. 2007. 「영국 특별수사청(SFO) 개관」, 형사법의 신동향 제6호,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p.37.

28) Criminal Justice Act 1987 Part I, paragraph 1(1). ; 서민주. (2020) 재인용

29) 스코틀랜드는 1707년 연합법을 통해 당시 서로의 자치권을 보장하며 잉글랜드와 합병하였다. 교육 제도 등을 비롯한 행정제도와 마찬가지로 사법제도 또한 잉글랜드와 분리되어 있다. 한편 맨섬은 아일랜드해에 있는 브리튼 제도에 속하는 영국 왕실령섬이며 국가 원수는 엘리자베스 2세이나, 주총독(Liutenant Governer)이 대신 정치에 관여한다. 맨 섬의 국제 관계와 국가 방위는 영국이 책임지고 있으나, 영국 정부는 맨섬의 국내 정치에 보통은 관여하지 않는다.

30) Axel Palmer, Countering Economic Crime : A Comparative Analysis (2018), p. 4.

31) Ministry of Justice, The Bribery Act 2010 Guidance (2011. 3.), p. 8.

32) <https://www.sfo.gov.uk/about-us>.

33) 협약의 2번 조항은 법무부와 SFO의 관계에 대해 “상호협력적인 정신과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의 업무에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13번 조항은 “중대비리조사청은 SFO의 수사 기소 기소 대한 모든 업무에 독립적

1) 청장(Director)

SFO의 기관장은 Director라 칭하는데, 전반적인 SFO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건 결정, 조직 관리 등의 역할 수행한다.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이 지명하고 그 직에서 떠나는 것 또한 법무부장관의 관리감독 하에 있어 법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규정³⁴⁾하고 있으나, 다만 개별 사건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SFO 청장의 임기는 4년이고 재임이 가능하며 청장은 특정한 사건의 절차 개시와 타기관으로부터의 사건 인수, 수사에 참여할 외부전문가 지명, 사건 진행의 전반적인 감독, 사건관계인의 소환과 자료제출 요구 등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음 또한 청장은 SFO의 회계책임자(The Accounting Officer)로서 SFO의 공적자금과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이를 투명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다.

또한 SFO 청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³⁵⁾ 소속 직원 중 법정변호사(Barrister) 또는 자문변호사(Solicitor) 자격을 지닌 직원에게 자신의 직무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공무원들은 SFO 청장의 지시 하에 기소 및 재판절차에서 변론권(right of audience) 등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2) 법률고문(General Counsel)

사건 진행 및 재판 준비와 관련한 관리감독, 자문, 사건의 질적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직책으로 수석 법무관(General Counsel) 산하에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뇌물, 부패 부서(Bribery & Corruption Divisions), 경제범죄부서(Fraud Divisions),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회복을 담당하는 범죄수익환수부서(Proceeds of Crime & International Assistance)가 있다.

3) 집행담당관(Chief Operating Offi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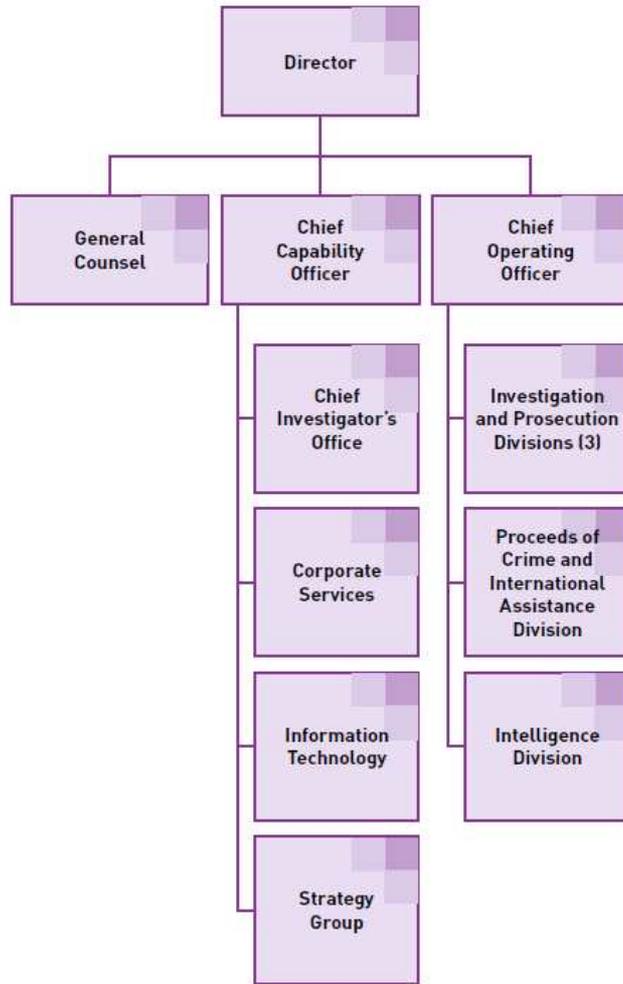
행정 및 수사지원 등을 담당하는 행정부서 영역에서 청장을 보좌하는 직책으로 산하에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Divisions, Proceeds of Crime and International Assistance Division, Intelligence Division 등이 있다.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법무부 장관과의 상의를 해야 한다”고 돼있다.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법무부와 사건 수사 및 기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34) The Criminal Justice Act 1987 제1조 2항.

35) The Criminal Justice act 1987 부칙 제1조 2항.

4) 전략담당관(Chief Capability Officer)



[그림 11] 전략담당관 출처: SFO_Annual Report 2021-22, p.8.

나. 인력

영국 중대비리조사청은 형사재판법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기관으로 청장(Director)은 법무장관이 임명하며 관할 지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가 포함된다. 스코틀랜드는 왕립재정검찰청에서 별도로 관장하고 있다.

평균 직원 수는 2021-2022년 기준으로 전체 617명이며 정규직 457명, 계약직 13명, 행정직원 134명 등 전체 604명이 근무하고 있다(200-2021년 전체 617명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음).

			2021-22	2020-21
Permanently employed staff	Fixed Term Appointments	Agency Staff	Total	Total
457	13	134	604	617

출처: SFO Annual Report 2021-22, p.63.

다. 기관의 기능과 권한

1) 주요 기능

중대비리조사청의 주요 기능은 심각하거나 복잡한 사기, 뇌물 및 부패를 다루는 전문 기소 기관으로 소수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기(fraud), 뇌물(bribery), 부패(corruption) 사건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기(fraud)’의 개념에 대하여 SFO는 ‘지위 남용, 거짓 설명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권리에 해를 끼치는 행위(abuse of position, or false representation, or prejudicing someone’s right for personal gain)’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형법에서 협의의 ‘사기’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영국법상 ‘fraud’의 개념을 정의하거나 영국 형법상 실체법적 개념으로서 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영국법에서 사기(fraud)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① 사기성 범죄(Conspiracy to defraud), ② 절도성 범죄(Theft), ③ 기만에 의한 재산취득, 재산이동, 금전적 이익 취득 (Obtaining property/Money transfer/Pecuniary advantage by deception), ④ 회계 조작(False Accounting), ⑤ 부정 내부자거래(Fraudulent Trading), ⑥ 문서위조(Forgery), ⑦ 뇌물(Corruption), ⑧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 ⑨ 기업 담합(Cartel Offence) ⑩ 세금포탈 등도 사기(fraud) 등을 포함하고 있다³⁶⁾

또한 2010년 뇌물방지법(Bribery Act 2010) 시행(2011년 7월 1일) 이후에는 뇌물,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었음.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 발생한 뇌물 사건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및 외국에서 발생한 뇌물사건이라 할지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된 인물이 영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영국 국적보유자 또는 영국 거주권자인 경우, 영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법인과 관련된 경우에도 관할에 있다³⁷⁾

이 밖에도 범죄이익 환수, 외국에서의 중대 또는 복잡한 사기, 뇌물, 부패범죄 수사의 지원, 해외 탈세를 조장하는 기업 도산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권한(2017년 9월 30일부터)을 가지고 있다.³⁸⁾

2) 권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

중대비리조사청은 독자적인 조사권, 수사권, 기소권과 공소유지 여부에 관한 결정권, 개인정보 정보요구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중대비리조사청은 중대한 부패사건을 개인, 기업,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 시장남용, 국고, 공공영역, 기타 행위 등 7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대체로 100만 파운드 이상 되는 중대 복잡하고 전문적인 부패사건을 경찰, 무역산업부, 세관, 영국은행, 런던 증권거래소 또는 개인으로부터 접수 받아 조사·수사한다.

청장이 특별권한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영장 없이 금융기관에 개인이나 단체에 관한 금융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형사재판법 제3장 제23조 2항).

또한 긴급상황의 경우 사전 통지없이 즉시 답변, 정보제공, 서류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보제공요구에 불응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징역 2년

36) 나하나, “영국 반부패·경제범죄수사청(Serious Fraud Office)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 법무연수원, 2014, pp.19-20.

37) Ministry of Justice, The Bribery Act 2010 Guidance (2011. 3.), p.8.

38) <https://www.sfo.gov.uk/about-us>. ; 서민주(2020)에서 재인용.

이하 또는 1만 파운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며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형사재판법 제3장 제23조 15항).

중대비리조사청이 처리하지 않는 부패사건은 영국 각지 지역경찰 반부패팀에서 수사를 맡고 검찰이 1심법원인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에 예심절차를 거친 후에 2심 법원적인 형사법원(Crown Court)의 정식재판에 회부 되는 반면에 중대비리조사청이 처리하는 중대부패사건은 형사법원에 직접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반부패 효과성이 매우 크다.

라. 타 수사기관과의 역할 분담과 협력

1) 검찰과의 역할 분담과 협력

중대비리조사청은 영국 검찰(CPS)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 산하 관리감독을 받은 독립외청이며 법무부장관은 중대비리조사청장의 지명권한을 가진다.³⁹⁾

법무부 장관과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소청인 SFO, CPS, RCPO(Revenue and Customs Prosecutions Office)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업무규약인 ‘2009년 법무부장관과 산하 기소기관의 업무규약[Protocol between the Attorney General and prosecuting departments(2009)]’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이들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에 답변할 책임이 있다.⁴⁰⁾

중대비리조사청 청장을 비롯한 각 기소청의 기관장은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대하여 각 기관의 기능과 관련하여 답변할 책임을 지는데 있어 이를 보조하고, 매년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의무를 지며,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는 진행상황 등을 보고한다.

한편 원칙적으로 개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은 보고를 받거나 관여하지 않는다.⁴¹⁾ 그러나 극히 예외적으로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건의 경우 수사나 기소 여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기도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국회에서 특정한 사건의 기소 여부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구하도록 국회가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기소 여부 결정시 그 동의를 필요로 하고, 극히 민감한 사건, 형사사법정책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사건, 사법시스템이나 법무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각 기소청의 독립성의 예외 범주에 속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 장관, 정당, 선거 등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동의 또는 상의를 통해 개입하지 않도록 정함으로써⁴²⁾ 정치적인 사건에서는 더욱 엄격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중대부정수사처는 중대한 부정사건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며, 경미하거나 복잡하지 않은 부정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청에서 기소를 담당하며 사기범 죄수사단(Fraud Investigation Group)과 중대부정수사처 간에는 사건의 이송이 가능하며, 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대부정수사처와 검찰청의 공동심의위원회에서(Joint Vetting Committee) 조정한다.⁴³⁾

39) Criminal Justice Act 1987 제1조 2항.

40) AGO, Protocol between the Attorney General and prosecuting departments (2009) 제2조 6항, 제3조 1항, 이 때 각 기관장과 상의하여 guidance를 수립한다.: 서민주(2020)에서 재인용

41) AGO, Protocol between the Attorney General and prosecuting departments (2009) 제4조 2항.

42) AGO, Protocol between the Attorney General and prosecuting departments (2009) 제4(c)조.

43) 나하나, “영국 반부패·경제범죄수사청(Serious Fraud Office)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 법무연수원, 2014.

2) 경찰과의 역할 분담과 협력

중대비리조사청은 중대한 부정사건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며, 경미하거나 복잡하지 않은 부정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청에서 기소를 담당하며 사기범죄수사단(Fraud Investigation Group)과 중대비리조사청 간에는 사건의 이송이 가능하며, 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대비리조사청과 검찰청의 공동심의위원회에서(Joint Vetting Committee) 조정한다.⁴⁴⁾

마. 기관장의 임명 절차와 권한

1) 처장(책임자)의 임명 절차

중대비리조사청은 영국 검찰(CPS)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 산하 관리 감독을 받는 독립 외청이며 법무부장관은 중대비리조사청장의 지명권한을 가지고 있다.⁴⁵⁾

청장의 임명절차를 살펴보면 법무부장관은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서 선출하여 임명⁴⁶⁾하며 관련 절차는 공무원임명규칙(civil service appointment rules)에 따른다.

2) 처장의 임기와 권한

법무부장관은 처장을 임의로 파면할 수 없으며 청장은 공무원으로서, 회계책임자로서 역할도 맡고 있다. 청장의 인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처리하며 직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처장의 임기는 3년이며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⁴⁷⁾

3) 최근 사건, 기소 현황

구분	수사개시	수사종료	수사중	기소(중)	유죄
2021-2022년	43건	58건	130건	22명	2명

pp.19-20.

44) 나하나, “영국 반부패·경제범죄수사청(Serious Fraud Office)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 법무연수원, 2014, p.37.

45) The Criminal Justice Act 1987 제1조 2항.

46) The Criminal Justice Act 1987. Art.1(2). ; 법무부장관은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 및 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와 협의하여 임명절차를 진행한다.

47) 박휘준 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p.175.

제4절 홍콩 廉政公署(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1. 법적 근거와 목적

가. 법적 근거

염정공서의 설립 근거는 홍콩 기본법(Basic Law) 제57조5)와 염정공서 조례(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Ordinance, Cap. 204) 제12조(Section 12)에 근거하여 1974년 2월 15일에 설립되었다.

과거 홍콩에서 부패 문제는 홍콩 최대의 사회악으로, 특히 공공부문의 부패는 부처와 직급을 막론하고 관료사회에 만연하였다. 홍콩은 반부패와 관련하여 일찍이 1898년 이래 영국 법제를 계수하여 비리처벌조례(Misdemeanors Punishment Ordinance)를 제정한 바 있다.

이후 1948년에 부패방지조례(Prevention of Corruption Ordinance)를 제정하였고, 이후 1971년 뇌물방지조례(Prevention of Bribery Ordinance)를 제정하여 부패방지조례를 대체하였다.⁴⁸⁾

2. 조직과 인력

가. 조직

염정공서는 권한과 자원의 배분에 있어 기타 다른 조직과는 달리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염정공서는 행정부 외의 기관이며, 염정공서와 그 최고 책임자인 염정전문(廉政專員, Commissioner)은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회 소속이 아니라 행정장관 산하에 직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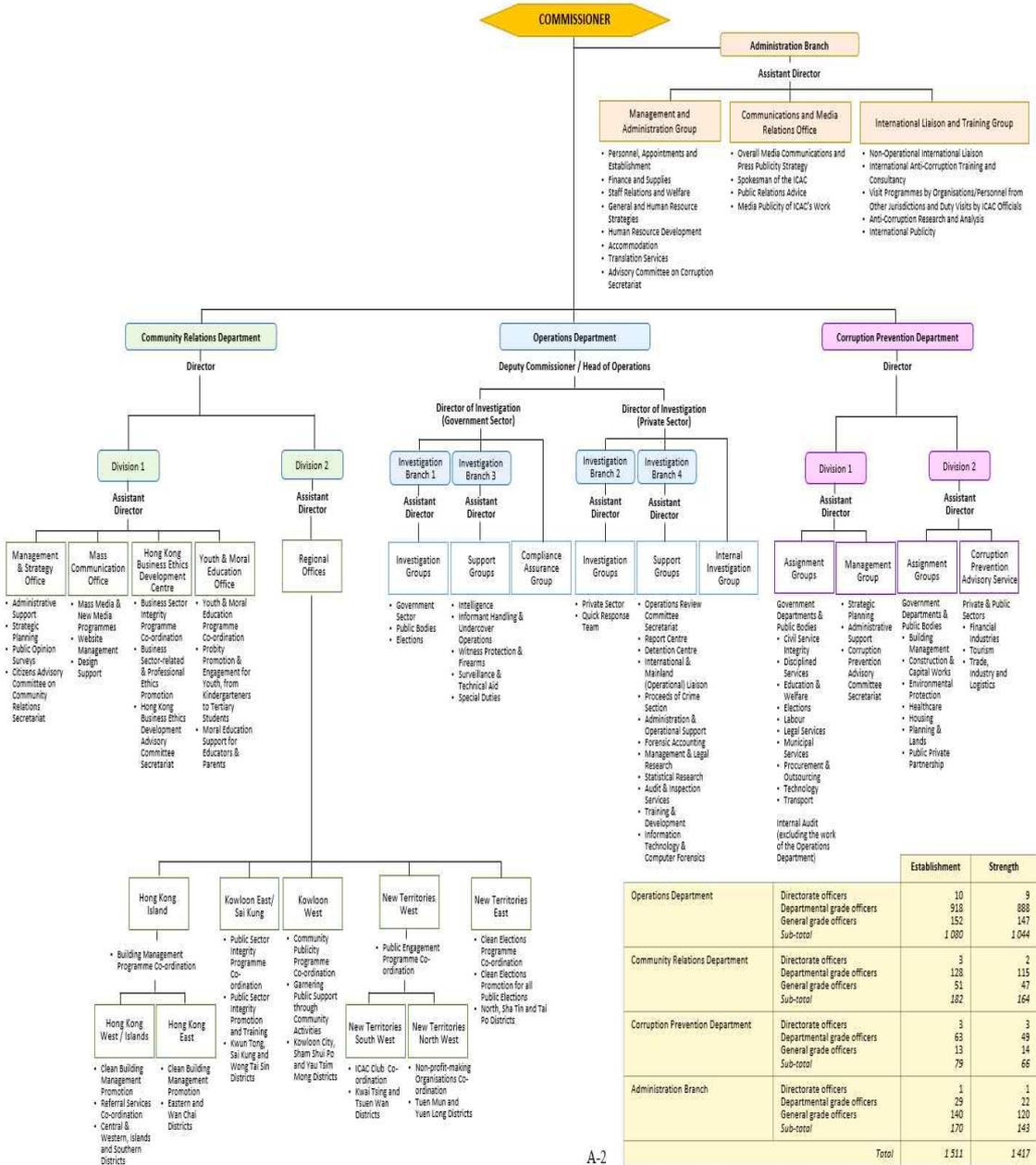
염정공서의 조직은 크게 집행처(Operations Department), 부패예방처(Corruption Prevention Department), 지역사회관계처(Community Relations Department)의 3부서와 행정총부(Administration Branch)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부패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Corruption), 활동심사위원회(Operations Review Committee), 부패방지자문위원회(Corruption Prevention Advisory Committee), 지역사회관계를 위한 시민자문위원회(Citizens Advisory Committee on Community Relations), 고충처리위원회(Complaints Committee)가 있다⁴⁹⁾

48) 최진욱, 「제도와 부패: 홍콩 염정공서(ICAC)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2005, pp.327~328.

49) 박준휘 외, “외국 반부패 특별수사기관의 선진 수사제도 연구 -영국 중대부정수사처와 홍콩 염정공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국무조정실 연구용역 보고서. p.51.

Appendix 1 Organisation of the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Position as at 31.12.2020)



A-2

[그림 12] 염정공서 조직도 출처: 2020 Annual Report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51.

나. 인력 현황

염정공서의 정원은 2020년 기준으로 정원 1,511명에 현원 1,4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사 담당인 집행처가 1,044명으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염정공서 요원은 특수직 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 다른 별도의 지위와 보수 체계를 적용받으며 독립성 유지를 위해 경찰과 인사이동도 금지된다.

<표 3> 홍콩 염정공서 인력 현황(2020년)

구 분		정원	현원
집행처	수장급	10	9
	부분직계 인원	918	888
	일반직계 인원	152	147
	소계	1,080	1,044
부패예방처	수장급	3	3
	부분직계 인원	63	49
	일반직계 인원	13	14
	소계	79	66
지역사회관계처	수장급	3	2
	부분직계 인원	128	115
	일반직계 인원	51	47
	소계	182	164
행정총부	수장급	1	1
	부분직계 인원	29	22
	일반직계 인원	140	120
	소계	170	143
전 체		1,511	1,417

출처: 2020 Annual Report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Hong Kong



[그림 13] 염정공서 인력

3. 기관의 기능과 권한

가. 주요 기능

염정공서(ICAC)는 염정공서 조례(Cap. 204)에 의해 독립하여 부정·부패범죄를 수사하는 기구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염정공서 조례(Cap. 204)에서 정한 부패 관련 범죄 뿐만 아니라 공직남용행위에 대한 수사
- ② 반부패법(Cap. 201)에 따라 홍콩에서 발생하는 정부 및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구(Public Body) 및 민간영역(Private Sector)의 뇌물 등 부패 관련 범죄 수사. 반부패법(Cap. 204)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이익에는 금전, 선물, 금전대차, 계약, 청탁 등이 포함되지만 주류 및 간단한 유흥 접대라고 할 수 있는 관대(款待, entertainment)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 ③ 선거(부패 및 불법행위) 조례(Cap. 554)에 따른 선거의 연결성 보장 및 투명성 감독

나. 권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

염정공서의 요원은 시민 신고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공무원의 부정·부패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경영자의 동의가 있으면 민간 기업의 배임 행위 등도 수사할 수 있다. 이들은 증거물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으며, 체포영장 없이도 48시간 동안 용의자를 구금한 채 수사할 수 있다.

집행처는 일단 수사를 개시한 부패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사를 중단할 수 없다. 수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으면 법조계와 회계업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별도 전문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는 집행처 요원이 부패 용의자의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염정공서는 요원의 권한 남용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조사팀과 시민 신문고 제도를 두고 있으며, 전문위원회와 율정사(법무부 격)의 감독도 받고 있다. 염정공서는 강력한 수사권이 있지만, 용의자 기소 여부는 검찰을 거느린 율정사 몫이다.

염정공서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부패를 수사할 수 있는 염정공서에 과도한 권한이 몰리는 것을 막고, 이들 기관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4. 다른 수사 기관(검찰 및 경찰)과의 역할 분담과 협력

가. 검찰기관과의 역할 분담과 협력

염정공서는 부패범죄와 관련하여 증거수집, 피의자 체포 및 조사, 증인 조사 등의 수사를 하여 기록을 검찰로 송치하며 그 과정에서 형사검공과 검사는 피의자의 체포 필요성, 수사 방향 및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염정공서에 자문을 하나,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

사건이 기소될 경우, 염정공서에서 담당하는 사건은 모두 검찰의 승인하에 기소가 이루어져야 하며 염정공서가 담당 사건을 불기소 할 경우에는 형사검공과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자문을 받아 우선 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홀딩 차지(Holding Charge)’라고 한다.

신고내용이 악의적이거나 근거가 없을 때에는 활동심사위원회(ORC: Operations Review Committee)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고, 부패가 아닌 비위 사건에 대해서도 동 위원회를 거쳐 관련 기관에 이첩해야 하며 사건의 기소 여부에 관하여 형사검공과 검사와 염정공서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염정공서가 형사검공과 형사검공전원(DDP)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검사의 의견이 궁극적으로 반영되며 검사의 의견을 염정공서가 거부할 수는 없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염정공서의 의견 보다는 형사검공과 검사의 의견이 우선되며 법무부 형사검공과와 염정공서 간에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토론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며, 관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기도 한다.⁵⁰⁾

나. 경찰과의 역할분담과 협력

경찰 수사 중에 부패 관련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염정공서의 승인을 받아 경찰이 계속하여 부패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다(반부패법 제2조).

5. 기관장의 임명 절차와 권한

가. 처장(책임자)의 임명 절차

염정공서의 책임자인 염정전문(廉政專員)은 행정장관의 추천으로 의회에서 임명하며 그 외 염정공서 처장 3명도 행정장관이 지명한다.

나. 처장의 임기와 권한

정부 기관의 간섭도 받지 않으며, 최고 책임자인 염정전문(廉政專員)은 행정장관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 최근 수사 현황

구분	수사 개시		이연	수사 종료	계류 (법률자문)	기소*
	일반	선거범죄				
2021년	1,692건	159건	1,151건	1,741건	82	200명

* 기소 200명 구성(공무원 14명, 공공기관 1명, 비공무원 160명, 비공무원 공범 15명, 선거 관련 10명)

50) 법무부, “대만·홍콩·싱가포르의 부패범죄수사기관 출장보고서”, 2012.12. p.38.; 박준휘 외, “외국 반부패 특별수사 기관의 선진 수사제도 연구 -영국 중대부정수사처와 홍콩 염정공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국무조정실 연구용역 보고서. p.51.에서 재인용.

제5절 해외 반부패 수사 기관의 특징

해외 반부패 수사 기관의 인력과 조직 측면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싱가포르 CPIB: 다양한 인력자원의 공개경쟁 채용과 성과급

세계 반부패기관의 모델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의 특별조사관(CPIO: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Officer)은 헌법기관인 공무원 인사위원회(PSC)에서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특별조사관 응시자격은 4년제 대졸자로서 정의감, 성실성, 정직성, 공정성, 청렴성, 준법성, 책임감을 테스트하는 직무적성 검사와 인성검사가 우선하며 일반 공무원 선발절차보다 까다롭다. 선발된 요원은 4개월간 경찰학원에 입교해 형법과 부패방지법 등의 법률 과정, 기본조사기법, 총기 취급의 교육과정을 학습하고, 2년간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규 특별조사관으로 임명된다. 특별조사관의 매월 기본급은 4,340~5,193달러(싱가포르 CPIB 홈페이지)로,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별도 지급된다.

특별조사보좌관(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Assistant, CPIA) 역시 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공개 채용되며, 특별조사보좌관의 응시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특별조사관에 준하는 정의감과 청렴성이 강한 인성의 소유자이며, 소환장 송달, 체포 및 구인, 수사, 압수 수색 지원 등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특별조사보좌관의 매월 기본급은 1,826~2,748달러로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별도 지급된다. 행정관리관(Management Executive)은 입법, 국제 관계, 전략 계획 및 기업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들의 매월 기본급은 3,100~4,038달러로 특별조사관과 비슷한 수준이다.

2. 대만 염정서: 열린 인적 구성원과 지방 조직 운영

대만 염정서의 직원은 법무부 조사국, 검찰원, 사법부 산하의 특별정사조, 검찰 등 법집행기관과 검찰기관 공무원 중에서 선발 충원된다. 각 팀에는 약간 명의 검사도 상주하고 있는데, 주로 기소와 기소 유지 업무를 담당한다. 염정공서 본부 외에 북부와 중부 남부 3개 지방 염정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3. 영국 SFO: 다양한 인적 구성

영국의 SFO는 변호사 회계사 경제·무역·건설·의학·전자공학 포렌식분석가 등 각계 전문직 450명 가량이 상근하고 있다. 검찰청과 SFO를 감찰하기 위해 설립한 영국의 제2공수처로 불리는 검찰감찰처(CPSI) 본부에는 변호사, 검사, 회계사, 컴퓨터 보안전문가 등이 상근하고 있다.

4. 홍콩 염정공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적 구성원

홍콩의 염정공서(ICAC)는 2020년 말 현재 법률, 법의학, 행정, 재무, 경제, 경영관리, 교육 및 정보기술 분야 박사급 전문가 115명을 포함 1,4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채용의 공고, 시험, 선발, 면접, 임명과 훈련 등 인사 전반적 업무를 염정공서가 독립적으로 실행한다. 염정공서 직원들은 생계형 부패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공무원들보다 1.8배에 달하는 높은 보수와 각종 복리후생을 제공받고 있다.

〈표 4〉 해외 반부패 수사기관의 특징

구분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⁵¹⁾	대만 엽정서	영국 SFO	홍콩 엽정공서	한국 공수처
소속	총리 직속	법무부 소속 ⁵²⁾	독립기구	행정장관(행정부)직속	독립기구
설립	1952년	2011년	1988년	1974년	2020년
근거	부패방지법, 부패재산압류법	부패방지청 조직법(설치법) ⁵³⁾	영국 형사사법법(The Criminal Justice Act 1987)	홍콩 기본법(Basic Law)과 엽정공서 조례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수처법)
수장 임명	총리 추천 → 대통령 임명 (부패방지법 제3조)	13~14직급 공무원 중 임명	법무부장관이 임명 ⁵⁴⁾	행정장관 추천→ 의회 임명	처장후보추천위원 회 추천(2명)→ 대 통령이 그 중 1명 을 지명한 후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 명
인력	108명(2018년) ⁵⁵⁾	222명(2020년 현원, 정원 240명) ⁵⁶⁾	604명(2020-21년 기준)	1,417명(2020년 기준, 정원 1,511명)	85명(2022.9.30.)
인구	568.6만 (2020년)	2,357만 (2020년)	6,722만 (2020년)	748.2만 (2020년)	5,178만(2020년)
수사 대상	제한 없음 (민간인 포함) ⁵⁷⁾	공무원	제한 없음 (중대하고 복잡한 사기 사건) ⁵⁸⁾	제한 없음 (민간인 포함) ⁵⁹⁾	고위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상 범죄	뇌물수수죄, 부패방지 법상 부패범죄 및 그 예비·음모죄 등에 대 하여 연루된 공무원 및 관련 민간인 부패범죄만을 담당하 는 것은 아니고 이와 관련 있는 다른 범죄 의 수사도 담당	뇌물 범죄, 횡령 권한 남용 등 부 패범죄	중대하고 복잡한 사기 사건 i) 사기 피해 금액이 100만 파 운드약 21억 원가 넘는 경우 ii) 사기 범행이 상당히 국 제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iii) 광범위하게 공약이 관련된 경우 iv) 수사에 있어 금융시장에 대한 지식과 같이 상당한 전 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v) SFO의 막강한 권한행사 가 필요한 경우 등	민간과 공공분야 의 부패범죄 수사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 인의 가족이 범한 죄. 다만, 가족의 경 우에는 고위공직자 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
권한	수사권 ○ 기소권 X	수사권 ○ 기소권 X	수사권 ○ 기소권 ○	수사권 ○ 기소권 X	수사권 ○ 기소권 △ ⁶⁰⁾
	- he기관 중복수사가 가능 -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송부(검사 기소 승인)	- 뿔검찰관 (과건검사) 수사지휘 - he기관 중복수사 가능 (駐뿔검찰 관 조정) - 駐뿔검찰관이 소속 검찰청 결 재로 기소	- 수사 및 소추 기관의 다원화 - 내무부가 법무 가능 겸직	- 부패수사는 엽 정공서 전담(부 패범죄 발견 시 이첩) - 올정사(법무부) 검사가 기소	-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 료하는 때에는 범 인, 범죄사실과 증 거를 수사 -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 여 이첩 요청 및 타 수사기관에 사 건을 이첩

51) <https://www.cpi.gov.sg/who-we-are/our-work/organisational-structure/>

52) <https://www.aac.moj.gov.tw/6398/6400/6402/53729/post>

53) 김태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형사법의 신통향」, 제54호, p. 2017.

54) Criminal Justice Act 1987 제1조 2항.

55) King hea Joseph, “A comparative study of the anti-corruption measures of Hong Kong and Singapore since 1945”, The University of Hong Kong, (The HKU Scholars Hub), p.63. ; 조재현(2015), 싱가포르의 공
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에서 재인용

56) aac-annual-report-2020. p.12.

57) 싱가포르 「부패방지법」 (출처: <https://sso.agc.gov.sg/Act/PCA1960> 검색일 2022.7.20.)

58) 나하나, “영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청(Serious Fraud Office)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 법무연수원, 2014, pp.1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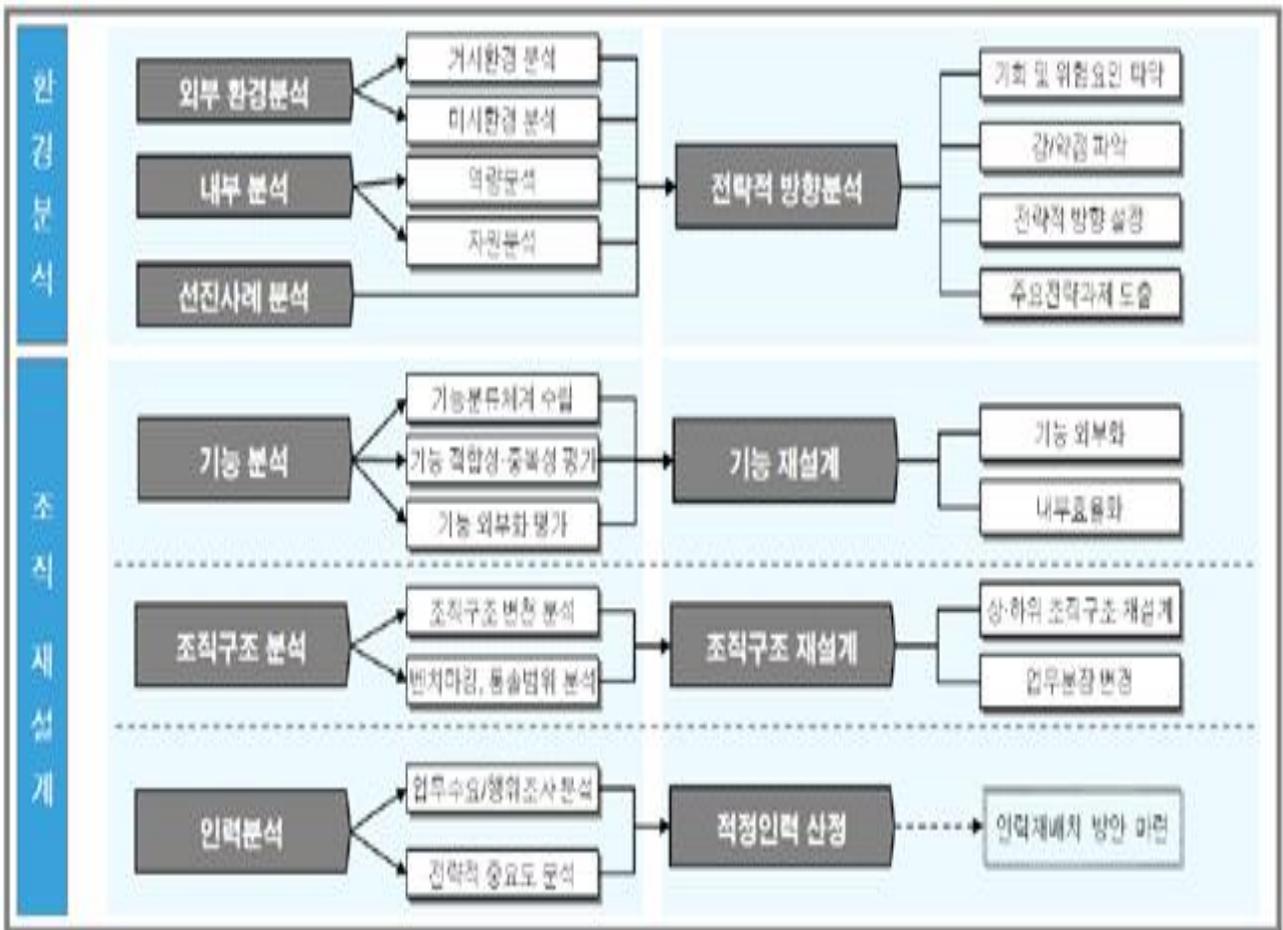
59) <https://www.cpi.gov.sg/who-we-are/our-work/organisational-structure/>

60)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대상이다.

제3장 공수처의 조직기능 분석

제1절 공수처 맞춤형 조직진단 모형과 기능·인력 분석

공수처의 조직기능과 인력 진단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분석모형(행정안전부, 조직진단매뉴얼, 2011; 서울연구원, 상시조직진단 매뉴얼, 2017)을 선정한 후 분석모형에 입각하여 외부환경분석, 내부 분석 등의 환경분석을 실시한다. 공수처의 기능과 조직구조분석 및 인력분석을 위해 법령검토, 문헌검토, 전문가조사(해당 분야 전문가 6인), 실무자 심층면접 조사(8월 30일, 부서별 중요 기능 담당자 총 16인 면접조사)를 통해 적정한 기능과 조직구조 및 적정인력을 추정한다. 인력 규모 산정에 있어 객관적 기준을 찾기 위해 수사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수사수요 분석과 중요수사 부서별 담당인력 평균치를 통해 검사 및 수사관의 인력을 분석하고,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한 규모의 기관들에 대한 행정기능 및 인력 분석과 행정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공수처의 행정업무 담당인력 규모를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해 산정한다.



[그림 14] 공수처 조직진단 모형(행정안전부, 2011)

제2절 공수처의 SWOT분석과 전략

1. 공수처의 SWOT분석

공수처의 대내외 환경에 대해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를 분석한다.

〈표 5〉 공수처의 SWOT분석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도입 노력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 검찰 견제기능(기존 수사-기소 관행 견제) ○ 반부패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제도화 ○ 독자적인 규칙 제정권 확보 ○ 정치적 책무성 (국회 요구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수사인력 유치 어려움으로 수사역량 문제 ○ 인력규모 법제화와 임기제로 인력운영의 경직성 ○ 행정 및 수사지원 인력의 절대적 부족 ○ 권한의 협소화 /기소권 최소화/ 기소 대상 범죄와 수사대상 범죄 분리 ○ 반부패수사기관 간 유기적 공조체계 어려움 ○ 신생기관으로서 공수처형 수사체제 확립 위한 인적·물적 자원 현저한 부족
기회(O)	위기(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부패 척결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 인권수사·공정수사 절차 및 관행 개선 ○ 적법절차 준수 요구 ○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요구 ○ 공수처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사법체계 변화와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 공수처 업무 수행에 대한 정치적 대립 격화 ○ 공수처 설립부터 여야 간 정치적 갈등으로 공수처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위협 ○ 지능화·전문화되는 불법·비리 활동의 내밀화

2. 공수처의 SWOT전략

공수처의 대내외 환경과 조직의 강점과 약점 분석을 통해 SO전략, ST전략, WO전략, WT전략을 수립한다.

〈표 6〉 공수처의 SWOT전략

성장 전략(SO)	보완전략(W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친화적 수사 절차 및 관행 개선 ○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국민적 신뢰 확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의 중심센터 기능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수처 수사체제 조기 구축과 인프라 확충 ○ 수사역량 제고 위한 탄력적 인력운영 제도화 ○ 반부패수사기관 간 수사협력체계 구축
극복전략(ST)	생존전략(W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화·전문화 범죄 대응 우수 수사인력 확보 ○ 공수처 업무수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추구 ○ 공수처 제반 규정의 체계화로 공정한 수사 관행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능동·신속 대응체계 구축 ○ 행정 및 수사지원 절대 부족인력 확충 ○ 외부의 우수 수사 및 행정인력의 확보방안 마련

제3절 공수처의 조직기능 분석

1. 공수처의 중요 기능

공수처의 중요기능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기관이면서 국회 보고 등의 입법부 관할 독립적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표 7〉 공수처의 주요 기능 분석

구분	특수 요구 기능과 역할		조직 요구 기능
반부패 수사 전문기관	수사필수기능		수사, 기소, 공소유지,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수사지원기능		수사정책, 정보수집, 사건접수 및 관리, 과학수사(증거수집,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역량 교육 및 훈련
중앙행정 기관	독립적 중앙행정기관	일반 조직운영 필수기능	정책, 기획, 예산, 관리, 복리후생, 언론 홍보, 감사
	입법부 관할 행정기관	국회 감사, 현안 대응	입법부 감사대비, 국정감사
	신생 중앙행정기관	인프라 확충 기능	시설 및 장비 확충, 인적·물적 자원 관리 확충

2. 공수처의 중요 기능에 따른 담당인력

- 1) 반부패 수사 전문기관의 기능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를 위한 기능과 역할은 물론, 개인비리(이첩수사), 권력형 비리(직접수사), 기관별 수사 곤란한 영역(협력수사) 등 특별한 이첩·직접·협력 수사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
- 2) 반부패 수사 지원기관의 기능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수사정책, 정보수집, 사건 접수 및 관리, 과학수사(증거수집,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역량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
- 3) 독립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 공수처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일반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능(예, 정책, 기획, 예산, 인사, 총무, 언론, 홍보, 감사, 교육훈련 등)을 필수적으로 수행할 기능과 인력이 필요하다.
- 4) 입법부 관할 행정기관의 기능 :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조와 제22조에 독립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나, 제17조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입법부의 요구에 대응하여야 할 기능과 인력이 요구된다.
- 5) 신생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 공수처는 출범 1년 6개월 된 신생 조직으로 수사기관으로서 독립청사 마련은 물론, 수사시설 및 관련 장비를 조속히 확충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해야 할 기능과 역할 인력이 필요하다.

3. 공수처의 조직 기능

공수처의 조직 기능은 조직의 직접적인 목적인 수사 기능과 목적 달성을 위한 간접 기능으로 수사 지원기능과 기관유지기능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공수처의 본연의 기능인 수사기능은 수사부와 공소부 그리고 수사과에서 담당하며, 수사를 지원하는 기능은 수사기획관, 인권수사정책관 등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공수처의 기관 유지를 위한 행정 기능은 처장실을 포함한 기관 단위의 대변인과 인권감찰관 그리고 사무처 단위의 차장실, 기획조정관 등에서 수행된다.

〈표 8〉 공수처의 조직 기능 분석

구분	기능분류	대기능		중기능 (업무군)	소기능(단위업무)			비고
		(실/부/관)	(과/담당관)		전체 업무	일반업무 (타부처 공통)	고유업무 (공수처 특화)	
수사	수사기능	수사부	수사부	1	2		2	
		공소부	공소부	1	4		4	
		(차장실)	수사과	1	1		1	
	수사지원 기능	수사기획관	수사기획관	1	3		3	
		인권수사정책관	인권수사정책관	1	1		1	
행정	기관유지 기능	기획조정관	사건관리	2	8	3	5	
			기획재정	5	15	15		
			운영지원	13	34	34		
		인권감찰관	인권감찰관	5	13	13		
		기획조정관	기획재정	5	15	15		
		대변인실	대변인	1	3	2	1	
총괄	총괄기능	처장실	처장실	1	1	1		
		차장실	차장실	1	1	1		

제4절 공수처 수사 기능 및 인력 분석

1. 공수처의 수사 대상 및 범위

공수처의 수사기능 및 적정 인력은 수사대상 및 수사범죄 범위,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첫째, 수사대상에는 대통령, 부처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경찰 등 고위공직자 약 7,100명과 고위공직자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해당된다.

둘째, 수사범죄 범위와 유형으로 선거방해, 뇌물공여 등 공무원 직무범죄, 횡령·배임·공문서 위조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 등의 고위공직자 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인 은닉·도피, 위증, 증거인멸 등의 고난도 수사범죄 등이 있다.

셋째, 타 수사기관과 관계로 공수처장의 이첩요청권,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시 통보의무, 수사개시 회신, 타 수사기관에 대한 재이첩권 등의 고위공직자 범죄의 실질적 행사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수사 및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넷째, 공수처 설립에 따라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따른 많은 수의 고소·고발·진정 등 사건 접수·처리 업무와 신뢰할 만한 처리 결과 산출을 위한 수사지원 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수처의 공소기능 유지를 위해 고난도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첨단과학 수사 전문 인력과 공소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수사 및 검사 인력이 필요하다.

2. 공수처 수사기능 운영실태 분석 - 수사 및 수사정책 지원

공수처에는 수사1부, 수사2부, 수사3부와 공소부의 검사와 수사관이 참여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는 25명(처장 1명, 차장 1명, 부장검사 7명, 수사처 하부조직에 두는 검사 16명)으로 공수처법 제12조 제1항 본문 관련 수사처검사 정원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수처 수사관 정원은 40명으로 직급별로 살펴보면, 서기관 2명, 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 4명, 검찰사무관 13명, 검찰주사 18명, 검찰주사보 3명으로 되어 있다(공수처 직제 별표2).

<표 9> 공수처의 수사 및 수사정책 기능과 인력 분석(' 22. 9. 30. 기준)

구분	정원		현원		결원	
검사	25		21		△4	
수사관	40		34		△6	

부서	기능		검사인력		수사관 인력		
	기능	소기능(단위업무)	계	자체 정원(급)	계		
총계			21	21(검사)	29	29(수사)	
처·차장실	총괄 관리	기관총괄, 업무배정·조정	2	2(검사)			
수사부	수사 1, 2, 3	사건 수사, 제정신청 등	14	14(검사)	27	27(수사)	
공소부	공소	공소 제기 및 유기 등	2	2(검사)			
수사과	수사	과학 수사, 디지털포렌식 등					
인권수사 정책관실	인권수사	인권수사정책관실 총괄 인권수사관련 중·장기 제도 연구	1	1(검사)			
	수사심의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업무 지원					
수사기획관실	수사기획관	수사기획관실 소관 업무 총괄	1	1(검사)			
	수사기획	법령, 규정 등 제·개정 수사 관련 지침 마련	1	1(검사)			
		수사 기획 업무					
	대외협력	국회 대응 업무					
		유관기관 협조 업무					
	범죄정보수집	범죄정보 수집 및 관리					
	업무지원	업무지원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제공시스템 업무 협조			1	1(수사6)
			공수처 위원회 관리				
KICS 관련 개선 업무							
공수처 수용자 대기실 점검							
수사 관련 시스템 관리							
서무	서무	수사업무폰 및 법률신문 관리			1	1(수사7)	
		수사부서 상훈 업무					
		기타 수사 관련 서무 업무					

※ 수사관은 수사 및 수사정책 부서 외에도 인권감찰관실에 2인, 기획재정담당관실 국회담당 1인, 사건 관리담당관실에 2인이 근무 중에 있음.

실제 공수처에 수사기능을 담당하는 기능과 관련 인력 배치의 현재 인력을 살펴보면, 처장 1명,

차장 1명, 수사부 18명(정원 18명), 공소부 2명(정원 2명), 인권수사정책관 1명(정원 1명), 수사기획관 2명(정원 2명)과 수사관 35명(수사기능 수행 30명, 행정부서 지원 5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22년 9월 30일 기준 공수처 수사인력 현황을 보면, 검사 정원 25명에 현원 21명, 수사관 정원 40명에 현원 34명으로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 총 10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표1> 참조].

수사부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사건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기소분리 사건 외의 경우 공소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사건 이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소부는 수사·기소분리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수사부의 사건 결과에 대한 분석·검증 및 처리,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면·감형 및 복권,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수사정책관은 인권 친화적 수사와 적법절차의 준수 등을 위한 중장기 제도연구 및 교육,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등 수사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사기획관은 수사업무 기획 및 조정, 유관기관 협력 업무, 고위공직자범죄 정보 수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사과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전자적 증거의 압수·분석 및 지원(디지털포렌식), 과학적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수처 심층 인터뷰 주요내용 - 수사기능>

고위공직자 수사는 처음부터 그게 딱 드러나서 수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수사를 진행을 하다가 혹은 이제 일반 공직자들의 비위수사를 하다가 뒷선으로 연결돼 있는 정황이 드러나서 고위 공직자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고위공직자 범죄만 찾는다고 한다면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를 하게 되거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음해성 고소·고발은 그냥 기각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검사).

검찰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해 놓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쌓아 놓은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공수처 수사관처럼 아예 제로베이스에서 자료 조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거기서 2명이 하면 될 것을 우리는 5명이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검사).

공수처도 전문 영역별로 조직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000검사).

기업 관련된 수사라고 한다면 최소 부장검사 한 명과 그 도와주는 검사 3명,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의 정원으로는 수사 두 군데 하고 기존에 진행했던 수사에 대한 공판 진행을 하고 하면 더 이상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000수사관).

공판은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는 상황이고 수사 대상들이 잡범들이 아니고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법원 간다고 봐야 되므로 최소 3년이 걸립니다. 검사의 3년 임기를 놓고 볼 때 사건을 끝내지 못하고 임기가 만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검사).

검찰과 차별화된 성격으로서의 공수처는 인권수사의 모범과 전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권 수사의 개념 설정도 해야 되고, 인권 친화적 수사의 절차 및 관행 개선방안도 제시해야 하는데 담당할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검사).

다른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기존 자료들이 다 축적이 되어 있어 수사가 상당히 좀 용이한데 공수처는 자료들이 별로 없어 자료 수집 단계부터 많은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범죄 정보를 수사로 연결할 수 있는 수사력을 강화하려면 결국 범죄정보 수집 및 인지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000검사).

수사인력의 변동 현황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검, 경찰청 등 파견 수사관들의 원소속 복귀 등으로 인해 인력 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으며, 수사 기능의 유지를 위해 '22년 9월 30일 기준 관계기관에 수사관 파견을 요청하고 있으나, 수사관 파견이 이전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 출범 이후 3차에 걸쳐 수사관을 채용하였으나, 수사관 정원이 4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관계기관 파견인력의 원소속 복귀로 현재('22년 9월 30일 기준) '21년도 상·하반기 수사인력보다 더 적은 인력 규모로 수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 10〉 수사인력 현황(실근무 기준)

분류/기준	' 21.상반기	' 21.하반기	' 22.상반기	' 22.9.30. 기준
검사	15	23	22	21
수사관	43	70	43	40
계	58	93	65	61
비고	수사관 파견 25	수사관 파견 35	수사관 파견 13	수사관 파견 6

자료: 공수처 내부자료('22년 9월)

3. 공수처 수사기능 운영실태 분석 - 수사행정 지원

공수처에 수사를 지원하는 수사행정 부서인 사건관리담당관실이 있다. 사건관리담당관은 공수처에 접수 및 배당한 사건을 총괄하며, 수사 사건, 민원 업무, 행정서무, 콜센터 등의 수사 및 비수사 사례를 담당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사건관리는 공수처의 수사 기능과 연계한 핵심 기능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수사관 1명과 공무원 2명으로만 운영 중이다. 민원업무는 공수처가 접수한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며, 정원 1명을 두고 있으며, 업무 지원을 위한 공무직을 2명 두고 있으며 별도로 콜센터를 외부위탁으로 하여 운영 중이다. 행정서무는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영장, 준항고 처리 및 정보공개를 포함한 일반서무 업무를 포함하며, 파견직 1명과 공무원 1명의 실근무 인력 2명으로 운영 중이다.

〈표 11〉 공수처의 수사행정기능인 사건관리담당관실 현황

부서	기능		인력			
	기능	소기능(단위업무)	계	자체정원(급)	파견(급)	공무직
총계			11	2(수사)	1	8
기획 조정관실	사건관리 담당관실	과장	사건관리담당관실 소관 업무 총괄	1(수사4)		
		사건관리	사건관리업무 총괄(공직범죄사건 여부 점검, 사건접수·분류·배당)			1
			사건 배당 처리, 입수물 접수처리, 사건 통계			-
			사건처리결과 발송, 사건관리 업무 보조			1
	민원	민원업무총괄(민원실, 콜센터, 국민신문고 운영), 민원·사건 분류		1(수사5)		
		민원실 근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민원접수·처리, 기록열람·등사				1
행정서무	내부고발자 등 보호·지원, 영장, 준항고 등 처리, 과 서무			1(지자체5)		

부서	기능		인력			
	기능	소기능(단위업무)	계	자체정원(급)	파견(급)	공무직
		정보공개청구 업무, 재정신청 업무, 사무 업무				1
	콜센터	콜센터 업무 총괄				1
		전화민원응대				1
		전화민원응대				1

<공수처 심층 인터뷰 주요내용 - 수사지원기능>

범죄정보 수집은 공수처의 직제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인력이 없어서 지금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범죄정보 수집 부분과 추가 지원 부분으로 수사 관련 각종 요청사항의 처리가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000수사관)

공수처가 수사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하는 상설 기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니 고질적인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수사관).

수사에 필요한 총무 역할을 해야 하기도 하고 현안 수사도 많아 각종 TF팀을 구성하여 여기저기 지원 근무를 하다 보니 소속감도 결여되고 연속성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행정 업무를 하고 있으나 수사와 관련된 행정의 경우 수사지원부서로 넘어와 수사관들이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수사관이 수사에만 집중할 수 없습니다(△△△수사관).

공수처에 제출되는 민원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들에 대한 사항들이므로 민원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민원처리에 있어 고도의 법률지식이 요청되고 있어 수사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이 요청되고 민원처리에 있어 시간소요가 많이 됩니다(□□□수사관).

4. 공수처 수사업무의 수요 확대

첫째, 공수처의 수사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단순 음주운전이나 절도 등 벌금사안(대부분 경찰에서 초동조사가 되어 일반검찰은 확인차원의 업무)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하는 공안(직권남용)사건과 특수(알선수재, 뇌물, 변호사법 위반)사안으로 사안의 난도와 조사 범위와 복잡성으로 훨씬 많은 인력이 요청된다. 즉 검사 1인이 담당하는 사건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22년 3월 사건사무규칙 개정으로 전건 입건 배당방식으로 사건사무 규칙을 적용함에 따른 검사 1인당 처리 사건 수의 절대량 급증으로 검사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 사건사무규칙 개정 전과 후의 사건처리 건수의 증가가 2.43배로 나타나 사건처리 건수의 급증은 절대적인 검사 인력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수사처 검사들은 공수처 조직기능수행을 위해 일반행정업무(기획, 인권, 운영, 감찰, 법제, 국제, 국회 업무보고 등)에 참여하고 있다. 행정업무 수행 인력의 부족 등으로 기획검사 2명, 인권검사 1명의 3명의 검사가 담당하고, 국회보고 등의 업무를 다수 검사들이 참여하고 있어 전문 수사기능에 제한을 받고 있다.

넷째, 기소건수의 증가에 따르는 공판검사 수요 증가가 자연적으로 수사 검사의 업무 가중으로 연결되어 수사 검사의 역량 저하로 이어진다. 검사, 판사, 수사관은 공수처에서 직접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1개 재판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기소 대상자가 많아지면 처·

차장을 제외한 19명의 검사('22. 9. 30. 기준)가 수사업무보다는 재판업무에 매달리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표 12〉 주요 지방검찰청 수사 검사 대비 공판 검사 비율 ('22년 8월 31일 기준)

서울중앙지검*	검사(명)	인천지검	검사(명)	의정부지검	검사(명)
반부패수사 1부	8	형사1부	6	형사1부	5
반부패수사 2부	7	형사2부	5	형사2부	5
반부패수사 3부	7	형사3부	5	형사3부	5
강력범죄수사부	6			형사4부	5
공정거래수사부	7			환경범죄조사부	4
범죄수익환수부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	5
공판제5부	20	공판부	7	공판송무부	10
수사대비 공판검사 비율	0.51	수사대비 공판검사 비율	0.44	수사대비 공판검사 비율	0.35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제4차장검사실 수사 검사 대비 공판 검사 비율만 적시하였음

다섯째, 수사처에 고위공직자의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기능과 피해자 구제 업무의 강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실 조직구조와 기능을 보면, 범죄수익환수부 조직에 검사 4명을 배치하여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에 필요한 기능과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공수처는 뇌물 공여 및 범죄수익을 조기에 환수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고위공직자범죄를 예방하고 철저한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기능과 조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여섯째, 수사처 검사의 임기가 3년으로 짧아 수사 개시 후 임기가 만료되어 중간에 이탈하거나 휴직, 병가, 이직 등의 비율이 높아 연속성 있는 수사 진행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다. 검사 3년 임기제는 수사·공판 담당 검사의 업무수행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수사·공판검사 인력의 부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제도적 결함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반부패 수사역량의 제고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효율화와 수사기관 간의 갈등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규정한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장의 이첩요청권,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시 통보의무, 수사개시 회신, 타 수사기관에 대한 재이첩권 등 관련 수사기관과의 실질적 수사 협의를 위한 수사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수사협의체의 실효성 있는 제도화 방안과 성과 제고를 위해 수사협의체의 운영 전담부서 신설과 필요한 검사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부록2 참조].

5. 검사 및 수사인력 증원 세부 근거

공수처의 수사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는 전문적인 수사업무를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공수처의 수사 기능을 수사 대상과 대상 범죄에 따라 유형화하여 기능적으로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4개의 수사부(3개 수사부, 1개 공소부)를 부패·경제 관련, 직무 관련, 선거 관련, 그 외 일반 고소 사건의 수사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분화하고, 각 수사 기능 유형에 대응하는 공소부의 기능을 확대하는 4개 수사부와 1개 공소부로 총 5개 수사부서로 조직 설계와 기능의 전문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최소 수사체계인 “부”를 복수체계(2*2부)로 구성하여 특정 수사부가 과부하 되더라도 수사가 지속되도록 수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수사 1-4부를 분야별로 전문화하되, 수사1부가 과부하 되면 수사2부가 지원하게 하여 수사의 지속성과 영속성을 갖추도록 수사체계를 복수화·전담 부서화

체계로 구축하도록 한다.

〈표 13〉 수사의 기능적 전문화 분류

부서	전담 분야	수사 내용
1부	부패·경제범죄	특가법 제3조,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상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 등
2부	직무관련 범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등
3부	선거 등 기타범죄	정치자금법 제45조, 국정원법 제21조, 제22조, 형법상 선거방해 등
4부	범죄수익환수 및 일반 고소(발)	범죄수익은닉, 통상의 진정 또는 고소(발) 사건
5부	공판	공소제기 및 유지

이와 관련한 검사인력 증원의 수요 및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수처는 송치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검찰과 달리 모든 사건을 인지 사건처럼 직접 수사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수사부의 검사인력은 기본적으로 급증하는 사건접수에 맞추어 적정인력을 산정하되 실무총괄, 법리검토, 수사실무, 취합보고 등 수사부 내 역할분담⁶¹⁾에 따라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건접수와 수사 환경에 맞추어 공수처 검사인력의 증원을 통하여 사건처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사부 특히 수사1부에 수사부의 국회대응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검사인력을 배치하여 대 국회대응 업무의 전문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사 유형의 전문화를 위하여 각 수사부별 대상 범죄를 분장하거나 새롭게 특수 목적의 수사부를 신설하여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범죄수익환수업무와 기능을 신설하여 고위공직자범죄 수익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와 범죄 예방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수사 검사를 증원하도록 한다.

셋째, 공소부의 검사 인력을 급증하는 사건처리에 맞추어 공소전담 검사 인력을 배치하며,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공소부 검사 인력의 증원 배치가 요청된다. 기본적으로 수사1부~4부(부장검사 1명, 1개 수사팀 6명)와 공소부(부장검사 1명 4개 수사부서*1.5)로 구성하여 총 35명의 수사검사의 적정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넷째, 공수처의 수사처검사는 직접적인 수사 기능 이외에도 원활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 행정 및 지원 기능 인력이 필요하다. 공수처의 수사 기능 고도화를 위하여 수사행정 지원(수사부서 인사, 예산, 법령 검토 및 중장기 정책 수립 등)과 수사기반 지원(범죄정보 수집·관리·분석, 검사·수사관 교육 등)의 업무 고도화를 위한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수사처 범죄수사에 대한 기획과 고위공직자 범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검사 인력의 배치를 통하여 수사기획 업무의 전문성과 고도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는 수사기획 기능과 업무의 전문성이 공수처 수사역량의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인권수사정책관실에 인권보호 및 개선업무에 대한 검사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인권수사정책관실에 검사를 배치하여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개선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 및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1) 공수처 수사부 구성에 대해서는 사건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실무총괄(수사계획 수립 및 업무 분배) 1명, 법리검토(법리검토 신속 지원, 각종 영장 작성) 2명, 수사실무(수사대상별, 쟁점별 역할분담 수사 진행) 3-4명, 취합보고(각 팀별 수사상황 취합, 각종 보고자료 작성) 1명 등 1개 수사팀 소요 검사를 7-8명으로 수사부 적정인력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다.

6. 공수처 검사인력의 적정 규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력의 적정 규모는 현 25명에서 15명을 증원한 총 40명(처장·차장 포함, 수사기능 검사 35명, 수사지원기능 검사 3명)의 검사 인력이 적정하다.

적정 검사 인력의 규모가 단기간에 충원되기는 어려울 수 있더라도 향후 년도별 수사처 검사 인력의 충원계획에 따라 검사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검사의 정원이 공수처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적정인력 규모 이내로 검사 인력의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⁶²⁾.

〈표 14〉 공수처의 검사인력의 적정 규모

검사배치 부서	현원	적정 인원	증감 인원	세부 증원 영역 및 업무
수사1부 (부패·경제범죄)	5	7	+2	- 수사 검사 대응 증원(2명) - 국회 대응 업무 포함
수사2부 (직무관련 범죄)	5	7	+2	- 수사 검사 대응 증원(2명)
수사3부 (선거 등 기타범죄)	4	7	+3	- 수사 검사 대응 증원(2명)
수사4부 (일반 고소·고발 및 범죄수익환수)	-	7(신설)	+7	- 수사 검사 대응 신설(5명) - 범죄수익환수 업무(2명)
공소부	2	7	+5	- 공소제기·유지 업무 증원(3명) - 수사결과 분석·검증(1명) - 재판결과 사후 결과 대응(1명)
(수사부서) 소계	16	35	+19	
수사기획관실	2	2	-	- 인사, 조직, 교육, 복무평가, - 수사예산 편성 및 집행 - 국회업무 통합관리, 유관기관협력 - 법령·규칙 제개정, 검토, 서식관리 - 행정심판·소송, 준항고, 헌법소원, 국가배상 등 소송 통합관리 - 범죄정보 수집·관리·분석· 검증·평가, FIU 관리
인권수사정책관실	1	1	-	- 인권감독, 양성평등 등 중장기 정책 수립 -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전산, 정보보안 - 위원회 관리 및 기타 기획 - 검사 및 수사관 교육, 자료 발간
(수사지원부서 소계)	3	3	-	
처·차장	2	2	-	- 공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보고 및 답변
(수사총괄부서 소계)	2	2	-	
검사인력 총계	21 (정원 25)	40	+19 (정원대비 +15)	

62) 검찰의 경우도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는 각 부별 7-8명의 검사, 공공수사부는 각 부별 7-10명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7. 공수처 수사관 인력의 적정 규모

공수처 설립 초기에 수사관의 실제 업무량의 추계나 수사인력의 전문 역량 등을 실증적으로 판단하여 수사관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실제 수사가 검사와 수사관 간 지휘·감독관계로 수사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에 비견하여 검사와 수사관의 적정 비율을 추산하여 적정 수사관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 방법이다.

공수처 설립 당시 수사관의 정원은 40명으로 검사 정원 25명을 기준으로 검사 대비 수사관의 비율이 1:1.6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검사 대비 수사관의 비율도 실제로는 수사관이 수사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 업무 지원에 5명이 배치되어 있는 등 실제로는 수사인력이 다른 행정지원업무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사관의 적정인력을 수사부서와 수사지원부서를 나누어서 추정할 필요가 있다.

수사부서의 수사관은 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등 인지부서는 검사 1인당 수사관 2명 배치, 공판부도 검사 1인당 최소한 수사관 1명이 배치하고 있으므로 공수처도 그에 준하는 수사관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즉, 수사1부~4부 수사관 인력은 각 부당 수사관 13명(부장실 1명, 수사검사(6)*2=12명)으로 배치하고, 공소부는 총 7명(부장실 1명, 수사검사(6)*1=6명)으로 총 59명이 필요하다.

〈표 15〉 수사관 소요인력

수사부	소요인력(수사관)	합계
수사1부 (부패·경제범죄)	부장실 1명, 수사검사(6) × 2 = 12명	13명
수사2부 (직무관련 범죄)	부장실 1명, 수사검사(6) × 2 = 12명	13명
수사3부 (선거 등 기타범죄)	부장실 1명, 수사검사(6) × 2 = 12명	13명
수사4부 (일반 고소·고발 및 범죄수익환수)	부장실 1명, 수사검사(6) × 2 = 12명	13명
공판부	부장실 1명, 수사검사(6) × 1 = 7명	7명
수사관 소요인력: 59명		

수사지원부서의 수사관은 수사행정 지원업무와 수사기반 지원업무의 기능별 특성에 따라 수사관의 소요인력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행정 지원조직 인력 구성은 개별 기능별로 검사-수사관으로 인력 구성을 수사관 8명으로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표 16〉 수사관련 행정지원 소요인력

구분	내용	소요인력(명)
수사관련 행정지원	인사(검사 및 수사관), 조직, 교육, 복무평가, 수사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수사관 2
	국회 업무 통합 관리, 유관기관과의 협력	수사관 2
	법령 및 규칙 재개정, 검토, 각종 서식 관리, 행정심판, 행정소송, 준항고, 헌법소원, 국가배상 등 각종 소송 통합 관리	검사 1, 수사관 1
	인권 감독, 양성평등 및 중·장기 정책수립 등	검사 1, 수사관 1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전산, 정보보안	수사관 2
소요 인력 총원 : 검사 2명, 수사관 8명		

또한 수사기반 지원업무(수사과⁶³, 사건과, 기록관리과 관련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보다는 수사관의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 수사기반지원 업무별 수사관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3명의 수사관이 적정하다.

〈표 17〉 수사기반 지원업무 수사 소요인력

구분	내용	소요인력(명)
수사기반 지원	범죄정보 수집·관리·분석·검증·평가, FIU 관리	검사 1, 수사관 2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수사관 4
	사건과(기록 및 영장접수 사무, 정보보고, 통계, 재기, 수배, 출국금지, 압수물 관리 등)	수사관 6
	기록관리과(사건 기록 및 판결문 보존사무, 사건 기록 대출열람·등사 등)	수사관 1
소요 인력 총원 : 검사 1명, 수사관 13명		

요약하면, 공수처 출범당시 검사와 수사관 정원(검사 25명, 수사관 40명)과 비교하면,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의 적정인력 규모는 검사 40명(처장 및 차장 포함)과 수사관 80명이다. 이를 수사기능과 수사지원기능으로 구분하여 보면, 처·차장과 함께 수사기능 검사 35명, 수사관 59명이며, 수사지원기능 검사 3명, 수사관 21명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과 인권보호의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사 15명과 수사관 4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

제5절 공수처 행정기능 및 인력 분석

1. 공수처 행정기능 분석

공수처의 행정부서는 처장실과 차장실 및 비서실, 공보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실, 기관의 윤리 및 인권 경영을 위한 인권감찰관실, 그리고 공수처의 사무처 기능을 수행하는 기획조정관실로 구성되며, 기획조정관실 내 3개 담당관이 있다.

〈표 18〉 공수처의 행정기능의 담당 인력

(정원/실근무, '22.9.30 현재)

정규직	계	공수처 일반직	파견 (국가공무원)	파견 (지방공무원)	파견 (공공기관)	수사관	기록물 관리
계	25/38 (행정 19, 파견 16, 수사관 3)	19/18	0/1	0/7	0/8	5/3	1/1

(실근무, '22.9.30 현재)

공무직 근로자	계	비서	콘텐츠제작	사무실무원	청사방호	차량운전
계	21	3	1	5	9	3

63) 현 공수처 수사과의 기능을 수사기반 지원기능으로 파악하여, 수사과의 인력을 사건관리담당관실에 포함하여 인력을 산정하였음

행정부서는 정원 25명(행정직원 20명, 공수처수사관 5명) 대비 실근무 인력 59명으로 운영된다. 행정부서의 중기능 단위 업무 총괄은 기존 정원으로 운영 중이나, 소기능 단위 세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으로부터 16명의 인원을 파견으로 지원받고, 시설관리 및 방호, 일반서무 등을 위한 공무원 21명을 정원 외 직원으로 운영 중이다.

2. 공수처의 행정기능 및 인력 분석 - 담당자 심층 면접조사에 의한 분석

가. 대변인실 및 인권감찰관

공수처의 처장실과 차장실과 함께 비서실은 별정직 공무원의 1명 정원과 비서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2명의 실근무 인력 3명으로 운영 중이다. 대변인실은 언론보도 대응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원 2명과 사진 및 영상 등의 콘텐츠 담당을 1명 추가한 실근무 인력 3명으로 운영 중이며, 인권감찰관실은 감사, 재산등록, 비위조사 등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2명, 수사관 2명, 파견 1명과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1명의 실근무 인력 6명으로 운영 중이다.

<표 19> 공수처의 대변인실 및 인권감찰관실 인력 현황

부서	기능		인력				
	기능	소기능(단위업무)	계	자체정원(급)	파견(급)	공무직	
처장실	계		2	1	-	1	
	실 총괄	처장실 업무 총괄 및 비서업무		1(별정5)			
	비서	처장 비서업무				1	
차장실	계		1	-	-	1	
	비서	차장 비서업무				1	
대변인실	계		3	2	-	1	
	과 총괄	대변인실 총괄		1(임기4)			
	언론대응	언론행사(브리핑, 간담회), 공보심의 협의회 및 기자단 관리		1(5)			
	보도관리	언론스크랩, 보도계획, 보도일정 관리, 홈페이지 관리·운영, 서무		-			
	사진 영상제작	사진·영상 콘텐츠, 촬영·관리				1	
인권감찰관실	계		6	4	1	1	
	국장	인권감찰관실 총괄		1(나)			
	감사	일상감사 등 각종 감사 및 징계위 운영, 재산등록, 취업감사		1(6)			
	감찰	소속 공무원 비위조사 등 감찰 감찰 법령·제도 등 검토			1(수사6)		
		감찰위원회 운영 국민신문고 접수·처리			1(수사6)		
		재산등록, 취업심사 언론보도 모니터링				1(공공기관)	
	서무	국장 일정 등 보좌, 업무 보조				1	

<공수처 심층 인터뷰 주요내용 - 행정기능>

공수처의 대변인실 담당자의 면접조사 결과 대변인실의 주요 업무는 출입기자단 미팅, 언론소통, 언론보도,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언론모니터링, 언론보도 대응 등이며, 홍보 기능은 언론대응 및 보도 관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공수처의 수사업무 및 공수처의 주요 정책사업을 홍보하는

기능은 별도로 단위업무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수행할 인력이 정원 및 현원으로 배치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인력부족으로 대부분의 주요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의 경우 대변인실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는 3인이 근무하고 있어 대체인력 부족으로 승진 시 타부처 파견 등의 인사교류를 하지 못하고, 타 기관과의 파견인력 교환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비서업무를 지원하는 정규비서관 정원 1인이 부족한 상태이다(000사무관).

인권감찰관실은 감사, 재산등록, 비위조사 등 감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사 및 공소업무가 확대되지 않은 상태라 인권감찰 및 감사업무는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000사무관).

나.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조정관실 내 기획재정담당관은 공수처의 업무계획, 법제, 성과관리, 정책연구, 대내외 협업 등의 기획법제업무, 예산 편성 및 재정운용 등의 예산업무, 그리고 국회 대응 및 업무 지원 등 국회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표 20> 공수처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인력 현황

부서	기능		인력			
	기능	소기능(단위업무)	계	자체정원(급)	파견(급)	공무직
기획재정 담당관실	계		10	6	3	1
	과장	기획재정담당관실 소관 업무 총괄		1(4, 직제파견)		
	기획법제	업무계획 수립 등 기획, 공수처법 및 소관법령사항, 자문위 운영		1(4, 직제파견)		
		행심위 관리·운영, 주간업무계획			1(지자체6)	
		조직성과관리, 자문위 운영, 정책연구용역, 국제협력 업무		1(6)		
	국회	주간업무계획, 과 소관 위원회 운영·지원, 과 서무				1
		국정감사, 국회협력 등 국회업무 총괄		1(수사5)		
		법사위, 예결위, 국정감사 등 국회업무, 국회요구자료 대응		1(6)		
	예산	국회업무 지원			1(공공기관)	
		예산편성, 집행,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예산업무 총괄		1(5)		
예산편성, 집행, 재정성과계획 작성 등, 예산업무				1(공공기관)		

<공수처 심층 인터뷰 주요내용 - 행정기능>

예산업무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담당자가 예산편성과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예산운영에 대한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예산편성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담당부서의 주요업무는 총괄조정기능, 성과계획, 성과평가 등이나 인력 부족으로 총괄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자료수집과 정리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000사무관)

국회업무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담당부서의 주요업무는 국회의 요구자료 수집, 작성 제출, 국회 상임위 대응 업무 등과 국회협력담당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있으나, 대체인력 부족으로 휴가를 가지 못하고, 또한 2022년부터 결산업무가 추가되어 담당할 인력이 대거 부족한 상태이다(000주무관)

행정심판업무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권익위는 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나, 공수처는 행정심판의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담당자 1인이 운영(1년 3건-5건)하고 있고, 고소고발사건들은 업무처리 한계로 대부분 타 기관에 이첩하고 있다(000주무관).

기획법제업무는 업무계획, 공수처법 및 소관법령, 조직 성과관리 및 정책연구용역, 국제협력업무 및 자문위 운영 등의 정원 2명을 두고 있고, 주간업무계획과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관위원회 운영 지원과 서무 업무를 위한 2명(지자체 1명, 공무원 1명)의 추가 인원으로 실근무 인력 4명으로 운영 중이다. 국회 대응 업무는 2명의 정원을 두고 있으며, 국회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원 1명이 추가된 실근무 인력 3명으로 운영 중이며,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위해 정원 1명을 두고 있으나, 예산업무 지원을 위해 정원 1명 대비 1명 추가된 실근무 인력 2명으로 예산업무를 운영 중이다.

다. 운영지원담당관

기획조정관실 내 운영지원담당관은 공수처 인사, 검사 및 수사관 인사, 인사위원회, 성과관리, 총무 및 시설관리, 회계계약, 정보화 업무, 기록물관리 등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표 21> 공수처의 운영지원담당관실 인력 현황

부서	기능		인력				
	기능	소기능(단위업무)	계	자체정원(급)	파견(급)	공무직	
운영지원 담당관실	계		35	8	12	15	
	과장	운영지원담당관실 소관 업무 총괄		1(4)			
	인사조직	인사업무 총괄			1(5, 직제파견)		
		조직직제관리, 중·장기 인력운영제도 검토 수사관 인사(채용, 전보, 퇴직)				1(지자체5)	
		인사기획, 근무평정, 일반직 승진·전보, 정·현원 관리			1(6)		
		검사 인사(채용, 전보, 퇴직), 검사인사위원회 수사관 인사(채용, 전보, 퇴직), 파견직 관리				1(지자체6)	
	인력관리 개발	인력관리개발업무 총괄				1(지자체5)	
		공무직 인사관리(채용, 전보, 노사협의회), 직원교육계획 수립, 교육운영관리, 상훈)				1(국가7)	
	총무· 시설	총무시설 업무 총괄				1(지자체5)	
		보안 및 복무관리, 방호실 관리, 물품관리, 과 서무				1(지자체6)	
		청사시설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 통신장비(CCTV, 통신기자재)				1(공공기관)	
		과 소관 민원처리, 청사출입관리, 서무업무 지원					1
		청사방호					9
		관용차량 관리·운전					3
	회계계약	회계계약 업무 총괄				1(지자체5)	
		급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부지후생연금 4대보험 맞춤형 복지			1(7)		
		계약(물품, 용역, 공사), 관서운영경비, 결산			1(7)		
		관서운영경비 출납보조 정부구매카드 지급관리 여비 지급 업무					1
		관서운영경비 출납보조 정부구매카드 지급관리 일반수용비 지급 업무					1
	청사건립	청사건립 업무 총괄			1(6)		
		청사건립 사업예산담당중기사업계획 예산타당성조사 대응 등				1(공공기관)	
청사건립 사업기획담당청사건립 사업계획 수립 세부사업추진관리				1(공공기관)			
정보화	정보화 업무 총괄			1(6)			

부서	기능		인력			
	기능	소기능(단위업무)	계	자체정원(급)	파견(급)	공무직
		KICS 운영·관리, 정보화 기획·예산 관리			2(공무직)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청구 대응, 자료실 관리 등 기록물 관리 업무 총괄		1(연구사)		

<공수처 심층 인터뷰 주요내용 - 행정기능>

회계업무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회계계약 업무는 현재 각 부서별로 회계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되어 정리하는 추가 업무량이 많이 발생하며, 회계관련 지침이나 관리매뉴얼이 필요하나 업무량 과다로 회계 규정과 지침을 정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000주무관).

보안업무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담당자가 물품구매, 시설관리, 방역, 복무, 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나 인력 부족으로 일반물품관리, 물품구매 지연, 계약업무 지연 등이 발생되고 있다. 현재 보안업무추진계획이나 총무기본계획 등 중요업무를 인력 부족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보안업무를 비상기획관실에서 담당(4명)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3-4명이 담당하고 있다(000주무관).

정보화 업무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고위공무원범죄 수사 및 공소업무가 추진됨에 따라 KICS의 활용 증가와 공수처 정보화 업무가 확대되어 정보화 담당 인력의 증가가 요청되고 있고, 인사·조직 업무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공수처의 조직 직제관리 및 성과관리, 일반직과 파견 및 공무직에 대한 인사관리, 검사와 수사관의 인사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 등으로 인해 인사조직 담당인력의 확대가 요청된다. 복리후생 및 결산 업무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직원들의 사기 양양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의 운영과 2022년부터 결산업무 신규 담당에 따른 적정인력의 확보가 요청되고 있다(000주무관).

인사·조직 업무는 조직 직제관리 및 성과관리, 일반직에 대한 인사관리 등을 위한 정원을 2명 두고 있으며, 파견 및 공무직에 대한 인사관리, 검사와 수사관의 인사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파견 인원을 3명 추가한 실근무 인력 5명을 운영 중이며, 총무·시설 업무는 정원이 아닌 파견 및 공무직으로 구성된 17명의 실근무 인력으로 운영 중이며, 관리 업무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파견직 그리고 일반 서무 및 방호, 운전 등은 공무직을 활용 중이다.

회계계약 업무는 급여, 복리후생, 계약 및 결산 등의 핵심 업무를 위한 정원 2명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파견직 1명, 그리고 운영경비의 출납보조 등의 서무 업무를 제공하는 공무직 2명 등 3명이 추가된 실근무 인력 5명으로 운영 중이며, 청사건립은 청사건립을 총괄하는 정원 1명과 세부 기능별로 지원하는 파견직 2명이 추가된 실근무 인력 3명으로 운영 중이다. 정보화 업무는 총괄하는 담당 정원 1명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정보화기획 및 예산을 관리하는 파견직 2명이 추가된 3명으로 운영 중이며, 기록물관리를 정원 1명으로 운영 중이다.

3. 공수처 행정기능 및 인력 분석 - 유사규모 기관과 비교에 의한 분석

공수처 정원(85명,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 20명)을 고려하여 본부 정원 200

명 이하의 행정기관 5개 부처를 선택했다. 12개 단위 핵심 기능으로 분류하여 부서를 분석했으며, 소규모 기관의 공통부서는 평균적으로 1관 4~5과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2〉 공수처와의 유사규모(본부 정원 77~163명) 행정기관들의 공통부서 구성

단위업무	홍보	인사 사무	총무 회계	기록 관리	비상 계획	기획 예산	국회	성과 평가	조직	법무	정보화	감사
행복청 (137명)	대변인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새만금청 (138명)	대변인	운영지원과			기획재정 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정보원 담당관	혁신행 정담당관	
원안위 (127명)	안전소통 담당관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감사 담당관	
민주평통 (77명)	미디어 소통과	운영지원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미디어 소통과	기획재 정담당관	
개인정보위 (163명)	대변인	운영지원과			혁신기획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공수처 (85명)	대변인	운영지원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 담당관	기획재정 담당관	운영지원 담당관	인권 감찰관	

※ 5개 기관 모두 기획조정관(고위 나급)

유사규모 기관과 비교 분석을 하면, 공수처의 조직은 소규모정원으로 중요 단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담당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중요 단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업무는 감사 전담부서에서 담당해야 하나, 수사에 있어 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인권감찰관에서 감사를 맡고 있다. 정보화와 조직관리 업무는 공수처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인사사무, 총무회계, 기록관리, 비상계획과 함께 담당하고 있는데, 새만금청 등 다른 기관에서는 정보민원담당관 등 정보전문부서에서 정보화를 담당하고 있고, 행복청 등 다른 기관에서는 조직관리를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유사규모 기관과 비교해 볼 때 공수처에서 정보화의 전문부서를 둘 필요가 있고 사회변화에 조직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담당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법무 업무는 공수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기획예산, 국회, 성과평가와 함께 담당하고 있어 행복청 등 다른 기관과 유사하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무감사담당관실을 별도로 두어 운영하고 있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정 제정 및 운영을 위한 법무전담 부서를 둘 필요가 있다.

4. 공수처 행정기능 강화요인 분석

공수처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행정기능의 실태를 보면 공수처의 입법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능들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첫째, 정책홍보 기능 강화로 공수처의 주요 사업 중 수사 성과와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등 정책성과 및 홍보 활동 강화 필요하다. 현재 대변인실의 주요 업무는 언론대응 및 보도자료 관리이며, 수사 범위 확대와 수사 활성화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정책사업에 대한 콘텐츠와 홍보를 전담할 인력이 요청된다.

둘째, 성과평가/업무평가 기능 강화로 공수처의 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대내외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성과 향상 및 외부 평가 대응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기획재정담당관실의 성과관리 업무에 공수처의 기관 성과에 대한 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

지 않다. 내부 구성원의 성과관리와 별개로 기관 자체의 성과관리를 위한 전담 업무를 설정하여 관리할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협력 업무 기능 강화로 공수처의 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와의 수사 협력과 수사제도, 기법, 내부고발자 및 증인 보호 등에 대한 국제 협력과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의 세부 업무에 국제협력, 정책연구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사의 국제화, 과학화 등을 지원하고, 비위 수사와 긴밀하게 연결된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보호제도 및 수사 방법 등에 대한 연구 기능 전담할 인력의 증원이 요청된다.

넷째, 인사조직관리 기능 강화로 공수처의 인사관리 기능은 인적자원의 채용 및 배치의 인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인적자원의 개발에 대한 업무 비중이 적은 상황이다. 현재 공수처 소속 직원(검사, 수사관, 직원 등)의 경력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역량강화와 기관운영강화의 투-트랙으로 인적자원개발(역량강화)의 인력 증원이 요청된다.

다섯째, 재정 및 물적 자원 관리 총괄 기능 강화로 기관의 회계 업무와 자산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관리자(간부급)가 파견자로 대체 운영 중인 상황이다. 기획·관리는 정원 내 직원이 담당하며, 집행·실무는 파견자 등 정원 외 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대부분의 기능을 정원 외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는 행정직원 정원을 20명으로 제한받는 상황이며, 정원 20명조차도 처장 비서관 1명 및 간부 5명(기획조정관, 인권감찰관,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을 제외하면 14명만 조직유지기능 업무수행에 투입 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조직·인사·회계·총무 등 기관유지기능 중 핵심기능을 파견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파견직원 복귀 시 기관유지기능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표 23> 공수처의 중요 조직기능에 파견자 담당 현황(2022.9.30. 기준)

단위업무	주요 세부 업무	담당자	비고
인사	검사 인사	파견(지자체6)	
	수사관 인사	파견(지자체5)	
	공무직 인사	파견(국가7)	
총무	물품관리(물품관리관)	파견(지자체5)	
	과 서무	파견(지자체6)	' 22.10.5.자 복귀에 따라 결원 발생
회계	회계·계약(지출원)	파견(지자체5)	
	급여·복지후생	소속직원(행정6)	결원(휴직)으로 내부 직원 지원근무
조직	직제·조직진단	파견(지자체5)	수사관 인사 검직 중
정보화	정보화 총괄	소속직원(전산6)	
	KICS 운영·관리	파견(공공기관)	공공기관에서 2명 파견 중

공수처가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획-책임을 연계하여, 조직·인사·회계·총무 등 기관유지의 핵심기능 업무 담당자를 정원 내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비상·안전대응기능 강화로 별도 청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기관의 비상 및 안전 대응 기능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정보보안 및 시설보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 또는 전담하는 인원의 증원이 요청된다.

일곱째, 업무 간 상호 보완 기능 강화로 기관 인원 부족으로 단위업무에 대한 대직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장급 단위 조직 내 소기능 및 단위업무 담당자 간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고, 파트 또는 계 단위 조직을 두고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업 구조의 변경이 요청된다[부록3].

5. 공수처의 행정기능 담당 인력 제안

공수처의 기관유지·운영을 위한 행정기능은 현재의 직제상 2관 3과로 볼 수 있으며, 이 중 기획조정관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의 2과를 하위 부서로 두고 있다. 기획조정관에 행정기능이 집중되어있는 상황에서, 기획조정관 내 2과의 부서 편제는 기능의 전문화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부록6]. 이에 따라, 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필요 기능으로 대변인실(홍보 포함), 인권감찰관(감사, 인권 기능), 기획조정관(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운영관리담당관)의 2관 4과로의 조직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조정관 내 기획재정담당관실에 기획, 성과평가, 국회, 예산을 전담하는 기획재정담당관을 두고 조직관리, 법제, 정보화 등 전담하는 혁신행정담당관을 두고, 총무시설, 회계계약, 청사건립, 정보화, 기록물관리를 전담하는 운영관리담당관을 둔다.

〈표 24〉 공수처의 행정기능 적정 담당 인력 제안

직제/중기능	실근무 인력 ⁶⁴⁾ (정원)	적정 인원 (정원)	증감 인원 (정원 대비 변화)	세부 증원 영역 및 업무
처·차장실	3 (1)	2	+1	처장실과 차장실의 비서업무, 정원 1명 증원(총정원 2명)
대변인실	3 (3)	4	+1	정책홍보/공보 전담 정원 1명 증원(총정원 4명)
인권감찰관	6 (2, 수사관2 제외)	5	+3	감사 기능 전담 부서로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경력 정원 2명 포함 정원 3명 증원(총정원 5명)
기획조정관실	2 (1)	1	-	기획재정담당관실과 혁신행정담당관실과 운영지원담당관실의 업무 조정과 관리
기획재정 담당관실	10 (5, 수사관1 제외)	10	+5	기획재정담당관 업무로 기획, 성과평가, 국회, 예산 등을 전담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담당관 정원 5명 증원(총정원 10명)
혁신행정 담당관실	- (-)	10	+10	혁신행정담당관 업무로 인사조직관리, 인력관리 개발, 법제, 정보화 등을 전담하도록 하고, 혁신행정담당관 정원 10명 신규 증원(총정원 10명)
운영지원 담당관실 (청사방호 제외)	26 (8)	18	+10	운영지원담당관 업무로 총무시설관리, 회계계약, 재무자산관리, 정보화와 보안, 기록물 관리, 청사건립 및 관리 등을 전담하도록 하고, 운영지원담당관 정원 10명 증원(총정원 18명)
소계	50 (20)	50	+30	기존 실근무 인력을 정원으로 조정 및 추가 기능 대비 정원 추가

64) '22. 9. 30. 기준

제6절 공수처 조직 재설계 및 인력조정 방향

1. 공수처의 조직 재설계

공수처의 각 직군, 직렬, 대기능 및 중기능별 조직 재설계 결과 필요한 적정 인원은

- 검사의 정원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 및 업무량 증가에 따라 25명에서 40명 증원이 필요하다.
- 수사관의 정원은 기능별로 적정인력 규모를 분석해 보면, 수사부 수사관 59명, 수사행정지원과 수사기반지원 수사관 21명을 포함한 총 80명으로 증원이 필요하다.
- 행정직원의 경우 파견직이 수행하는 핵심 업무와 기능을 정규 정원인력으로 전환하는 등 현재 20명의 정원을 50명의 인원으로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공수처의 수사 적정인력

〈표 25〉 공수처 수사 검사와 수사관 적정인력 규모⁶⁵⁾

구분	부서	검사 적정 인원			수사관 적정 인력		
		현원(정원)	적정 인원	증감 인원	(정원)	적정인원	증감 인원
수사	수사1부 (부패·경제범죄)	5	7	+2	(19)	13	
	수사2부 (직무관련 범죄)	5	7	+2		13	
	수사3부 (선거 등 기타범죄)	4	7	+3		13	
	수사4부 (일반 고소·고발 및 범죄수익환수)	-	7(신설)	+7		13	
	공소부	2	7	+5		7	
	소계	16	35	+19		59	(+40)
수사 지원	수사기획관실	2	2	-	(3)	5	(+2)
	인권수사정책관실	1	1	-	(1)	3	(+2)
	사건관리담당관실	0	0	-	(12)	13	(+1)
	행정부서 지원	-	-	-	(5)	0	(-5)
	소계	3	3	-	(21)	21	(-)
총괄	처·차장실	2	2	-	-	-	-
	소계	2	2	-	-	-	-
수사인력 총계		21 (25)	40	현원 대비 +19 (정원 대비 +15)	(40)	80	(정원대비 +40)

※부서별 검사와 수사관의 현원은 부서별 담당 사건의 양과 질에 따라 유동적임

65) 현원은 '22. 9. 30. 기준

3. 공수처의 행정 인력 조정 방향

〈표 26〉 공수처 행정인력 조성 방향

대능	직제/증기능	정원	실근무 인력 ⁶⁶⁾	작성 인원 (정원)	증감 인원 (정원)	세부 증원 영역 및 업무
기관 유지	처·차장실	1	3	2	+1	처장실과 차장실의 비서업무 정원 1명 증원
	대변인실	3	3	4	+1	정책홍보/공보 전담 정원 1명 증원
	인권감찰관	2	6	5	+3	감사 기능 전담 부서로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경력 정원 2명 포함 정원 3명 증원
	기획조정관실	1	2	1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의 업무 조정과 관리
	기획재정 담당관실	5	10	10	+5	기획재정담당관 업무로 기획, 예산, 국회, 성과평가 등을 전담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담당관 정원 5명 증원
	혁신행정 담당관실	-	-	10	+10	혁신행정담당관 업무로 인사조직관리, 인력관리개발, 법제, 정보화 등을 전담 하도록 하고, 혁신행정담당관 정원 10명 신규 증원
	운영지원 담당관실 (청사방호 제외)	8	26	18	+10	운영지원담당관 업무로 총무시설관리, 회계계약, 재무·자산관리, 정보화, 보안, 기록물 관리, 청사건립 및 관리 등을 전담하도록 하고, 운영지원담당관 정원 10명 증원
소계		20	50	50	정원대비 +30	

66) '22. 9. 30. 기준

4. 조직기능 분석에 의한 공수처의 전체 인력 조정 방향

〈표 27〉 조직기능 분석에 의한 공수처 전체 인력 조정 방향

구분		부서	실근무 인력 ⁶⁷⁾	정원	적정 인원 (정원)	정현원 대비 증감 인원
검사	리더십	처장, 차장	2	2	2	-
	소계		2	2	2	-
	수사기능	수사1부	5		7	실근무대비 +2
		수사2부	5		7	실근무대비 +2
		수사3부	4		7	실근무대비 +3
		수사4부	-	-	7(신설)	실근무대비 +7
		공소부	2		7	실근무대비 +5
	소계		16		35	실근무대비+19
	수사지원기능	수사기획관실	2		2	-
		인권수사정책관실	1		1	-
		사건관리담당관실	0		0	-
소계		3		3	-	
소계			21	25	40	+19(실근무) +15(정원)
수사관	수사기능	수사1부, 2부, 3부, 4부, 공소부	28	19	59	정원대비 +40
	소계		28	19	59	정원대비 +40
	수사지원기능	수사기획관실	2	3	5	정원대비 +2
		인권수사정책관실	0	1	3	정원대비 +2
		사건관리담당관실	7	12	13	정원대비 +1
		행정부서 지원	3	5	0	정원대비 -5
	소계		12	21	21	-
소계			40	40	80	정원대비 +40
행정직	기관유지기능	처·차장실	3	1	2	정원대비 +1
		대변인실	3	3	4	정원대비 +1
		인권감찰관	6	2	5	정원대비 +3
		기획조정관	2	1	1	-
		기획재정담당관	10	5	10	정원대비 +5
		혁신행정담당관	-	-	10	정원대비 +10
		운영지원담당관 (청사방호 제외)	26	8	18	정원대비 +10
소계			50	20	50	정원대비 +30
총계			111	85	170	정원대비 +85

67) '22. 9. 30. 기준

제4장 우수인재 확보 및 수사지원역량 강화방안

제1절 채용과정에서 우수인력 확보

1. 개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정부기관, 민간기업 등은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로 조직의 경쟁력향상과 채용 프로세스의 시스템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구직자는 인지도가 있고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 좋은 직장으로 평가했으나, 현재 구직자들은 급여를 포함한 물질적 요인으로 직장을 선택하는데 매력적인 요소이지만 그것이 직장을 선택하는 전부가 아니며 현재는 조직의 비전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동료, 성장 기회 등이 직장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2. 공수처 채용 시 우수인력 확보 제약요인

가. 임기제에 의한 공수처 문제점

검사 및 수사관의 임기제가 신분상 불안정성의 원인이며 채용과정에서 우수인력 유인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1) 공무원 임용령과 공수처법 임기제 기간 상이

공무원 임용령의 임기제는 5년으로 되어있으나 공수처법에는 처장 및 차장 임기 3년에 연임 불가, 검사는 임기 3년에 3차례 연임 가능, 수사관은 임기 6년에 연임이 가능하나 공무원 임용령은 한시적으로 5년 이내에 임무를 완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근무기간이 상이하다.

2) 임기제는 우수인력지원 저해요인임

우수인력이 장기적인 근무가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보장으로 인해 공수처에 지원하지 않고 조건이 좋은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는 원인이 된다.

3) 공수처 임기제는 임기제 공무원 충원취지에 맞지 않음

현재 정부조직에서 핵심구성원(검사와 수사관)을 전원 임기제로 한 조직은 없으며 임기제 공무원 충원취지에도 맞지 않은 제도이다. 정부조직에서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공무원이다. 또한 공무원 보수규정에도 임기제 채용시 높은 보수를 주어야 하나 공수처검사 및 수사관은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 직급에 맞는 보수를 주고 있어 보수규정에도 위반되어 있다.

4) 공수처의 임기제는 타 조직에 비해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인식됨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수사하는 조직이 단기적으로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 후 계속 임무수행이 존재하는 조직임에도 업무에 숙달된 검사 및 수사관을 교체하는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인식된다.

5) 임기제는 우수인력 확보보다는 우수인력 상실로 수사지연과 수사역량 부족으로 나타남

공수처 조직에서 검사 및 수사관을 임기제로 함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면 사람을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여야 하는 시점이 오게 되므로 이들 신입사원을 다시 교육시키고 업무가 본 궤도에 오르려면 시간이 걸려 공수처 국회 지적 사항인 수사지연과 수사역량 부족 해소가 될 수 없다.

6) 임기제는 기존 양성된 우수인력을 상실할 수 있음

임기제 때문에 공수처 근무로 수사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우수한 자원이 더 근무할 수 있는 연령임에도 법률 때문에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7) 임기제는 내부 승진 및 수사역량 축적 한계 발생

공수처 검사는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및 평검사로 구성되어 있어 검사 최장 12년 재직 고려 시 평검사로 입직 경우 부장검사 등으로 승진유인이 낮으며 장기 재직 제한으로 사기저하 및 퇴직시 공수처 수사역량 저하 요인인 발생될 우려가 있다.

나. 기타 제약요인

검찰 및 경찰 공무원 조직과 보수, 수당 등 차별화가 없으므로 우수자원이 변호사 및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으로 방향 전환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채용단계 우수인력 확보 및 기존 채용된 검사 및 수사관 전문화 안 된 인력은 교육을 통하여 우수인재로 양성

가. 검사, 수사관 전문화된 요원 채용

공수처의 임명된 검사 및 수사관은 경력직이므로 대부분 검찰 및 경찰에서 근무 시 경력이 인정되며 검사 경우는 검찰에서 직무 전문화과정을 거쳐 보직을 수행했으며 수사관도 전 근무지(검찰, 경찰)에서 근무한 경력에 의한 전문화 구분이 가능하다.

검사 및 수사관 채용 시 공수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분야로 구분하여 전문화를 채용조건에 포함 모집함으로써 전문화된 우수한 검사 및 수사관을 확보할 수 있다.

나. 업무수행을 통한 전문화

채용된 검사 및 수사관에게 전문화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전문화가 안 된 검사 및 수사관은 교육을 통해 전문화로 양성하여 수사역량 및 조사역량을 향상시켜 업무수행이 즉

각 가능토록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화가 된 우수한 검사 및 수사관이 수사하여 현재 공수처의 문제점인 수사지연, 수사역량 부족 등의 지적을 해소할 수 있다.

다. 공인 전문검사 및 수사관 인증 시스템 구축(대검찰청 운영)

검사 및 수사관들의 전문화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 전문화 방안의 성공적인 정착 및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 전문검사 및 수사관 인증 시스템이 요구된다.

공인 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은 처장으로 차장 및 검사 중 선임요원 4명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인증제를 실시한다.

또한 복수 전문화 인증제를 실시하여 수사부 수사 편성에 효율적인 수사를 추진한다.

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전문화 범위⁶⁸⁾

〈표 28〉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전문화 범위

순번	전문분야	순번	전문분야
1	인권, 감찰, 명예	10	정보, IT
2	경제(횡령, 배임, 사기 등)	11	증권, 금융
3	조세, 공정거래 위반	12	회계분석, 자금추적
4	부동산 비리	13	피해자 보호
5	성 관련 범죄	14	범죄수익 환수
6	선거 비리	15	범죄정보
7	국가보안위배 및 군납비리	16	법무, 법제
8	구조적부정부패(공공분야)	17	국제법무
9	공판, 송무		

※ 대검찰청에서는 47개 전문분야를 나누었으나 공수처는 임무에 맞는 전문분야 17개를 선정하여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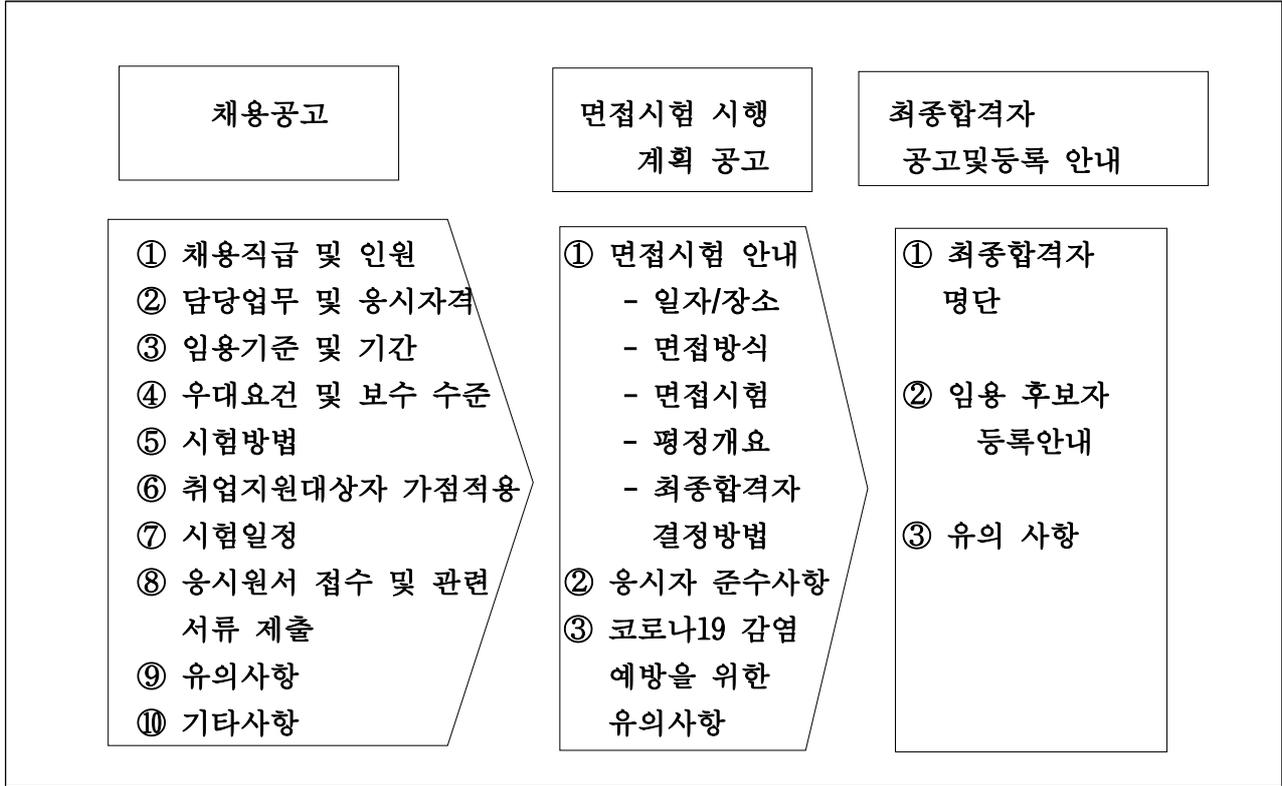
68) 검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진 외국 법무·검찰 교육제도 비교 연구 참조

4. 공수처 직원채용 프로세스 분석

가. 점검분야 : 응시요건, 설정범위, 채용공고 방식,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채용단계별 문제점

나. 공수처 직원 채용프로세스

<표 29> 공수처 직원 채용프로세스



다. 현 실태 및 대책

담당업무의 기술내용은 우수 인재를 뽑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수사관 담당업무를 수사 전반수행으로 한정되어 기술되어있어 미흡하다. 담당업무 내용도 수사1부, 2부, 3부의 업무를 전문화와 연계하여 각과의 전담 업무를 구분하고 채용 시 필요로 하는 부서에 전문화 내용을 공지하여 필요한 부서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응시자격은 응시자들이 경력 소지자로 공수처에서 제시한 자격에 부합되는 것은 당연하나 우수자원을 뽑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서에 전문화와 연계해서 자격조건을 제시하고 학위, 경력, 자격증 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한다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검사 및 수사관의 임용기간이 임기제로 신분 보장이 안되어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음 이를 개선하여 신분 보장이 되도록 한다면 우수인재 확보할 수 있다.

우대조건도 유관기관(검찰, 경찰)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우수한 자원이 지원할 수 있으나, 현 여건 하에서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우대조건을 보완하여 유관기관(검찰, 경찰)보다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공수처만의 특수 업무수당을 신설하여 지급된다면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유인 방법이 될 것이다

5. 개선방안

가. 채용 조건 개선

젊고 유능한 인재와 전문 경력자 등이 조화롭게 장기 재적할 수 있는 인사체계 구조 설계 필요하다.

현재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는 임기 3년 3회 연임 가능, 수사관은 임기 6년 연임 가능으로 임기가 제한되어 있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 검찰청 소속 검사와 비교하여 짧은 임기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입법자의 취지를 고려한 임기제를 유지하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이나 검찰청 소속 검사처럼 적격심사로 전환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수사관의 경우 타 기관 소속 수사관에는 없는 임기제를 공수처 수사관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는 우수한 수사인력 확보에 문제가 있으므로 연임 심사의 형식화를 통한 실질적 정년 보장, 임기제 폐지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제도를 개선하여 안심하고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검사 및 수사관 전문분야 선정 인증제를 시행하고 또한 복수 인증제를 시행하여 수사의 경험을 넓히도록 한다. ※ 검사 및 수사관 경력을 분석하여 전문화 범위 기준을 적용한다.

나. 채용 프로세스 개선

채용공고는 채용기준을 잘 세워야 하며 채용기준은 채용정보(Job Description)로서 수사관을 선발할 계획이라면 어느 부서 해당포지션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기존 팀원들과 잘 협업하기 위해 어떤 인성이 필요한지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수사관 담당업무를 수사업무 전반수행으로는 우수인재를 뽑을 수 없으므로 해당 인사실무자는 충원되는 실무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능력과 역량을 확인하여 공고 시 세부적으로 필요한 업무내용을 적시하여 충원되는 부서에 우수한 인력이 선발되어 어떠한 임무를 부여해도 성공적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한 인력이 보충되어야 한다.

필요한 부서에 즉각 임무수행 가능한 인력이 보충되어야 하는데 수사관 담당업무를 수사업무 전반수행 이라고 하면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이 보충되어 업무성과가 낮을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적용하지 못해 퇴사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공수처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대우 및 보수 수준 등 조항은 우수인력이 자원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현재 임기, 연임 및 정년, 보수와 대우만 기술되어있는데 처우개선 및 복지제도를 간략하게 기재함으로써 우수인력 지원에 유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보수는 공무원 보수에 준한다고 하나 현 공무원 보수체계에서 신설된 공수처가 누락된 분야인 특수 업무수당에서 장려수당 및 특수직무 수당을 기재부 및 인사혁신처와 협조하여 포함시킨다면 검찰, 경찰과 비교해서 더 받는다는 인식을 주게 되고 또한 우수인력이 지원할 것이다.

⇒ 공무원 수당 중 특수 업무수당분야에서 장려수당(270,000원)과 일반직원 특수직무수당(70,000원)을 기재부 협조로 적용토록 해야 됨⁶⁹⁾

※ 좋은 채용프로세스가 우수한 인력을 획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6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구분표

제2절 직원 교육과 경력개발을 통해 우수인력으로 성장발전⁷⁰⁾

1. 개요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검사·수사관의 수사역량 문제 지적에 따라 중·장기적인 교육훈련 등 전문성 강화방안을 모색 중이다. 공수처 편제상 자체 전문교육훈련 부재로 공수처에 특화 전문화된 교육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방법이 요구된다.

2. 교육훈련 실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의 임기제로 인사혁신처 주관 국내·외 장기교육훈련을 할 수 없다. 중장기적인 역량 강화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⁷¹⁾ 검찰청과 경찰청은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서 체계적인 직무향상 교육이 가능하나 공수처는 정원이 제한되어 교육기관을 두고 직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여건이 안 된다.

〈현 여건하에 진행하고 있는 주요 교육프로그램〉

- 전입교육 (1주) : 검사·수사관·행정지원인력 전입 시 전입교육.
- 저명인사 초청교육(분기 1회).
- 수시 처장 및 차장 주관 업무향상 교육(분기 1회) 시행하고 있으나 직무역량을 향상하는데 미흡한 실정임.

3.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 개선방안

가. 공수처 수사지원 역량센터 설치(법 신설 개정)

공수처 특성상 검사 및 수사관은 경력직이기 때문에 전 근무지에서 수사역량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나 공수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수사·조사역량이 필요하므로 전문성교육이 필요하다.

나. 별도정원 근거 마련하여 독자적인 수사지원 역량센터 운영⁷²⁾

수사지원 역량센터 인원 (5명) : 팀장 1명, 검사교육 1명, 수사관교육 2명, 일반직원교육 1명

다. 수사역량지원센터 설치 운영 전 교육·훈련 지원팀 잠정 운영 (자체 교육·훈련 지원기구 한시 운영)

라. 퇴직 검사, 검찰수사관·경찰관 등을 수사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상시로 직장 내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체계구축 필요

마. 일반직원 교육은 인사혁신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 교육하고 여건 마련 시 독자적인 중장기 교육훈련 실시 필요

70) 이는 검사, 수사관의 정원 증원 및 임기제 개선 등 제도 개선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안에 해당

71) 검찰청 검사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정년 가능하고 국외 장기훈련 선발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나 공수처 검사는 임기제로 불가하다.

72) 장기적인 관점에서 별도의 정원 마련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도 필요

바. 공수처법에 공수처장은 수사역량, 조사역량, 수사지원역량을 함양하도록 검사·수사관, 행정지원인력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 명시가 요구됨.

4. 공수처법 관련규정 신설⁷³⁾

가. 제44조2(소속 직원의 전문성 강화 등)

① 처장은 수사처 검사, 수사처 수사관, 행정지원인력 등의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단기 및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제1항에 근거하여 수립한 교육훈련 계획에 따른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제44조2(소속 직원의 전문성 강화 등) : 자체 독자적인 교육훈련 실시

③ 처장은 제1항에 따른 6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경우 교육훈련 대상자의 직급(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파견하는 직위와 곤란성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인원은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총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다. 제44조2(소속 직원의 전문성 강화 등) 인사혁신처 교육프로그램 활용실시

③ 처장은 소속직원을 6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무원 인재개발원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위탁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 의무 기간은 수사처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제44조3(수사역량 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처장은 제44조 제2항에 따른 자체 교육훈련지원 및 관련분야 연구 등을 위한 수사역량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에서 교육훈련 및 연구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원과 관계없이 검사 등 수사관련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파견받거나 겸직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센터에 수사기법 등에 대한 상시적 자문을 위하여 퇴직검사,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 일정한 요건과 경력을 갖춘 사람을 수사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건 및 경력에 대한 사항은 수사처장이 정한다.

73) 이 또한 검사, 수사관의 정원 증원 및 임기제 개선 등 제도개선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법 제정이 필요

제3절 대검찰청 및 외국기관 교육제도

1. 대검찰청 교육제도

가. 검사 교육과정⁷⁴⁾

〈표 30〉 대검찰청의 검사 교육과정

구 분	과정명	대 상	교육기간
기본교육 (단계별교육) ※ 법무연수원 주관	신임검사 통합교육	로스쿨 신임검사	10개월
		사법연수원신임검사	5개월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교육	실근무 4년 이하	3일
	경력검사(전문분야직무교육)	경력 8년차	2주
	신임부장검사 리더십	부부장, 초임부장	2주+2일
	차장검사 리더십	신임차장	3일
	검사장 리더십	신임 검사장	3일
전문교육 (타킷형교육) ※ 대검주관 (국외훈련사전 교육 제외)	전담별 24개 과정 (형사부13, 공공수사1, 공송2, 과수1, 반 부패강력5, 인권2)	신규 전담검사	1~3일 (연 1~2회)
	맞춤형 인권교육	경력 3년이상	1일
	국외훈련 사전교육	국외 훈련 검사	2일

대검찰청 교육계획을 분석해 보면 2021년도 교육은 2021년에 개정 형사법령 시행으로 인한 일선 검사들의 업무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 관련 과목을 필수 편성하여 교육 강화하고자 하였고 경제·재산범죄 관련 교육을 확대하여 민생수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3개 과정으로

1) 법무연수원 주관하에 단계별 교육과정을 진행하여

가) 신임검사 교육과정

나)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 필수과정

다)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 선택과정 (서민다중, 피해범죄, 조세, 관세, 특허, 자재, 경제범죄 심화의 4과정)

라) 리더십과정으로 분류

2) 대검 주관하에 타킷형교육(전문교육)은 공공수사, 디지털, 사이버 수사, 반부패 수사, 공정거래, 금융, 범죄수익환수, 조직·마약범죄 등 수사와 관련한 7개 분야가 각 2일 과정으로 편성되었고 인권 관련하여 검사 맞춤형 인권교육(1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장애인 1일, 외국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1일) 등이 있으며

74) 검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진외국 법무·검찰 교육제도 비교 연구. 검사 교육과정

3) 코로나 상황하에 온라인 강의 교육은 법무연수원의 집합교육이 일부 행해지지 못하게 되어 실시하고 있음.

나. 수사관 및 직원 교육과정⁷⁵⁾

<표 31> 대검찰청의 수사관 및 직원 교육과정

교육기관	과 정	대 상	교육기간
법무연수원주관 (단계별 교육)	검사직무 대리과정	검찰 5급이상	4주
	검찰4급 승진자 과정	검찰 4급	5일
	검찰5급 승진자 과정	검찰 5급	5일
	과장후보자 역량개발 과정	검찰 5급 이상	3일
	검찰5급 승진후보자 수사역량향상	검찰 5급	3일
	검찰6급 승진후보자 수사역량향상	검찰 6급	3일
대검주관 (타깃형 교육)	집행관 실무과정	검찰 6급 이상	3일
	검찰공무원을 위한 민사실무과정	검찰 7급 이상	5일
	검찰직 관리역량 평가과정	검찰 6급	3일
	검찰민사, 영장, 집행관, 감사, 수행, 압수, 범죄수익환수, 정보화, 심리분석수사 실무 등 16개 과정	검찰 사무원~6급	1~5일

※ 법무부 직원 교육은 법무연수원 주관 단계별 교육이 있으며 검사직무대리 과정, 검찰4급~5급 승진자 과정, 과장후보자 역량개발 과정, 검찰5급~6급 승진후보자 수사역량향상 교육과정 등 직무를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며 타깃형 교육은 대검 주관하에 집행관 실무과정, 검찰공무원을 위한 민사실무 과정, 검찰직 관리역량 평가과정과 검찰사무원에서 6급까지 검찰민사, 영장, 심리분석사 등 16개 과정 등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있음.

2. 대만의 영정서 교육제도

가. 2020년 신입사원 교육과정⁷⁶⁾

<표 32> 대만 영정서 2020년 신입사원 교육과정

교육기관	과 정	수련섹션	교육 기간	인 원
반부패 교육원	3.4급지방자치특별시험과정	제44기 정부윤리 인사 연수반	2020.2.3.~5.8 (14주)	83명
		제45기 정부 윤리 인사 연수반	2020.6.15.~9.18 (14주)	72명

※ 3,4급 지방자치 특별시험과정에는 법률 및 조달강의, 부패조사 관행, 윤리부서 조사 및 부패방지가 포함되었으며 교육과정에서 교육생들은 공공 건설위원회에서 위임한 조달 담당자의 인증절차를 거치며 학습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 조달 면허를 취득함. 또한 인증과정을 통해 교육생은 공공 조달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 기술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함.

75) 검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진외국 법무·검찰 교육제도 비교 연구. 수사관 및 직원 교육과정

76) 대만 영정서 교육 및 훈련. 2020년 신입사원 교육과정

나. 현직 직원 교육

1) 정부 윤리경영 수준교육⁷⁷⁾

<표 33> 대만 염정서의 현직 직원 정부 윤리경영 수준 교육

교육기관	과 정	수련세션	교육 기간	인 원
반부패 교육원	9급 정부 윤리담당자 교육과정	제19기 청소년 9급 정부윤리관 양성반	2020.10.12.~10.30 (3주)	35명
		신입 주니어 9급 정부윤리 담당관 양성반	2020.10.26.~10.30 (5일)	41명
반부패 교육센터		신입직급 정부 윤리 담당자 양성반	2020.11.9.~11.13 (5일)	44명

※ 현직직원 교육으로 정부 윤리경영 수준교육과 전문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 윤리경영 수준교육은 청소년 9급 정부윤리관 양성반 등 3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내용은 핵심전문역량, 국가정책, 청렴, 자기 계발, 현재의 반부패 직업 정책, 잘 된 수사에 대한 벤치마크학습과 결합된 지침 및 지원을 주 과제로 교육 하고 있음.

2) 전문교육⁷⁸⁾

<표 34> 대만 염정서의 현직 직원 전문교육

교육기관	과 정	교육기간	교육내용
반부패 교육원	부패수사업무 고도화 교육	2020.10.13.~17, 10.16.~19, 10.19.23.(1회 5일)	조사능력, 감사 작업 및 기록 작성
	정보보안관리 감사 심화교육	2020.6.1.~5.(5일)	정보보안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
	국영기업 청렴운영에 관한 고급교육	2020.11.9.~20.(2주)	청렴윤리 전문지식. 기술, 조달. 법률
	건설조달 작업에 대한 고급교육	2020.6월~8월(5일)	건설조달업무 공통 경합사항, 불법 적 사항, 비정상적인 윤리담당자에 대한 조사 관행 사례 검토
	부패행정 수사업무에 관한 고도교육	2020.7월~9월(5일)	감사업무, 부패징후 처리, 조사, 인터뷰 기술 및 기록
	인사 고급교육	2019.12월, 2020.3월	인사계획정책, 성과평가, 인사 관리관행, 인사관리시스템운영

77) 대만 염정서 교육 및 훈련. 2020년 정부 윤리강령 수준교육

78) 대만 염정서 교육 및 훈련 79~85p

교육기관	과 정	교육기간	교육내용
	정부윤리인사연수교육	2년	현재주요업무에 대한 과정 정리, 의사교환 패널 선정 토론
기타 염정서 주관 행사	감사관 심리상당 워크숍	2020.5월~9월(4회 실시)	직장 내 심리적 요구 사항 평가,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등
	국제 교류교육	2020.12.23.	국제회의 및 발표, 국제 에티켓에 사용 하는 교육 및 영어
	부패방지 운영 진척 세미나 및 개선회의	2020.5월~11월 (3회 실시)	부패방지 업무, 방향, 경험담, 개선 내용 등
	윤리인사 반부패 스킬 워크숍	2020.7월(2회 실시)	윤리인력의 청렴도, 전문성,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등

※ 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부패 수사업무 고도화 교육, 정보보안관리 감사 심화교육, 국영기업 청렴운영에 관한 고급교육, 정부윤리인사연수 교육 등 다양하게 실시하고 특히 정부윤리 인사연수는 염정서 직원의 업무를 전문화하고 수사역량을 키우기 위해 장기적인 교육(2년)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각종 세미나, 워크숍, 현안문제에 대한 개선회의 등을 통해 조직의 발전과 수사역량을 발휘하여 국민의 신임을 받는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음.

3. 독일의 교육제도

가. 교육기관 : 독일법관연수원 (Deutsche Richterakademie)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연방 검찰과 주 검찰이 분리되어 있고 주 검찰의 인사행정은 각 주에서 행해지며 검사의 교육은 각 주에서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연방 차원의 통합 교육기관에서 주로 행해지고 연방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각 주에서 구상한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독일은 법관과 검사를 사법관으로 개념하고 있고 검찰청의 조직 등에 관하여 법원조직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관과 검사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독일법관 연수원(Deutsche Richterakademie)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독일법관연수원은 트리어(Trier)와 부르스트라우(Wurstru)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주의 법관과 검사들도 모두 이곳에서 교육을 받는다.

매년 약 150회의 학회형 교육(Tagung)이 개최되어 매년 약 5,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나. 교육프로그램

1) 2020년도 트리어연수원 연간 교육프로그램⁷⁹⁾ “예”

79) 검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진외국 법무·검찰교육제도 비교연구 35~37p

〈표 35〉 2020년 독일 트리어연수원 연간 교육프로그램

연수번호	기 간	주 제	주관 법무부
01b	1.12~1.17	소통훈련 및 법정 변론기법	바덴뷔르템베르크
02a	1.20~1.24	건축법 사안에서의 감정인 증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02b	1.20~1.24	국제 인권법	연방
03a	1.26~1.30	민법의 새로운 발전방향	바이에른
04a	2.2~2.7	통신영역에서의 수사상 처분	바이에른
05a	2.9~2.14	가정에서의 폭력과 형법적 측면, 성적불법 혐의에 있어서 신빙성 판단	헤센
06a	2.16~2.21	사적 건축법상 몇가지 문제	바덴뷔르템베르크
06b	2.16~2.21	형법에 있어 최근의 변화	바이에른
07a	3.2~3.6	상표법의 최근 변화	연방
07b	3.2~3.6	진술과 신문의 안전한 진행방법	바덴뷔르템베르크
09a	3.23~3.26	스포츠 법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11a	3.29~4.4	대참심합의부(Schwurger Icht)의 특별한 문제	헤센
11b	3.29~4.3	법무업무에 있어서 정신질환자	함부르크
12a	4.2~4.24	마약류형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최근판례	바이에른
13b	4.27~4.30	전자사법 및 전자적 법적 소통 - 사법에서의 디지털의 현재와 미래	헤센
14a	5.3~5.8	가족법 기초	바덴뷔르템베르크
14b	5.3~5.8	조세법 입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15a	5.11~5.15	유럽 상황하에서 독일 노동법	바이에른
18b	6.1~6.5	조세형법	바이에른
19a	6.7~6.10	법정실무에서 헌법의 중요성	연방
19b	6.7~6.10	자본 투자법	바이에른
21b	6.21~6.26	법급진주의와 신나치주의 - 연속성과 현재의 경향	니더작센
23a	8.23~8.28	사법과 공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24b	8.31~9.4	심리학적 변론과 기타 법원판단의 영향요소	바덴뷔르템베르크
25a	9.7~9.11	효율적인 협박대응-위험인지,평가,처리	라인란리-팔츠
25b	9.6~9.11	유럽사회법	헤센
27a	9.21~9.25	행정질서 벌법의 기본원리	바덴뷔르템베르크
27b	9.21~9.25	기업조세법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29a	10.5~10.8	금융 및 자본시장법의 현안문제	연방
30a	10.11~10.16	조직범죄	바이에른
31a	10.25~10.30	결정에 있어서 심리학적 기본원리 - 이성과 직관사이의 긴장속에서의 법률가	튀링엔
31b	10.18~10.23	형법과 인터넷	니더작센
32b	10.26~10.30	인터넷 범죄의 발생형태와 대응	바이에른
33a	11.3~11.5	인종주의-사법에 대한 요청	연방
33b	11.2~11.6	사실확정의 기본원리와 신문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34a	11.8~11.13	수사기법과 수사전략	바덴뷔르템베르크
35a	11.15~11.20	보험법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37a	11.30~12.4	형사적 재산몰수법	바덴뷔르템베르크
38a	12.6~12.11	경제법의 최근 발전	작센
38b	12.6~12.11	형법 제63조, 제64조 및 제66조에 의한 수용시설 수용처분의 법과 실무	바이에른

다. 주요과정 소개⁸⁰⁾

1) 통신영역에서의 수사상 처분(04a)

검사 및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중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현대의 통신을 매개로 하는 형사범죄에 있어 수사수단으로서의 인터넷의 구조와 작동 방식임.
- 나) 전기 통신영역에서의 비밀성 수사처분 개관 및 실무상의 집행을 하고 있음.
- 다) 통신감청(통신감청, 통신거래자료 확보, 외부저장 장치의 압수수색, 사회적 네트워크의 수사, 증거능력 문제 등)의 영역에서의 비밀성 수사처분과 관련 현 형사소송법적 문제.

2) 가정에서의 폭력과 형법적 측면, 성적 불법 혐의에 있어서 신빙성 판단(5a)

검사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및 가정법원 판사들을 위한 과정으로 주요내용은 유럽사법연수 네트워크 하의 연수과정으로서 외국인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 가) 가정폭력의 발생
- 나) 이슬람 문화영역 출신 가정들에서의 폭력
- 다)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법률의 특별한 관점하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가정법원의 대응
- 라) 가정 갈등에 있어서 형사소송절차
- 마) 성적 불법 혐의에 있어서의 신빙성 판단

3) 조세형법(18b)

조세 전담 검사 및 검찰수사관, 판사들을 위한 과정이다

- 가) 조세 관여 관청들의 관계와 지위 및 권한
- 나) 조세 확정절차와 조세형사절차
- 다) 부패범죄에 있어서의 조세적 측면
- 라) 조세 범죄 구성요건 개별사항과 다른 형사범죄와의 한계
- 마) 조세비밀과 그 예외
- 바) 공소시효 문제
- 사) 조세사건의 수사

4) 법 급진주의(Rechtsradikalismus)와 신나치주의 - 연속성과 현재의 경향(21b)

- 가) 국가사회주의 지하단체(NSU, Nationalsozialistischer Untergrund)에 의한 살인범죄는 법 극단주의(Rechtsradikalismus)에 대해 일반적인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 나) 특히 헌법수호청과 경찰은 우측 눈을 감고 있지 않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한다. 이러한 질문은 또한 사법 영역에 대해서도 자주 던져진다.
- 다) 이 세미나에서는 도입강연에서 독일연방공화국에서 국가 사회주의 법률가들에 의한 잘못된 형사소추에 관하여 강연하면서 사법의 고유위치에 관하여 검토한다.

80) 80) 검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진외국 법무•검찰교육제도 비교연구 42~47p

5) 기업조세법(27b)

실무상 중요한 기업조세법 영역에 대한 개관을 제공한다. 주식회사, 인적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주로 다루고 국제조세, 상속세, 증여세 등도 강의 대상이다.

6) 조직범죄(30a)

조직범죄 전담검사와 검찰수사관, 판사들을 대상으로 하며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직범죄의 구조형태와 전형적인 행위자 관계

나) 전기통신감청 및 온라인 수배 영역에서의 새로운 수사처분과 시도들 및 그 증거사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

다) 공판에서의 특별한 문제

라) 비밀수사요원의 투입

마) 증인 보호

바) 범죄수익환수

사) 경찰과 사법의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

아) 국제 협력

7) 형사적 범죄수익환수(37a)

이 세미나에서는 형사적 범죄수익환수 관련법에 대한 강의가 행해지는데 입법자의 의도의 관점에서 상론된다, 그 후 실무에서의 적용에 대한 중점적 강의를 이루어지는데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법 개정 이후의 “취득된 것(erlangte Etwas)” 의 의미

나) 제3자에 있어서의 범죄수익환수

다) 임시처분과 절차적 규정

라) 개혁 법안이 법원의 절차에 미치는 영향

마) 범죄수익환수와 파산절차

바) 피해자 배상의 모델

사) 그 외에 이 세미나에서는 각 참여자들의 경험을 나누고 토론하며 형사적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법적 문제들을 개진할 기회가 부여된다.

8) 경제형법의 최근 발전 동향(38a)

경제형법에 대해 수년간의 실무경험을 가진 검사 및 판사들을 대상으로 하며 강의와 함께 실무경험을 나누는 토론 시간이 있다.

가) 범죄대응과 위기관리에 있어서의 새로운 조직형태

나) 조세형법과 재산범죄형법(대법원 판례)

다) 경제형사절차에서의 범죄수익환수

라) 자금세탁, 부정부패

마) 상표권, 저작권 및 불법복제

바) 경제형사 사건에서의 절차적 쟁점들 등

라. 대검찰청과 외국교육사례에서 도출된 사항

1) 교육과정의 다양성 도출 활용

법무연수원 및 대검찰청 교육과 대만의 영정서 교육, 독일의 교육체계 응용

가) 전문화 교육과정 확대 필요

심화과정 개설(22개 과정)

나) 전문화 검사제도 활용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화를 강화하고 전문화검사 제도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킨다면 수사역량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임.

2) 실시간 온라인 교육확대

가) 교육과정 다양화에 활용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교육기간을 2일~3일 한다면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

나) 과정중심 대신 개별 강의 중심으로 전환

(1) 강의 단위별 교육과정으로 전환

(2) 강의 이수의 점수제도 도입

(3) 코로나 위기에서의 효율적 강의방안 강구

3)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교육과정에 있어 집합형 교육과정에 더하여 강의 중심형 교육이 도입되면 각 수사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강의도 맞춤형으로 개설을 하여 직원의 업무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4) 대학 등 외부 교육기관과의 연계

전문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시된 영역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 등 외부 교육기관의 강의와 연계하여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도움이 될 것임.

5) 인사와의 연계

검사 및 수사관의 전문성 강화는 업무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므로 전문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검사 및 수사관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해당영역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므로 전문성 강화는 인사와 연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6) 전문검사 커뮤니티 활성화

전문검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호관심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소모임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활성화가 된다.

온라인 모임 등을 통해 자주 모임을 갖고 토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 검사와 수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제 완비

1) 전문성 강화교육

가) 전문성 강화교육은 공수처 구성요원들이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써 공수처의 수사능력, 조사능력, 수사지원능력을 조기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방법임.

나) 전문성 활용은 수사와 공판업무에서 필요한 것으로 수사업무 시 신문이나 조사기법, 수사절차에 있어서 법적 절차, 증인신문이나 피고인 신문의 기술강화와 공판업무 시 변론기법, 프레젠테이션, 중요한 법·제도에 대한 이해로 해당영역에 필요한 특별한 지식을 갖추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음.

2) 인권 친화적 수사 가능

일정한 영역의 수사나 공판을 담당하면서 전문화가 되어있다면 요즘 특별히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인권보호 및 안전문제, 인권친화적 수사가 가능하여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음.

제4절 우수인력 확보와 직원사기 및 복지를 위한 보상관리체계 확립

1. 개 요

보상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기여한 공헌에 대한 대가로써 경제적 보상과 비경제적 보상을 포함한다. 보상관리는 구성원과 조직 간의 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 조정하는 인적자원관리 기능이며 구성원의 행동과 조직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2. 현실태

공수처는 인력운영예산을 포함한 모든 예산을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조직목적에 맞는 독자적인 보수체계 정립과 실증자료와 논리가 부족하며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수관리가 적용되고 있고 직원의 사기 및 복지를 위한 분야에서 일반공무원의 복지체계를 따르게 되어있어서 직원의 사기 복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공수처는 퇴직자가 다시 공무원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전 근무지 퇴직시 퇴직금 처리가 이미 되어있는 상태로 복귀 시 기지급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여 우수인력이 지원하는데 장애요소가 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말하며 연봉제 적용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포함 한다. 또한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 또는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및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을 말한다.⁸¹⁾

81)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정의

3. 보상 및 직원사기 복지가 필요한 이유

보상은 경제적,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심리적 욕구인 인정의 욕구(safety-needs), 사회적 욕구(social-needs) 및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를 충족시켜주는 데 기본적인 역할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보상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물론 매슬로우, 허츠버그 및 맥클랜드 등 학자들의 동기이론을 살펴보면 보상보다 자율성과 성취감 등 개인의 상위욕구와 직무 내재적 요소들을 동기요인으로 보지만 개인적 목표달성이 보상이라는 수단으로 이루어진다면 보상의 가치가 중요함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보상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조직의 효율적인 보상관리는 그 조직의 중요한 경영분야로서 우수인력의 확보 및 유지와 조직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보상을 전략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상 관리 요건이 충족되는 보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1) 충분성(Adequacy) : 보상체계는 최저임금수준을 충족하는 등 사회 경제적 조건과 노사관계 및 법규에 따라 적정수준의 보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 2) 공정성(Equity) : 조직 전체의 보수수준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조직구성원 각자의 노력, 능력 및 기술 등 설정된 기준에 따라 공정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 3) 균형성(Balance) : 경제적 보상과 비경제적 보상이 균형을 이루도록 보상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 4) 비용대 효과성(Cost Effectiveness) : 조직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조직에 무리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지급 되어야 한다.
- 5) 안정성(Security) : 구성원의 경제적 안정과 안전욕구 충족에 기여하여야 한다.
- 6) 동기부여(Incentive Providing) : 보상은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생산성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 7) 수용성(Acceptability) : 보상체계는 조직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타당하다고 느껴지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상체계를 갖추었다더라도 효율적인 보상관리를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략적 결정과 연계하여 관리 되어야 한다.

1)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조직 전반의 보수수준 결정

가) 외부환경 요소

지역의 경제사정과 생활비의 수준

인력시장 현황 : 관련 인력의 수급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

경쟁관계에 있는 조직의 임금수준과 임금 편성지침 등

노사관계와 최저임금 등 관련 법규

나) 조직의 내적 요소

조직의 지불능력

조직의 생산성이 보수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

경영이념과 임금전략의 선택에 따라 경쟁 보상 전략

2) 구성원의 직무평가를 통한 공정한 보수구조 정립 : 직무의 가치 평가 분석

3) 시간급, 성과급 등 효율적인 보수지급 방법의 선정

4)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활용

5) 복리후생 등 균형 있는 보상패키지 구성

4. 경제적 · 비경제적 보상체계⁸²⁾

<표 36>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경제적 비경제적 보상체계

구 분	보상 종류	보상 내용
경제적 보상	간접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복리 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보험 - 의료보험제도 - 고용보험 - 재해보험 - 유급휴식제도 • 법적인 복리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제공 등 - 주택구입 융자 - 보건위생/문화 - 건강검진, 건강상담, 체육, 문화활동기회 제공 - 무노동복리후생 ; 휴가, 결근 보장
	직접보상 (직장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급 • 수당 • 상여금, 성과급, 주식옵션, 퇴직금 등
비경제적 보상	사회/심리적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창 • 발전기회 • 도전기회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상여수당은 8가지로 구별된다.

82) 충남대. ADD 발전을 위한 우수인력확보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4P.

- ① 대우공무원 수당(월봉급액의 4.8% 지급)
- ② 정근수당(연 2회 근무연수에 따라 5~50% 지급)
- ③ 성과 상여금(3급이하 대상으로 개인 또는 단체로 지급, 기준직급 월봉급액의 70~180%까지 지급)
- ④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 배우자 3만원, 자녀 2만원 지급, 자녀학비 보조수당: 초등학교 공납금 및 육성회비 지급, 육아휴직수당 : 자녀 양육을 위한 30일 이상 휴가 시 월 50만원 지급)
- ⑤ 특수지 근무수당(도서벽지 수당 : 4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 5년마다 실태조사)
- ⑥ 특수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 위험한 직무 종사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 특수업무수당 : 기술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연구업무수당, 교직수당, 함정근무수당, 전산 업무수당, 재외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 수당: 월봉급액의 40% 범위내에서 지급)
- ⑦ 초과근무수당(시간외 근무수당 : 규정된 시간외 근무자, 5급 이하 지급, 야간근무수당 : 주·야 근무자로서 야간 근무 시 지급, 휴일근무수당 : 휴일근무자 봉급액의 30분의 1 지급, 관리업무수당 : 4급 이상 월 봉급의 9% 지급)
- ⑧ 실비 변상으로 정액급식비(월 13만원), 교통보조비(1급 이하 공무원, 군인 등 월 7만~20만원 지급, 명절휴가비(월 봉급액의 60% 지급), 가계지원비(월 봉급액의 16.7% 지급), 연가보상비(12월 봉급액 x 30분의 1 x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직급보조비(직위별 7~124만원)를 공무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보상체계 개선방안

가. 현실태

공수처 우수인력확보 유인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현 여건 하에서 검토 가능한 방안은 현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공수처에서 근무하는 검사, 수사관 등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공무원 수당지급표에 공수처가 누락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공무원 수당지급표에 의거 공수처 직원이 해당되거나 유사한 내용이 있다면 내용을 포함하여 혜택을 받도록 기재부 및 인사혁신처와 협조해서 합리적인 수당 지급의 내용을 포함하고 신설 가능한 것은 신설하여 적정수준의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공수처 특성을 고려한 수당 중 해당 가능한 수당

특수 업무 수당 중 장려수당
 일반직원 특수 업무 수당 중 해당되는 특수 직위수당
 수사특별 성과금 지급

다. 특수 업무 수당 중 공수처 누락된 장려수당

1) 장려수당의 의미

장려수당은 국방부소속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재복무하는 인원(장교 및 부사관으로 전역해서 다시 군에 들어오는 인원)에 대한 장려금과 군의관 보조금 성격의 장려금지급의 목적과 외교부에 근무하는 인원 중 특수한 분야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 지급하는 장려금이 있다.

2)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도 주장할 수 있는 이유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도 재복무하는 경우이며 또한 공수처의 임무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특수한 목적에 근무하는 특수직위에 해당하며, 특히 고위공직자 대상 부패 수사는 범죄를 지능적으로 감추기 때문에 이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므로 수사 성공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장려수당을 지급을 기재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에 의거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14조) 분석을 통하여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수당 적용 가능한 수당 중 장려수당 분석⁸³⁾

3)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특수업무수당 분야 지급표 3항에 특수업무분야 다항 외무공무원·군인 등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가)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정밀고가 장비 등 특수장비 조작·운영 요원

나)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의관 등의 특수장교 및 준사관·부사관

다)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기술자

라)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 후 전역하였다가 다시 부사관으로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들어오는 인원

- 라)항은 장교 및 부사관이 전역하였다가 다시 부사관으로 시험에 응시, 들어오는 경우와 공수처의 검사 및 수사관이 퇴직 후 다시 공수처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들어오는 것과 유사하며,
- 또한 고위 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장 조직 제8조(수사처 검사) 라)항에 의하면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 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 군 고위직이 범죄에 해당 시 수사를 위해 군에도 관련된 업무를 해야 하며, 공수처 수사관도 검사의 지시를 받아 군에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법을 적용토록 기재부 및 인사혁신처와 협조하여 장려수당에 공수처 근무하는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 종사 군무원

바) 해당 직무등급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외무 공무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

4)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장려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가) 지급액

(1) 1)의 해당자 : 월 35,000원

(2) 2)의 해당자(군의관) : 월 950,000원

(3) 3)의 해당자 : 월 180,000원

(4) 4)의 해당자 : 월 270,000원

(5) 5)의 해당자 : 월 110,000원

(6) 6)의 해당자 : 제 6조의 2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수당에 준하여 지급

※ 따라서 이법을 적용토록 기재부 및 인사혁신처와 협조하여 장려수당에 공수처 근무하는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83)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에 의거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14조) 3.항특수분야 다항 장려수당

라. 법 개정사항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특수업무수당 분야 지급표 3항에 특수업무분야 다항 외무공무원·군인 등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내용 개정

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특수업무수당 분야 지급표 3항에 특수업무분야 다항 외무공무원·군인 등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을 다항 외무공무원·군인, 공수처공무원 등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에 의거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14조) 분석을 통하여 공수처에 수사지원 인력(일반직원) 수당 적용 가능한 수당 중 특수직무 수당 분석⁸⁴⁾

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특수업무수당 분야 지급표 3항에 특수업무분야 바항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2) 지급대상 9항은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수사경찰공무원 및 철도경찰직 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항.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와 형사재판의 집행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검찰사무직 및 마약 수사직 공무원과 감정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하의 별정직 또는 전문경력관.

나항.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을 전담하여 조사·처리하는 수사경찰공무원

① 지급액

- 가항에 해당자 : 월 70,000원(현재 수사관 받고 있음)
- 나항에 해당자 : 월 40,000원

3) 공수처 내에 근무하는 일반직원 요원 중 가항 및 나항 해당자는 지급

바. 법 개정사항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에 의거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내용 개정

1) 가항.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와 형사재판의 집행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검찰사무직 및 마약 수사직 공무원과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하의 별정직 또는 전문경력관 이란 문구 중 검찰청 및 공수처 소속 공무원 중 등으로 개정

사. 수사특별 성과금 신설

공수처 수사 중 국가적으로 또는 국가기관에 피해를 준 공직자범죄 중 범죄금액 환수 등 수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가에 특별한 공이 인정되는 부분은 수사 성공보상금 지급(재원은 특수수사비에서 염출하여 포상)이 필요함.

아. 퇴직금 제도의 개선

1) 현실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은 경력근무자들로서 이미 퇴직 시 퇴직금을 받아 사용한 상태에서

84)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에 의거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14조) 3항 특수분야 바항 특수직무수당

채용되기 때문에 임용 시 많은 금액을 일시적으로 반납해야 함으로서 재정적인 부담이 되어 공수처에 우수인력이 지원하는데 제한이 됨

2) 검토결과

우수인력이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퇴직금 상환을 정부가 보존해 주고 추후 퇴직 시 재 정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이는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 재임용되는 퇴직한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등이 해당되어 모두가 의의를 제기하여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

자. 공수처 직원 복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을 설치 운영 건의.

1) 공수처 가족복지회 운영

가) 공수처 가족 복지회 조성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일명 : 검찰가족복지회) 공수처 자체 가족복지회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여 직원에게 복지혜택부여

나) 단기적으로는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휴양 복지시설 이용 가능토록 협조.

※ 경찰 연수원(복지시설), 검찰가족복지회, 기타 협조 가능한 정부기관 복지시설 등 협조.

2) 기타 복지를 위해서 신설할 가능한 조직은 공수처상조회, 검사동우회, 수사관동우회, 일반직원동우회 등을 만들기를 권장하여 자체 복지활동이 되도록 유도한다.

7. 검찰 위원회 현황 분석

검찰에서 우수인재 혜택 및 직원복지를 위해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참고)

가. 검찰 위원회 현황⁸⁵⁾

<표 39> 검찰 위원회 현황

구분 위원회별	설치근거	위원장	위원	간사	비고
보상금 심사위원회	중요사건 피해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	차장검사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4인 위촉	검찰 연구관	- 필요시 - 참석 불 요
성과금 심사위원회	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정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	운영지원 과장	- 연1회 - 필수참석
대검특별 승급 심사 위원회	공무원부수규정 제16조제1항 등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2장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 위원 중 1/3 이상을 소속공무 원 이외의 자로 구성	인사 실무관	- 연1회

85) 2021 검찰연감. 제1장 검찰의 조직·인사제도 17P

구분 위원회별	설치근거	위원장	위원	간사	비고
공적심사 위원회	정부표창규정 제13 조대검찰청 포상 업무지침 (2020.5)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 상 11인 이하의 위원	인사 실무관	- 필요시
검찰 가족 복지 운영 위원회	검찰가족 복지회 규약 제16조	사무국장	복지후생과장, 기재부 선임연구원, 선 임인사주무, 행정지원반장,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서울고검 총 무과장, 서울중앙지검 선임인사담당서 기 대검·서울중앙지검 여직원회 회장	복지후생 사무관	- 필요시
공인전문 검사인증 심사위원 회	전문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지 침 (대검예규 제 996회)	고검장급 검사	법무부 검찰과 검사1인, 정책 기획과장, 형사1과장, 경력7년 이상 법무연수원 소속 검사1 인 및 각급검찰청 검사3인	검찰 연구원	- 연1회 - 필 수 참 석
맞춤형 복 지관련 대 검찰청 후 생복지 운 영위원회	대검찰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에 관한 운영지 침 (대검예규 제 954호)	사무국장	운영지원과장, 복지후생과장, 각 고검 총무과장	복지후생 과 직원	- 필요시 - 해당없음
검찰공무원 상조회이사 회	검찰공무원 상조 회 규약	사무국장	복지후생과장, 행정지원반장, 법무부 검찰과 선임직원, 서울 고검 총무과장, 방호실장, 수원· 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총무 주무, 서울중앙·인천지검 총무주 무, 서울중앙지검 여직원회장	회장지명	- 필요시 - 필수참석
검찰상조 부조회 이사회	검찰 상조 부조 회 규약	차장검사	사무국장, 정책기획 과장, 운 영지원과장, 복지후생과장, 집 행 과장, 서울고검·서울 중앙 지검 총무과장	복지 후생과 사무관	- 사유 발생시 - 필수참석
호봉 경력평가 심의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운영지원 과장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 상의 위원	운영지원 과 직원	- 연2회 - 필수참석
공인전문 수사관 인증심사 위원회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 전문화에 관한 지침(대검예규 제 1024호)	대검 검사급 검사 이상	정책기획과장, 공판 1과장, 감 찰1과장, 운영지원과장 등 민 원 관계부서장, 외부 법률전문 가 1인 이상	운영지원 과 담당 자	- 연2회 - 필수참석
검찰전문화 연구시설	검찰전문화 연구시 설관리 운영지침	사무국장	복지후생과장, 정책기획과·운 영지원과·복지후생과 사무관,	-	- 필요시

구분 위원회별	설치근거	위원장	위원	간사	비고
운영위원회			법무부검찰과 예산서기관, 제 주지검 총무과장		

※ 위를 참고로 공수처 실정에 맞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제5절 개선방안 및 제언

현재 공수처는 조직 출발 초기부터 여야 대립 하에 설립된 조직으로 제대로 된 조직임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복지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분석 및 평가해 볼 때 수사역량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있는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조직구조와 국민과 여야의 신뢰받는 조직으로 재탄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연구한 자료는 우수한 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 관련 정책 자료로의 활용이 가능하고 공수처 관련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수처법 개정과 우수인재 확보,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필수적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이 되어야 한다.

1. 법 개정 및 자체규정 작성

공수처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고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만들려면 연구하여 제시된 내용을 시행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인력부족 문제, 우수인재 확보, 직원 사기 진작 등에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여야 한다. 자체규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어서 공수처를 제대로 된 조직으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한다.

2. 우수인재 채용단계 확보 및 현 근무요원의 능력향상 교육실시.

수사 분야 유능한 인재를 선발과정에서 발굴하고 우수인재를 확보한 뒤에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교육 등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공수처 업무수행의 성과를 극대화시켜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3. 처우개선의 당위성

급여의 증가나 복지의 개선 등과 같은 직원의 보상정도가 알려지면 우수인력이 모여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처우개선 방안과 우수인력확보 방안은 상당부분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그만큼 처우개선의 문제는 공수처 발전의 미래를 위해 보다 본질적이고 우선시해야 할 주제가 아닐 수 없다.

4.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모든 계획은 한 번에 다 이루어지면 제일 좋으나 여건과 현실이 그렇지 못하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업무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은 단기계획에 그리고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실천해 나아간다면 공수처가 국민에게 신뢰받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정부의 공직자가 이 나라를 이끌도록 한다면 국민을 위한 공수처가 될 것이다.

제5장 공수처법의 보완 분석과 입법론

제1절 공수처법의 연혁분석

1. 공수처 설치의 정책적 추진과정과 배경

공수처의 설치에 1999년도부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존재해왔던 특별검사(이하 ‘특검’이라 칭함) 제도, 2014년 2월 28일 대검 중수부 폐지의 대안으로 18대 대선 공약인 ‘특별감찰관제’와 ‘상설 특검제’의 법률제정을 바탕으로 한다.

전자는 여야의 합의에 의하여 임시로 법률이 제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인력과 기간의 제한으로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척결수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개별특검에 해당한다. 후자는 규범화된 특검제도로써 제도특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특검은 사실상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한시적 특별검사제’와 비교하여 특별한 장점이 없는 제도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2014년 3월 18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이라 칭함)을 제정하여 상설특검을 제도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행 특검법은 입법의 불완전성에 의하여 특검팀의 조직체계가 완비될 수 없는 구조 체계이기 때문에 수사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입법취지에 따른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국민들부터 예산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조직체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측면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현행 공수처법은 조직체계와 기능의 측면에서 입법적으로 불완전하지만, 특검법을 수용하여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특히 상설화된 특검제도로써 기구특검에 해당한다. 다만, 공수처법은 향후 충분한 입법적 보완을 한다면 특검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구특검으로서 공수처 설치의 직제는 2022년 8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부(총 3명의 부장검사, 19명의 검사로 구성)와 유사하다. 이러한 공수처의 직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연혁을 역추적하면 2018년 기준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산하의 특수부(총 4명의 부장검사, 39명의 검사로 구성)에서 유래하며, 더 나아가 1961년 4월 중앙수사국으로 출범하여 2013년 4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대검 중수부를 근간으로 한다. 대검 중수부는 과거정부 청산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검찰총장에 의한 하명수사, 표적수사 등 권력의 시녀 내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결국 여야 정치적 합의와 대통령의 대선공약의 이행으로 폐지되었다. 그래서 공수처는 대검 중수부와 달리 특수한 행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설치되었다.

2. 공수처 조직체계에 관한 의안별 선택적 입법분석

의안별 공수처법의 입법취지는 공통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목표로 하였다. 다만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5년 혹은 임기 3년에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법안이 제안되었지만, 특별

검사와 수사관, 행정직원 등에 대한 신분보장의 규정은 미흡하였다. 그리고 공수처의 직제에 관하여 인천지검을 모델로 제안한 법안(의안번호 505, 2012.7.4. 김동철 등 36인)과 특별수사청 설치를 제안한 법안(의안번호 12307, 2011.6.22. 박영선 등 11인) 등이 제시되었지만, 전자는 슈퍼공수처모형에 가깝고, 후자는 초소형 독립 수사기관모형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모형의 제시에 불과하였다. 다만, 적정한 인력증원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독립청사의 필요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점에서 고무적인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공수처의 조직체계와 관련하여 홍콩 영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을 모델로 제안한 법안(의안번호 20029, 2019.4.26. 백혜련 등 12인)은 실질적으로 공수처법으로 입법되었다. 이 법안에서 제안한 공수처의 규모는 2022년 8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부의 규모와 비슷하며, 이로써 지방검찰청 지청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3. 공수처 입법안의 경과분석과 방향성

공수처 설치 이전에는 공수처의 조직체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법안이 제안되었지만, 공수처의 설치 이후에 제안된 입법안들은 공수처의 현실을 반영한 법안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조직체계의 완비에 소극적인 입법안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장의 의사결정권과 인사제청권을 보장하는 법안(의안번호 9293, 2021.4.2. 전주혜 등 11인), 공수처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사관 정원 40명에서 50명으로 증원, 행정직원 정원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 공수처 관장의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권의 이행, 공수처법 제44조의 공무원 파견범위와 근거를 확정하는 법안(의안번호 10857, 2012.6.17. 이수진 등 12인), 공수처의 폭증하는 행정업무와 민원처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을 고려하여 행정직원의 정원 20명에서 60명으로 증원을 제안한 법안(의안번호 11515, 2021.7.14. 송기현 등 11인), 공수처법 제10조 제2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공수처에 파견된 검찰청소속 검찰 수사관의 파견인원을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한 법안(의안번호 13138, 2021.11.4. 소병철 등 10인), 공수처법 제44조 파견공무원의 구체적 범위 확정과 임기제공무원 임용권을 제안한 법안(의안번호 13280, 2021.11.12. 김영배 등 11인) 등은 실효성의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이며, 더 나아가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 등에 대하여 대검찰청 소속 당해공무원과 동일하게 신분의 안정화를 위한 입법안이 제안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수처가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특별준사법기관, 특별검찰청으로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공정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독자적인 수사인력과 행정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독립청사, 수사역량을 갖춘 경력직 수사검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수처 검사의 신분을 대검찰청 소속 검사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라 보수와 대우를 고려하는 입법안이 제안되어 제정되어야 한다.

제2절 공수처 직제와 관련한 입법상의 보완과 입법론

1. 공수처 검사의 인력부족

가. 현행 조문

제8조(수사처검사)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나. 입법취지

이 규정은 판사, 검사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수처의 검사에 대한 정원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다. 운영과정상 문제점과 유사입법 검토

기존 공수처의 검사 인력으로는 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공수처는 상설화된 기구특검이므로 연속성 확보가 중요하며, 특검법에 의하여 특검업무를 지원하거나 독자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면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검사는 현행보다 2배 가까이 증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라. 개정(안)

제8조(수사처검사)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한다.

2. 공수처 수사관의 인력부족 문제

가. 현행 조문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나. 입법취지

공수처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 하였던 사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여 검사를 보좌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고,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찰수사관을 공수처 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규정상 공수처 수사관과 검찰수사관이 동일한 정도의 역량을 구비한 수사관으로 파악하여 입법하였다.

다. 운영과정상 문제점과 유사입법 검토

공수처는 중앙행정기관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인사, 예산, 국회 등의 행정업무가 과중하며, 현행 수사관의 정원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하기에 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관 정원을 현행에서 2배수로 증원해야 한다. 애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수사관 정원 50~70명)은 검사 1인당 수사관 비율을 2.5배수로 산정하였고, 현행 정원은 검사 1인당 수사관 비율을 1.5배수로 산정하였으므로 절충안으로서 개정(안) 제8조 제2항에서 제안한 검사 정원 40명을 기준으로 볼 때 검사 1인당 수사관 비율을 2배수로 산정하여 입법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 개정(안)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8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3. 행정직원의 인력부족 문제

가. 현행조문

제11조(그 밖의 직원)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나. 입법취지

공수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는데, 인원을 20명 이내로 입법한 것은 공수처의 직제를 대검 특수수사과 모형에 불과한 것으로 입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제도특점이 상실화된 기구특점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고유한 행정업무를 비롯하여 특검법에 의한 특검이 실시되면 특검의 행정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공수처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 예산, 인사, 회계, 총무 및 행정심판위원회 등을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공수처의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직원의 인원이 증원되어야 한다.

다. 운영과정상 문제점과 유사입법 검토

공수처는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예산, 인사, 회계, 총무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등 행

정업무가 과중되고 있으며, 부족한 행정인력 때문에 수사관들이 고유의 수사업무가 아닌 행정업무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 유사규모를 가진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지원 인력은 40~60명 정도 되므로 공수처 역시 원활한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현행 정원보다 2~3배 정도 증원되어야 하므로 약 50명 정도로 행정인력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 개정(안)

제11조(그 밖의 직원)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4. 공수처 파견공무원의 실효성 문제

가. 현행조문

제44조(파견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나. 입법취지

이 규정은 공수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수사와 공소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검찰청, 경찰청 등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 운영과정상 문제점과 유사입법 검토

공수처의 경우 인력의 규모가 작으므로 일정 부분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파견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다만, 현행 규정은 행정기관만으로 이를 한정하고 있어 법원이나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 등으로부터 파견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파견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무사항까지는 아니지만 원활한 파견인력 충원을 위한 다음과 같은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

라. 개정(안)

제44조(파견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충실히 협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을 수사처로 파견 보낼 수 있다.

제3절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1. 공수처법 제1(목적)에 근거한 고유권한의 측면에서

공수처법의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예방하고 비리를 척결하여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공수처법은 완결된 입법이 아닌 미완의 입법이며, 공수처의 기능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예산, 독립청사의 신축 등의 선결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공수처가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위와 역할, 수사와 공소기능에 있어서 특별사법기관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 조직체계의 안정화와 공수처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2. 공수처의 조직기능 및 역량강화의 측면에서

공수처가 입법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속하게 수사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수처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들의 전문성 확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및 행정직원에 대한 인력증원, 신분보장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업무를 분담 내지 공조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공정한 수사의 실현을 위하여 공수처의 조직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공수처의 조직체계와 기능은 기구특검이지만, 특별검찰청의 성격이 내재하기 때문에 현행 조직체계에서 특별수사부, 반부패수사 1부, 반부패수사 2부, 금융경제수사부, 공소부 등의 직제개편이 필요하다. 예컨대 공수처는 국회의 통제를 받는 특수한 행정기관으로서 특별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조직체계를 수사 1부(부패·경제범죄), 수사 2부(직무관련범죄), 수사 3부(선거 등 기타범죄), 수사 4부(범죄수익환수 및 일반고소·고발), 공소부(공판)로 전문화 및 유형화하여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검사 40명(처장, 차장, 부장검사 5명, 부부장검사 7명, 검사 26명), 수사관 80명(검사 1인당 검찰수사관의 비율은 2배수), 행정인력 50명(검사 1인당 행정인력의 비율은 1.2배수) 등 총원 170명의 인력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

3. 국정수행을 위한 정책적 방법론의 측면에서

정책적 방법론에 의하여 공수처의 조직체계와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입법적 방법론으로써 공수처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규모의 공수처의 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 공수처법은 제3자적 지위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입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로서 특검제도의 상설화와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따라서 공수처의 합리적 모형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추출되어야 하며, 정책적 방법론과 입법적 방법론이 조화롭게 절충되는 구조로서 특별사법기관에 준하는 특별검찰청의 모형으로 추출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공수처의 적절한 모형은 서울북부지검 모형이 가장 합리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공수처가 적절한 모형을 갖추게 되면 조직체계가 완비되어 본래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존각을 다투는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고위

공직자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공정한 수사와 공소업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로써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불신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 정부(대통령)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어 안정적인 국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6장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는 고위공직자들이 고위 직책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탐하는 범죄가 자주 일어나자 정부의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1996년부터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오던 중 20대 국회에서 국민의 여망과 기대 속에 언론, 법조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야 대립의 우여곡절 끝에 기구가 설립되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 21일부터 1년 9개월 동안 운영되어 왔지만 역할과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언론, 법조계, 학계 등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위해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서 공수처의 조직과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공수처의 조직역량강화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우선 공수처의 SWOT분석과 조직구조와 운영실태 분석 결과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조직구조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수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 대만의 염정서(AAC),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SFO), 홍콩의 염정공서(ICAC)와 비교 분석(인구 비례 고려)한 결과 공수처가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운 매우 소수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설립된 입법취지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조직인력, 수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성, 지능화된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요청된다.

공수처의 조직진단과 실태분석 결과 첫째, 공수처가 설립된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고 특정사안에 대한 기구특검의 기구에서 벗어나 모든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여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공수처의 조직체계와 직제의 재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둘째,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는 검사, 수사관, 행정인원의 적정인력 확보가 요청되고 있다, 공수처 수사업무를 분석한 결과 고위공직자의 지능화된 범죄로 인해 복잡하고 난이도가 매우 높은 인지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범죄수의 환수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조직이 요청되며, 수사처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판수요가 크게 증가할 예정이고, 2022년 3월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 사건접수 처리건수가 약 2.4배 증가하는 등 공수처의 수사수요가 증대되어 새로운 수사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도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공수처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요원 20명의 총 85명의 기구에서,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검사 40명(처장, 차장, 부장검사 5명, 부부장검사 7명, 검사 26명), 수사관 80명(검사 1인당 검찰수사관의 비율은 2배수), 행정인력 50명(유사규모 부처의 행정인력 인원수 및 본부정원 대비 행정인력 비율 고려) 등 총원 170명이 적정인력으로 판단된다.

셋째, 조직구조를 분석한 결과 현행 처장, 차장, 4관 4부 5과로 구성된 조직은 수사업무 수행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수행에 미흡하므로 우선 수사역량과 수사 지원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사조직을 전문화 및 유형화하여 수사부를 4부에서 수사1부, 2부, 3부, 4부, 공소부의 5부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공수처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올바르게 담당할 수 있도록 업무 수요와 행안부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거 2관 (기획조정관, 인권감찰관), 3과(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에서 2관 (기획조정관, 인권감찰관), 4과(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신설>)의 처장, 차장, 4관 5부 6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넷째, 검사와 수사관 임기제는 정치적 중립성 저해, 내부 승진 및 수사역량 축적의 한계, 국가공무원법의 임기제 개념과 맞지 않는 운영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에 대해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수처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수사기능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적정한 인력과 예산 및 독립청사의 신축 등의 선결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수처가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위와 역할, 수사와 공소기능에 있어서 특별사법기관으로서 지위와 역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조직체계의 안정화와 공수처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의 정원 증원 등의 제도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 공수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아갈 것을 건의한다.

참고자료

<논문>

- 김기갑·김상운. (20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쟁점에 관한 연구”, 문화와 융합 제43권 제1호, 한국문화융합학회.
- 김기현. (2017). 「싱가포르 부패방지법 연구」, 2017년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3)-30.
- 김성천. (20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법체계 정합성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제21권 제4호, 중앙법학회.
- 김태우. (201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제54호, p.2017
- 나하나. (2014). “영국 반부패·경제범죄수사청(Serious Fraud Office)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 법무연수원, pp.19-20.
- 로버트 월터스 (2022). <https://www.robertwalters.co.kr> - 고급인재확보 및 인력유출 피하는 방법.
- 민경선. (2020) “공수처법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 경찰법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경찰법학회.
- 박상민. (20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제70호, 대검찰청.
- 박수희·문준섭. (2021). “현행 공수처법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2호,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 박준휘·김영중·한상훈·정한중·최유진·문준영. (20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BB-01.
- 박준휘 외. (2020). “외국 반부패 특별수사기관의 선진 수사제도 연구 -영국 중대부정수사처와 홍콩 영정공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국무조정실 연구용역 보고서. p.51.
- 박준휘 외. (20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p.175.
- 서민주. (2020). 「영국의 SFO 탄생 배경, 구체적 운영 방식 및 수사사례 연구」. 법무연수원,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34(2). pp.548-551.
- 오병두. (2020). “공수처,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나? -공수처의 운영방향에 관한 제언-”, 형사정책 제32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예상균. (2022). “공수처와 검찰의 국민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시도의 필요성”, 법조 제71권 제3호, 법조협회.
- 윤동호. (2020). “공수처의 기능 강화와 검찰권 견제”,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완규 (2020). 검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진외국 법무·검찰 교육제도 비교 연구. 논정법치문화연구소.
- 이성기 (2021.12). 수사경찰의 역량강화방안. 한국경찰연구 제20권 4호.
- 이윤제. (2021)., “공수처 검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오해와 혼란”, 형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 이윤제. (2021). “공수처 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오류와 문제점”,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3권 제3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이정수. (2007). 「영국 특별수사청(SFO) 개관」, 형사법의 신동향 제6호,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p.37.
- 정웅석, (2021).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의 재량이침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3권 제2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정한중, (20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과 운영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491호, 대한변호사협회.
- 정한중, (20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권친화적 수사와 공소권 행사방안”, 외법논집 제44권 제4호.
- 채성준·박용성, (201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개편의 경로진화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 의존 모형과 경로진화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행정연구원.
- 최진욱. (2005). 「제도와 부패: 홍콩 염정공서(ICAC)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pp.327~328.
- 황은영, (2021). “영장주의와 공수처검사의 영장청구권 쟁점”, 법조 제70권 제4호, 법조협회.

<보고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석서 발간, 2021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구용역보고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법무연수원. (2020, 2021). 교육훈련계획
- 검찰연감. (2021). 제1장 검찰의 조직·인사제도
- 참여연대. (2022.1).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자료집.
- 충남대학교. (2008.2). 국방과학연구소 발전을 위한 우수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방안.
- 대만염정서. (2020). 8.교육 및 훈련.

<단행본>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2018).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 발표자료집.
- 정웅석, (20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 -각국의 검찰제도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박영사.

<외국자료>

- Law, K. J. [羅景熙]. (1985). A comparative study of the anti-corruption measures of Hong Kong and Singapore since 1945. (Thesis). University of Hong Kong, Pokfulam, Hong Kong SAR. Retrieved from http://dx.doi.org/10.5353/th_b3197444.
- Axel Palmer, Countering Economic Crime : A Comparative Analysis (2018), p.4.
- Ministry of Justice, The Bribery Act 2010 Guidance (2011.3.), p.8.

<언론보도>

- 강효백, 공수처 직원 자격 개방하고 정원 늘려라, 아주경제, 2020.12.23.일자.
- 강효백, 대만의 공수처, 염정서 귀감 ㄱ 반면교사 ㄱ, 아주경제, 2020.3.10.일자

<인터넷사이트>

- 싱가포르 「부패방지법」 (출처: <https://sso.agc.gov.sg/Act/PCA1960> 검색일 2022.7.20.)
- <https://www.cpib.gov.sg/who-we-are/our-heritage/>
- <https://www.cpib.gov.sg/who-we-are/our-work/organisational-structure/aac-annual-report-2020>. p.12.
- An Introduction to the Serious Fraud Office, April 1989, p.3.
- <https://www.sfo.gov.uk/about-us>.
- <https://www.aac.moj.gov.tw/6398/6400/6402/53729/post>
- <https://www.cpib.gov.sg/press-room/press-releases/050522-corruption>
- <https://www.sfo.gov.uk/publications/corporate-information/sfo-historical-background-d-powers>.
- <https://www.sfo.gov.uk/about-us>.

부록1. : 특검법에 의한 시행된 특검별 인적 구성 현황

구분	법률명	인적 구성 현황(단위: 명)					
		총원	특별 검사	특 별 검사보	특 별 수사관	파견 검사	파견공무원 (파견검사제)
김대중 정 부 (2건)	옷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	26	1	1	12 이내	2	10
	이용호의주가조작 횡령사건 및 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 진상규명	37	1	2	16 이내	3	15
노무현 정 부 (5건)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 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	37	1	2	16 이내	3	15
	노무현대통령의측근관련 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 상규명	43	1	3	16 이내	3	20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	46	1	2	20 이내	3	20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77	1	3	30 이내	3 이내	40 이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 죄혐의의 진상규명	106	1	5	40 이내	10	50
이명박 정 부 (3건)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 응수수사건 진상규명	104	1	3	40 이내	10	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 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대해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	104	1	3	40 이내	10 이내	50 이내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 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 규명	73	1	2	30 이내	10 이내	30 이내
박근혜 정 부 (1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	105	1	4	40 이내	20 이내	40 이내
문재인 정 부 (2건)	드루킹의 인터넷 불법 댓글 조 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	87	1	3	35 이내	13 이내	35 이내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 의 진상규명	85	1	4 이내	40 이내	10 이내	30 이내
윤석열 정 부 (1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 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 명 (2022. 9. 7. 발의)	105	1	4	40 이내	20 이내	40 이내

부록2. 공수처 수사업무의 수요 확대에 따른 검사 및 수사인력 증원 필요

구분	주요 내용	관련 근거 및 증원 사유(대책)
사건접수 및 처리건수 (사건 양)	검사 1인당 사건처리 건수 급증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 사건처리건수 약 2.4배 증가('22.3.14-7.28)
사안 난이도·복잡성 (사건의 질)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초기 신속 대응과 전문 수사기법 활용 필요성 증대	고위공직자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뇌물 사건의 초기 신속 증거확보(압수수색)와 전문수사검사(디지털포렌식 등) 필요
공판업무 예상 수요 급증	수사처리 건수 급증에 따른 공판업무 급증	공판검사 비율을 수사검사의 43% 유지 필요(검찰청 사례)
국회대응 수사부 대응 수요 급증	수사부에 국회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담 검사인력 부재	행정업무(기획, 인권감찰)에 검사인력이 기획검사 2명, 인권검사 1명이 활용되고 있으나, 국회대응 수사부 검사인력이 없는 상황임
범죄수익환수 업무 (조직 신설)	범죄수익환수에 대한 수사처의 대응조치와 전담인력 체계 미비함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여 신속한 범죄 수익환수와 사전 범죄 예방을 도모함
검사 3년 임기제 (제도개선)	3년 검사 임기제로 이직비율 높고 수사의 연속성 확보와 우수인재 확보 어려움	3년의 짧은 임기제는 검사인력 운영의 불확실성 증대와 수사·공판업무 연속성 유지 어려움으로 수사역량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6-7년 검사 임기제 도입과 적격심사방식의 제도개선 요구됨
반부패 수사기관 간 수사협의체 구성	검찰·경찰 반부패수사기관 간 수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령 규정 미비	공수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타 수사기관과의 수사협의체 구성과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전담부서 및 검사인력 확충이 필요함

부록3. 공수처의 행정기능 강화요인

구분	주요 내용	관련 근거 및 증원 사유(대책)
정책홍보 기능 강화	공수처의 주요 사업 중 수사 성과와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등 정책 성과 및 홍보 활동 강화 필요	현재 대변인실의 주요 업무는 언론대응 및 보도자료 관리임. 수사 범위 확대와 수사 활성화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정책사업에 대한 콘텐츠와 홍보를 전담할 인력 필요
성과평가 /업무평가 기능 강화	공수처의 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대내외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성과 향상 및 외부 평가 대응 기능 강화	기획재정담당관실의 성과관리 업무에 공수처의 기관 성과에 대한 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내부 구성원의 성과 관리와 별개로 기관 자체의 성과 관리를 위한 전담 업무 신설 필요
국제협력 업무 기능 강화	공수처의 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와의 수사 협력과 수사제도, 기법, 내부고발자 및 증인 보호 등에 대한 국제 협력과 정책 연구 기능 강화 필요	성과관리의 세부 업무에 국제협력, 정책연구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사의 국제화, 과학화 등을 지원하고, 비위 수사와 긴밀하게 연결된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보호 제도 및 수사 방법 등에 대한 연구 기능 전담할 인력 증원 필요
인사조직 관리 기능 강화	공수처의 인사관리 기능은 인적자원의 채용 및 배치의 인사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인적자원의 개발에 대한 업무 비중이 적은 상황임	공수처 소속 직원(검사, 수사관, 직원 등)의 경력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수사역량강화와 기관운영강화의 투-트랙으로 인적자원개발(역량강화)의 인력 증원 필요
재정 및 물적 자원 관리 총괄 기능 강화	기관의 회계 업무와 자산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관리자(간부급)가 정원 외로 운영 중인 상황임	현재 인력 부족 상황에서 기획·관리는 정원 내, 집행·실무는 정원 외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회계 및 총무 등의 업무는 기획 업무도 정원 외로 운영 중인 상황임. 기획-책임을 연계하여, 회계 및 총무 업무 총괄 담당자를 정원 내로 편입할 필요가 있음
비상안 전대응기능 강화	별도 청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기관의 비상 및 안전 대응 기능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지정하지 않고 있음	정보보안 및 시설보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 또는 전담하는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음
업무 간 상호 보완 기능 강화	기관 인원 부족으로 단위업무에 대한 대직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대체할 수 없는 상황임	과장급 단위 조직 내 소기능 및 단위업무 담당자 간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고, 파트 또는 계단위 조직을 두고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업 구조를 변경할 필요

부록4. 조직역량강화 연구용역 관련 심층 인터뷰 개요

- 목적 : 공수처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적정 인력 산정을 위해 공수처 직원 대상 심층 인터뷰 진행
- 일시 : 2022. 8. 30. 09:15 ~ 18:05 (1인당 30분 내외 소요)
- 대상 :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 및 부서장 16명
 - 수사기능: 검사 3명, 수사관 3명
 - 수사지원기능: 검사 1명, 수사관 1명, 공무원 1명
 - 기관유지기능: 행정직원 7명
- 내용 : 1. 현재 부서(또는 개인)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일
 2. 수행하고 있는 개인 업무량의 적정도
 3.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기능 및 업무
 4. 대외 및 대내 업무 비율 등
- 인터뷰 세부 시간표

시간대		대상자	연구진	장소
오전	09:15~09:45	000 주무관	박병식 교수 이경호 교수 최상욱 교수	2층 207(B)
	09:45~10:10	000 주무관		
	10:10~10:55	000 검사		
	10:55~11:15	000 주무관		
	11:15~11:45	000 수사관		
점심	점심			
오후	13:10~13:35	000 사무관	박병식 교수 이경호 교수	2층 207(B)
	13:35~14:00	000 검사		
	14:00~14:30	000 수사관		
	14:30~14:50	000 주무관		
	14:50~15:10	휴 식		
	15:10~15:40	000 수사관	박병식 교수 이경호 교수 박종수 교수	
	15:40~16:15	000 검사 000 실무관		
	16:15~16:45	000 수사관		
	16:45~17:05	000 주무관	박병식 교수 이경호 교수	
	17:05~17:40	000 검사		
	17:40~18:05	000 사무관		

부록5. 공수처 수사지원기능 인력 현황 (2022.9.30.기준)

○ 공수처 수사관련 행정지원 업무

부서	기능		인력				비고
	기능	소기능(단위업무)	계	자체 정원(급)	파견(급)	공무직	
총계			6	5	0	1	
인권수사정책관실	계		2	1	0	1	
	인권수사 정책관	인권수사정책관실 총괄 인권수사관련 중·장기 제도 연구		1(검사)			수사관 1명 등 인력부족으로 직제 상 업무수행 한계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업무 지원				1	
계			4	4	0	0	
수사기획관실	수사기획관	수사기획관실 소관 업무 총괄		1(검사)			
	수사기획	법령, 규정 등 제·개정		1(검사)			인력부족으로 수사관 1명과 함께 업무 수 행
		수사 관련 지침 마련					
		수사 기획 업무					
	대외협력	국회 대응 업무					
		유관기관 협조 업무					
	범죄정보 수집	범죄정보 수집 및 관리					인력부족으로 업무 수행 불 가
	업무지원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제 공시스템 업무 협조		1(수사6)			수사기획 및 국회 대응 업무지원
			공수처 위원회 관리				
		KICS 관련 개선 업무		1(수사7)			
공수처 수용자 대기실 점검							
수사 관련 시스템 관리							
수사업무폰 및 법률신문 관리							
서무		수사부서 상훈 업무					
	기타 수사 관련 서무 업 무						

○ 공수처 수사기반 지원 업무

	기능	기능		인력			비고		
		기능	소기능(단위업무)	계	자체 정원(급)	파견(급)		공무직	
기획 조정관실	사건관리 담당관실	계		11	2	1	8		
		과장	사건관리담당관실 소관 업무 총괄		1(수사4)				
		사건관리	사건관리업무 총괄 (공직범죄사건 여부 점검, 사건접수·분류·배당)					1	사건접수, 분류·배당 등 핵심 기능을 인력부족으로 일부업무 수행불가 및 공무직이 업무 처리
			사건 배당 처리 압수물 접수처리 사건 통계						
			사건처리결과 발송 사건관리 업무 보조					1	
		민원	민원업무총괄 (민원실, 콜센터, 국민신문고 운영) 민원·사건 분류			1(수사5)			
			민원실 근무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접수·처리 기록열람·등사					1	
			민원실 근무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접수·처리 기록열람·등사					1	
		행정서무	내부고발자 등 보호·지원 영장, 준항고 등 처리 과 서무				1(지자체5)		내부고발자 기능을 인력부족으로 파견인력이 수행 중
			정보공개청구 업무 재정신청 업무 서무 업무					1	정보공개 업무를 공무직이 수행 중
		콜센터	콜센터 업무 총괄					1	콜센터 인력은 전혀 없어 용역인력 위탁 운영
			전화민원응대					1	
			전화민원응대					1	

부록6. 공수처 기관유지기능 인력 현황 (2022.9.30.기준)

부서	기능		인력			비고		
	기능	소기능(단위업무)	계	자체 정원(급)	파견(급)		공무직	
총계			59	22 (행정19, 수사3)	16	21		
처장실	계		2	1	-	1		
	실 총괄	처장실 업무 총괄 및 비서업무		1(별정5)				
	비서	처장 비서업무				1		
차장실	계		1	-	-	1		
	비서	차장 비서업무				1	정규 비서관 정원 1명 부족	
대변인실	계		3	2	-	1		
	과 총괄	대변인실 총괄		1(임기4)				
	언론대응	언론행사(브리핑, 간담회) 공보심의협의회 및 기자단 관리		1(5)				
	보도관리	언론스크랩 보도계획·보도일정 관리 홈페이지 관리·운영 서무		-			운영지원 담당관실 지원 중	
	사진·영상 제작	사진·영상 콘텐츠 촬영·관리				1		
인권감찰관실	계		6	4	1	1		
	감찰관	인권감찰관실 총괄		1(나)			개방형 고위공무원	
	감사	일상감사 등 각종 감사 및 징계위 운영 재산등록, 취업심사		1(6)				
	감찰	소속 공무원 비위조사 등 감찰 감찰 법령·제도 등 검토		1(수사6)				
			감찰위원회 운영 국민신문고 접수·처리 재산등록, 취업심사 언론, 보도 모니터링	1(수사6)		1(공공기관)		
	서무	국장 일정 등 보좌 감사·감찰업무 보조				1		
기획 조정관실	계		47	15	15	17		
	국장	기획조정관실 총괄		1(나, 직제파견)			행안부(나) 직제파견	
	비서	기획조정관 비서업무				1		
	기획재정 담당관실	계		10	6	3	1	
		과장	기획재정담당관실 소관 업무 총괄		1(4, 직제파견)			기재부(4) 직제파견
	기획법제	업무계획 수립 등 기획 공수처법 및 소관법령 사항 자문위 운영		1(4, 직제파견)			법제처(4·5) 직제파견	

부서	기능		인력			비고		
	기능	소기능(단위업무)	계	자체 정원(급)	파견(급)		공무직	
		행심위 관리·운영 주간업무계획			1(지자체6)		행정심판 국회, 예산 등 필수기능에 파견인력 3명 근무 중	
		조직성과관리 자문위 운영 정책연구용역 국제협력 업무		1(6)				
		주간업무계획 과 소관 위원회 운영·지원 과 서무				1		
	국회	국정감사, 국회협력 등 국회업무 총괄		1(수사5)				
		법사위, 예결위, 국정감사 등 국회업무 국회요구자료 대응		1(6)				
		국회업무 지원			1(공공기관)			
	예산	예산편성, 집행,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예산업무 총괄		1(5)				
		예산편성, 집행, 재정성과계획 작성 등 예산업무			1(공공기관)			
	계			35	8	12		15
	운영지원 담당관실	과장	운영지원담당관실 소관 업무 총괄		1(4)			
인사조직		인사업무 총괄		1(5, 직제파견)			인사처(4·5) 직제파견	
		조직직제관리 중·장기 인력운영제도 검토 수사관 인사 (채용, 전보, 퇴직)			1(지자체5)		필수운영 기능인 인사기능에 인력부족, 파견직원 운영 중	
		인사기획, 근무평정 일반직 승진·전보 정·현원 관리		1(6)				
		검사 인사 (채용, 전보, 퇴직) 검사인사위원회 파견직 관리			1(지자체6)			
인력관리개발 업무 총괄				1(지자체5)				
총무시설		공무직 인사관리 (채용, 전보, 노사협의회) 직원 교육계획 수립 교육운영관리, 상훈			1(국가7)			
		총무시설 업무 총괄			1(지자체5)		복무, 서무, 방호업무 등 운영기능을 자체 직원 1 명도 없이 파견직원 3, 공무직으로	
총무시설		보안 및 복무관리 방호실 관리, 물품관리 과 서무			1(지자체6)			
			청사시설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			1(공공기관)		

부서	기능		인력			비고		
	기능	소기능(단위업무)	계	자체 정원(급)	파견(급)		공무직	
		통신장비 (cctv, 통신기자재)					운영	
		과 소관 민원처리 청사출입관리 서무업무 지원				1		
		청사 방호				9		
		관용차량 관리·운전				3		
	회계계약	회계계약 업무 총괄				1(지자체5)		회계지출원 총괄기능을 지자체 파견 인력이 수행
		급여,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복지후생 (연금, 4대보험, 맞춤형복지)			1(7)			휴직 중 대변인실에서 지원 근무
		계약(물품, 용역, 공사) 관서운영경비, 결산			1(7)			
		관서운영경비 출납보조 정부구매카드 지급관리 여비 지급 업무					1	
		관서운영경비 출납보조 정부구매카드 지급관리 일반수용비 지급 업무					1	
	청사건립	청사건립 업무 총괄			1(6)			
		청가건립 사업예산담당 (중기사업계획, 예산 타당성조사 대응 등)				1(공공기관)		
		청사건립 사업기획담당 (청사건립 사업계획 수립, 세부사업추진관리)				1(공공기관)		
	정보화	정보화 업무 총괄			1(6)			부내 정보화 기능인력,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KICS) 운영인력이 1 명 부과 부내정보화 기능수행 불가하여 파견인력 2명을 보강하 여 운영 중
		KICS 운영·관리 정보화 기획·예산 관리				1(공공기관)		
		KICS 운영·관리 정보화 기획·예산 관리				1(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 청구 대응 자료실 관리 등 기록물관리 업무 총괄			1(연구사)			